

# 2021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2022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 요 약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104의 24)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국내로 이전(완전복귀)하거나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부분복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함(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해외사례
  -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강화 등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무역,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강화하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급망 복원력 향상의 일환으로 리쇼어링이 가속화됨
  -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엔화 가치 상승을 계기로 오프쇼어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장기적 불황 탈피와 약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리쇼어링 유도정책을 추진함
    - 일본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권한과 자율성하에서 시행하는 유턴기업의 일본 내 기업유치정책을 통하여 지원함
  - 대만은 고부가가치 제품 및 핵심 부품산업, 대만계 다국적기업 중 R&D 부서 및 경영본부, 그 외 대만 정부에서 장려하는 업종이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경우 우대책을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혁신 및 고부가가치 업종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

- 유럽은 EU의 생산 증대를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제시되었으며, 국외 생산품 운송비용 증가, 지적재산권 침해, 낮은 생산 공정혁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신흥 개도국으로 이전한 제조업 기업을 선진국 자국으로 다시 이전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됨

#### □ 타당성 분석

- (정부 개입의 타당성) 해외 기업의 국내복귀는 고용 증가, 투자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장을 국내 및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바,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는 해외진출기업들에 본 조세특례제도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함
  - 유사 조세감면 혜택의 예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 있음
- (지원 대상의 적절성)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고연도 기준 2014~2020년에 총 10개의 기업이 동 조세특례로 인한 세액감면을 한번 이상 받았음<sup>1)</sup>
  - 수혜기업의 대부분은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완전복귀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복귀 후 수도권 밖에 위치함
  - 수혜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본 조세특례 수혜기업들의 복귀에 따른 고용 및 투자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기업 이전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함(강법식·김덕모, 2006; 정세은·김봉한, 2009; 이수영·남시훈, 2019)
  - 또한, 향후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세부 제조업이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어, 수혜기업의 특성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함(길은선, 2021)

1) 총 30억원의 조세지출과 24개의 감면 건이 있었음

- (지원방법의 타당성) 본 조세특례 지원방법의 타당성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재정지원이 아닌 조세제도로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부분복귀를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세액감면 대상소득액 정의의 타당성
  - 먼저, 본 조세특례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복귀 후 소득이 크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이 적은 기업의 경우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또한, 중견기업의 부분복귀 비율이 높아, 본 조세특례의 부분복귀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지원대상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본 조세특례의 대상소득액은 국내복귀 전후 매출의 상대적 크기나 산업군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유인효과를 크게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기업 특성별 유인효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함
- (다른 정책과의 중복성)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위한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은 11건 정도로, 분석 결과 중복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중 투자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관세감면, 이전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순이었음
  - 반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의 경우 본 조세특례의 정책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주력 수혜산업군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지원대상에게 상반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임

#### □ 효과성 분석

- 동 과세특례는 해외기업의 국내복귀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세감면의 효과성 파악) 설문조사 결과, 동 제도는 해외기업의 국내복귀에 최우선 요인은 아니나 제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수혜기업은 과반수가 감면제도가 국내복귀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해외진출기업의 과반수는 해당 제도의 국내복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함

- 수혜기업 중 73.4%(11/15)는 해당 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경영적 요소와 비슷하거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46.7%(7/15)로 높음
- 미래에 동 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63.6%(42/66)가 해당 제도의 국내복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함
- 국내복귀 결정 이유: 국내 정책 요소는 여러 국내복귀 유인 중 우선순위가 낮으나 긍정적 효과 존재
- (성과저해 원인 분석) 기업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동 제도의 성과저해 원인은 수혜대상 기업들의 적자 및 휴폐업이 주된 이유로 파악됨
  - 해당 「조특법」상 강제적으로 수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도 국내복귀기업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sup>2)</sup>
  - 2014년 총 17개 기업이 모두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완전 철수를 목표로 하였음
  - 6개(35.3%)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며, 11개(64.7%)의 기업은 「조특법」상 강제적 수혜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도 혜택을 받지 못함
  - 비수혜기업 중 81.8%(9개)의 기업이 적자 및 휴폐업으로 인하여 동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함
  - 다른 비수혜 원인으로는 동 「조특법」상 지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복귀 이후에 수익이 개선되면서 해외 확장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각각 1개 사례로 비중이 낮음
  - 특히 2021년까지 전체 유턴기업들 중 동 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과저해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복귀 요인 분석) 국내복귀기업과 매칭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국내복귀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기업자료와 KOTRA의 해외진출기업 자료를 매칭하여 분석 표본을 구성함

2) 국세청에서 공유받은 수혜법인 자료가 귀속연도 기준 2014년부터 2019년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의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조특법」상 강제적 법인세 감면혜택 시작 시기(복귀 후 5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불가함

-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세금 정책에 따른 국내복귀 유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진출 국가의 최대세율이 상승할수록 국내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통제변수들을 제어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줌
  - 해외진출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클수록 국내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국내복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수익성 악화 측면과 일관됨
  - 진출 국가의 기업 정책 및 환경이 친기업적일수록 국내복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역시 설문조사와 일관성이 있음

- (종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돕기 위한 조세특례의 타당성이 소명되며, 해외기업의 국내복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 및 지원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으나, 뚜렷한 제도적 원인을 찾기는 어려움
  - 우려가 되었던 지원기간 또는 지역 제한은 큰 저해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존재가 국내복귀의 유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하고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복귀 대상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실제로 제도가 확대될 경우에는 향후 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산업 및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정책과의 충돌이 우려되어, 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목 차

I. 서론 .....	13
I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	19
1. 제도 개요 .....	21
가. 도입목적 .....	21
나. 정책대상자 및 지원요건 .....	21
다. 수혜 내용 .....	22
2. 제도 연혁 및 운영 현황 .....	25
가. 제도 연혁 .....	25
나. 조세지출 규모 .....	27
다. 국내복귀기업 현황 .....	27
3. 리쇼어링 관련 선행연구 .....	28
4. 해외사례 .....	36
가. 미국 .....	36
나. 일본 .....	39
다. 대만 .....	45
라. 유럽 .....	47
III. 타당성 분석 .....	49
1. 정부 역할의 필요성 .....	51
가. 정부 개입의 정당성 .....	51
나. 정책환경 분석 .....	59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	64
가. 국내복귀기업의 특성 분석 .....	64
나. 수혜기업 분석 .....	67
다. 소결 .....	69

3. 지원방법의 적절성 .....	71
4.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75
가. 국내복귀 관련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 .....	75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81
<b>IV. 효과성 분석 .....</b>	<b>83</b>
1. 조세감면의 효과성 파악 .....	86
가. 설문조사 목적 및 방법 .....	86
나. 설문조사 결과 - 국내복귀기업 대상 .....	87
다. 설문조사 결과 - 해외진출기업 대상 .....	93
2. 성과저해 원인 분석 .....	96
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96
나.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	98
다. 분석 결과 .....	114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 분석 .....	115
가. 분석자료 .....	115
나. 계량추정전략 .....	118
다. 추정 결과 .....	121
<b>V.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b>	<b>125</b>
<b>참고문헌 .....</b>	<b>132</b>
<b>부록 .....</b>	<b>137</b>

# 표 목 차

<표 I-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	17
<표 II-1> 연도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감면제도 주요 변화 .....	26
<표 II-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연장 시 세수효과 .....	27
<표 II-3>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	28
<표 II-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 .....	29
<표 II-5>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약 .....	31
<표 II-6> 연도별 미국 리쇼어링 기업 현황 .....	37
<표 II-7>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 관련 법령 내용 .....	39
<표 II-8> 연도별 일본 리쇼어링 기업 현황 .....	40
<표 II-9>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법」 관련 지원내용 .....	41
<표 II-10> 일본 정부의 국내투자촉진보조금 주요 내용 .....	42
<표 II-11>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 관련 법령 및 지원 정책 .....	43
<표 II-12> 2022년에 발표된 일본 제조업 분야의 본국 제조거점 건설 사례 .....	44
<표 II-13> 대만기업 국내 유턴 및 투자추진방안(加強推動台商回臺投資方案) .....	46
<표 II-14> 대만 유턴기업투자 환영 행동방안(歡迎台商回台投資行動方案) .....	46
<표 II-15> 유럽 개별 국가의 리쇼어링 주요 정책 내용 .....	48
<표 III-1> 국내복귀기업의 규모별·업종별 고용 계획 .....	53
<표 III-2> 국내복귀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투자 계획 .....	54
<표 III-3> 「조특법」 제104조의 24와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비교 · 57	57
<표 III-4> 「조특법」 제104조의 24와 「조특법」 제63조의 2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비교 · 58	58
<표 III-5> 「조특법」 제121조의 2~7의 감면대상 사업별 감면기간 및 비율 .....	58
<표 III-6> 「조특법」 제60조~61조의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	59
<표 III-7> 국내복귀기업의 복귀 유형 .....	66

<표 III-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액 및 감면건수: 2015~2020년 .....	67
<표 III-9> 2020년(신고연도) 국내복귀기업의 재무제표 .....	69
<표 III-10> 주요 선진국 제조업 고용 비중 .....	70
<표 III-11> 기타 유사 재정사업 개요 .....	77
<표 III-12> 2014~2019년도 관세감면, 투자보조금 및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	79
<표 III-13> 복귀지역별 이전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	79
<표 III-14> 20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82
<표 IV-1> 국내복귀 결정 이유 .....	88
<표 IV-2> 국내복귀 결정요인의 총경제적 가치 .....	89
<표 IV-3>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	90
<표 IV-4>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계획에 미친 영향 .....	91
<표 IV-5>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에 미친 영향 .....	91
<표 IV-6>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92
<표 IV-7>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93
<표 IV-8> 세액감면제도와 타 지원제도의 효과 비교 .....	93
<표 IV-9>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예상) .....	95
<표 IV-10>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결정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	95
<표 IV-11> 세액감면제도와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효과 비교 .....	96
<표 IV-12>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A기업) .....	98
<표 IV-13> 비수혜기업 재무정보(A기업) .....	99
<표 IV-14>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B기업) .....	100
<표 IV-15> 비수혜기업 재무정보(B기업) .....	100
<표 IV-16>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C기업) .....	101
<표 IV-17> 비수혜기업 재무정보(C기업) .....	102
<표 IV-18>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D기업) .....	103
<표 IV-19> 비수혜기업 재무정보(D기업) .....	103
<표 IV-20>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E기업) .....	104
<표 IV-21> 비수혜기업 재무정보(E기업) .....	105

<표 IV-22>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F기업) .....	106
<표 IV-23> 비수혜기업 재무정보(F기업) .....	107
<표 IV-24>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G기업) .....	107
<표 IV-25> 비수혜기업 재무정보(G기업) .....	108
<표 IV-26>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H기업) .....	109
<표 IV-27> 비수혜기업 재무정보(H기업) .....	110
<표 IV-28>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I기업) .....	110
<표 IV-29> 비수혜기업 재무정보(I기업) .....	111
<표 IV-30>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J기업) .....	112
<표 IV-31> 비수혜기업 재무정보(J기업) .....	113
<표 IV-32>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K기업) .....	114
<표 IV-33> 국내복귀 요인 분석 .....	122

## 그림 목 차

[그림 III-1] 2014~2021년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 .....	54
[그림 III-2] 2014~2021년 국내복귀기업의 고용규모 .....	55
[그림 III-3] 중국·베트남 최저 월평균 임금 상승: 2000~2020년도 .....	62
[그림 III-4] 국내복귀기업의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 정도 .....	63
[그림 III-5]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소재지 .....	65
[그림 III-6] 국내복귀 후 사업장 소재지 .....	66
[그림 III-7] 수혜기업 수혜기간 .....	68
[그림 III-8] 1996~2011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및 고용 비중 추이 .....	71
[그림 III-9] 알고 있는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 .....	76
[그림 III-10] 수혜받은 지원제도 .....	77
[그림 IV-1] 성과저해 요인 분석(2014년 국내복귀기업 기준) .....	114

# I. 서론





# I. 서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104의 24)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는 제도로 국내 일자리 및 투자 증대효과 또한 기대하며 도입되었음
  - 동 제도의 도입 당시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경제위기와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로 되돌아오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
  -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국내복귀를 통해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
  - 특례 대상은 2021. 12. 31.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로 이전(완전복귀)하거나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부분복귀)하는 경우임
  - 감면 내용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것(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으로 감면율은 복귀 형태에 따라 상이
  
- 동 제도는 2010. 10. 27. 신설(2011. 1. 1. 시행)된 이후 공제요건 및 일몰기한이 수차례 조정<sup>3)</sup>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sup>4)</sup>
  - 2011년 제도 도입 시에는 해외사업장을 완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완전 복귀의 경우에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였으며, 감면을 받기 위한 복귀지역은 수도권 밖으로 한정하였음
  - 2013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제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으며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음. 부분복귀에

3) 2011년 시행 이후, 일몰기한은 2013년, 2015년, 2018년 3차례 개정되면서 2021. 12. 31.까지로 연장됨

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2020. 3., p. 35

대한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것은 완전복귀 이외에는 대기업을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취지 때문임<sup>5)</sup>

- 2016년 시행 법률에서는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도까지로 연장하였고,  
2017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세액감면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대  
하였는데, 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음<sup>6)</sup>
- 2019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까지로 확대하면서,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100% 세액감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였음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 지방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국내  
복귀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함
- 2020년 시행 법률에서는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복귀 시 국내사업장의 신설  
외에 증설할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한편 지속적 요건 완화에도 조세특례로 인한 감면실적은 미미한 편임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규모(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감면 실적을 합산하여  
표기)

5)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검토보고서, 2012. 10., p. 147

6)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 설명자료』 참고

<표 I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소득세	0.1	0.12	0.13	0.22	0.4	0.1	0	0	0
법인세	-	3.65	5.72	0	3	8	1.6	3	3
합계	0.1	3.77(4)	5.85	0.22	3.4(3)	8.1(8)	1.6	3	3

주: ( ) 안은 『조세지출예산서』상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실적 합계를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대상 제도는 2011년 시행 이후로 심층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인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성과가 미미한 편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조특법」 제104조 24가 정책목적과 기대효과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준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 제도 개선방안 분석 및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조세특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정부 개입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를 분석하고자 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본 조세특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시키는지 그리고 본 조세특례의 활용 저해 요인을 분석함
    -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세감면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기업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성과저해 원인을 분석하고, 유턴기업 미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내복귀 요인을 분석함
  - 나아가 제도 개선방안 및 종합평가를 위해서 타당성, 효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의 연장 또는 폐지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 I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 1. 제도 개요

#### 가. 도입목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104의 24)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는 제도로 국내 조기 정착 지원 및 일자리, 투자 증대효과 또한 기대하며 도입되었음
  - 동 제도의 도입 당시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경제위기와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로 되돌아오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
  -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국내복귀를 통해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
  - 특례 대상은 2021. 12. 31.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로 이전(완전복귀)하거나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부분복귀)하는 경우임

#### 나. 정책대상자 및 지원요건

- (완전복귀: 해외사업장 폐쇄)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sup>7)</sup>이 다음과 같이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

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이때 대한민국 국민에는 제외동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포함됨

부분 소득 구분경리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②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sup>8)</sup>

□ (부분복귀: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 ②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 업장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 또한 정책대상자는 앞서 살펴본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 시 전제되는 지역요건 및 기간요건 외에 해외사업장 국내복귀에 대한 특례를 받기 위한 업종 요건도 갖추어야 함<sup>9)</sup>

-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 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 다. 수혜 내용

□ (감면 내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4항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2항

□ (감면율 및 감면대상 소득)

1) 완전복귀<sup>10)</sup>

- 5년간 100%, 2년간 50%
- 해외진출기업 국내 이전 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함)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sup>11)</sup>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사업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사업장을 양도·폐쇄하는 경우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	$\frac{\text{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12)}}{\text{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폐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평균환율”이라 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함)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	$\frac{\text{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13)}}{\text{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이하 ‘직전 과세연도’라 함)에 발생한 현지화폐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B: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함)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2항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5항

2) 부분복귀14)

-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이외지역)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함)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15)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	$\frac{\text{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16}}{\text{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x B

- A: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지화폐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 B: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함)

2. 산자부 장관에 의하여 국외 경영 사업장을 축소·확인받은 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	$\frac{\text{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17}}{\text{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x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폐로 표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함)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2항 1호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2항 2호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3항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2항 2호

## 2. 제도 연혁 및 운영 현황

### 가. 제도 연혁

- 동 제도는 2010. 10. 27. 신설(2011. 1. 1. 시행)된 이후 공제요건 및 일몰기한이 수차례 조정<sup>18)</sup>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sup>19)</sup>
  - 2011년 제도 도입 시에는 해외사업장을 완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완전 복귀의 경우에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였으며, 감면을 받기 위한 복귀지역은 수도권 밖으로 한정하였음
    - 완전복귀기업은 기업규모 제한 없이 7년간 세액감면(감면율: 5년 100% + 2년 50%)
  - 2013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제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으며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음. 부분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것은 완전복귀 이외에는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취지 때문임<sup>20)</sup>
    - 부분복귀기업은 5년간 세액감면을 받으며 감면율은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
  - 2016년 시행 법률에서는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도까지로 연장함
  - 2017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세액감면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음<sup>21)</sup>
  - 2019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까지로 확대하면서,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100% 세액감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였음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2항 3호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2항 4호

18) 2011년 시행 이후, 일몰기한은 2013년, 2015년, 2018년, 2021년 4차례 개정되면서 2024. 12. 31.까지로 연장됨

1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2020. 3., p. 35

20)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검토보고서』, 2012. 10., p. 147

21)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 설명자료』 참고

- 2020년 시행 법률에서는 해외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복귀 시 국내사업장의 신설 외에 증설할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2022년 시행 법률에서는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고,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요건을 완화함<sup>22)</sup>

<표 II -1> 연도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감면제도 주요 변화

시행일	개정내용
201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시행</li> <li>- 대상: 모든 기업</li> <li>- 감면율: 5년 100% + 2년 50%</li> <li>• 세액감면 대상 복귀지역은 수도권 밖으로 한정</li> </ul>
201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복귀기업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li> <li>- 대상: 중소기업</li> <li>- 감면율: 3년 100% + 2년 50%</li> </ul>
2013.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기한 연장(2년 → 4년)</li> </ul>
2016.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감면 대상 확대</li> <li>-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이전·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포함함</li> </ul>
2017.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복귀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li> <li>• 세액감면 대상 복귀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완화</li> </ul>
201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복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감면율 완화</li> <li>- 감면율: 5년 100% + 2년 50%(수도권 내는 종전과 동일)</li> <li>•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부분복귀기업에 세액공제</li> </ul>
2020.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설을 통한 국내복귀에도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허용</li> </ul>
2020.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복귀 사업장의 세액감면 증설의 범위 및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 규정</li> <li>•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을 신·증설하도록 하여 사업장 이전의 경우와 형평을 맞춰 요건 보완</li> </ul>
202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li> <li>-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는 경우 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li> </ul>
2022.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li> <li>-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 완화(1년 → 2년)</li> </ul>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202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설명자료』 참고

- 2022년 6월 국내복귀기업 인정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함<sup>23)</sup>
  - 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해외사업장 25% 이상 청산·축소 및
    - 공장건축 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까지 신·증설로 인정하여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함<sup>24)</sup>

#### 나. 조세지출 규모

-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 특례 요건 완화에도 감면실적이 미미함
- 일몰연장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2023~2031년 동안 약 13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표 II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0.7	△1.4	△2.2	△2.2	△2.2	△1.8	△1.4	△0.7	△0.4	△13.0

주: 최근 연도 감면 실적을 기초로 연차별 감면액을 추산하여 2024년 복귀기업이 마지막으로 감면 받는 2031년까지 발생하는 세수효과를 추계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1.

#### 다. 국내복귀기업 현황<sup>25)</sup>

- 2021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26개사로 전년보다 2개사가 증가했으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누적 108개사가 국내로 복귀함

23) 산업통상자원부, 「유턴범위 확대를 통한 국내복귀 및 투자 활성화 추진」, 보도자료, 2022. 6. 22.

24)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3분기부터 개정되는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

25)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 보도자료, 2022. 1. 11.

- 전체 복귀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이나 최근 중견기업의 복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소재, 친환경차량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2개사) 복귀로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함

-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는 2021년 6,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고, 고용 규모는 1,820명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함

<표 II -3>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단위: 개사, 억원,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기업수	17	2	11	4	8	16	24	26	108
중소기업	16	2	10	4	8	12	18	17	87
중견기업	1	-	1	-	-	3	6	9	20
대기업	-	-	-	-	-	1	-	-	1
투자규모	1,078	55	504	556	414	4,767	5,559	6,815	19,748
고용규모	765	65	408	143	276	334	1,169	1,820	4,980

주: 1.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2. 투자규모, 고용규모는 모두 기업의 국내복귀 신청시 제출한 계획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실제 국내복귀 과정(해외사업장 청산, 국내사업장 신·증설 등)에서 변동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 보도자료, 2022. 1. 11.

### 3. 리쇼어링 관련 선행연구

-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 생산기지를 두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더해 인접 국가로 산업시설을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과 동맹국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남

- 김성국(2014)에서는 해외진출 기업 중 제1의 투자국인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의 국내복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 → 철수 결정 → 국내복귀 결정까지의 과정을 파악함. 선행연구를 토대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을

4가지(현지시장, 생산비용, 모국의 정책, 지속적 성장)로 압축한 후 이 요인들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한 AHP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함

- 1990년대에 국내 임금 상승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비를 찾아 중국으로 대거 이전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중국 인건비 상승, 세금, 금융외환, 투명성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함
-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제3국 이전을 포함하여 국내복귀를 검토하였으며, 해외투자 국내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지시장, 생산비용, 모국의 정책, 지속적 성장 등이 있음

<표 II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

요인	내용
현지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기업이 진출할 시기와 달리 현지국의 시장여건이 악화되거나 경쟁이 심화되어マーケット셰어가 줄어드는 것이 주요 이유</li> <li>• 현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업을 중단, 축소하며 기업 철수의 방법으로서 모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검토됨</li> </ul>
생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사례와 같이 노동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기업은 해외이전을 고려하게 됨</li> </ul>
모국의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을 위한 모국의 적극적인 국내복귀 정책 추진으로 기업은 국내복귀를 검토하게 됨</li> </ul>
지속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스스로 주위환경과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li> <li>• 현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잃지 않기 위해 사업체를 일부만 옮기는 것 또는 현지국에 경영본부를 설치하고 생산기지를 모국으로 옮기는 것 등</li> </ul>

자료: 김성국(2014), 재인용

- 중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요인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한 결과 생산비용, 기업 지속적인 성장요인, 현지시장 요인, 모국의 정책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됨
- 각 요인별 하위 요인의 중요도는 생산비용 요인에서는 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인상, 환율 변동, 환경비용 증가 순이며, 지속적 성장 요인에서는 연구개발 기능, 자금조달 편리성, 브랜드 가치, 거점 통합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냄. 현지시장 요인에서는 법제도 변경, 수요 착오에 의한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의한 판매부진 순이고, 모국의 정책 요인에서는 FTA 체결, 산업용지 확보, 보조금 지원 순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속적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AHP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4가지 요인을 만족시키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
  
- 이수영·남시훈(2019)에서는 리쇼어링의 결정모형을 이용해 리쇼어링 선택 경로를 분석하는 것 외에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기업들의 의사결정과 저숙련노동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분석 실시
  -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과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에 기반하여 리쇼어링 모형을 구축하여, 리쇼어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이 모형에 근거해 먼저, 생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직무(task)들에 대해 어떻게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하고, 리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이동효과, 생산효과, 대체효과로 분류하며, 오프쇼어링 비용 감소 혹은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경로들을 확인하고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이 모형에서는 리쇼어링 결정의 주요 원인으로 오프쇼어링 결정 이후 예기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함
  -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외생산을 택하여 오프쇼어링을 결정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일부 기업은 본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가 리쇼어링에 대한 장려정책을 시행하여 리쇼어링의 비용을 낮추면 리쇼어링을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효과와 함께 오프쇼어링의 위험 및 기회비용이 낮아져 오프쇼어링이 늘어나는 효과도 존재함
    -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정책이 기존에 오프쇼어링으로만 진행되던 직무에서 시행되어 리쇼어링이 발생한다면 컷오프가 움직이는 이동효과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일어남. 하지만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되던 직무의 경우 리쇼어링 지원으로 인해 오프쇼어링의 리스크가 사라지므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
  - 리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이동효과, 생산효과, 대체효과가 있으며,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여러 효과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해 고용에 양(+)의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오프쇼어링 및 리쇼어링 과정에서 생산비용이 변화하여 생산량이 달라져 고용을 변화시키는 생산효과, 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의 상대비용 또는 생산되는 직무들 간의 상대비용이 달라져 비용이 저렴한 조합으로 생산방식이 달라지면서 고용을 변화시키는 대체효과의 존재 역시 고용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에 양(+)의 효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움
-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정책이 오프쇼어링의 위험 및 기대비용을 낮추어 오프쇼어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직무의 이동효과, 생산효과 및 대체효과의 복합적 영향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표 II -5>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약

구분		오프쇼어링 비용 감소	리쇼어링 지원 정책
이동효과		감소	알 수 없음
생산효과		증가	증가
대체 효과	숙련간	증가	증가
	직무간: 국내생산	감소	감소
	직무간: 리쇼어링	알 수 없음	증가
총효과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주: ‘이동효과’: 생산방식의 변화로 인한 효과  
 ‘생산효과’: 최종생산품 생산량의 변화로 인한 효과  
 ‘숙련간’: 고숙련노동과 저숙련노동 사이의 생산비율의 변화  
 ‘직무간: 국내생산’ 국내생산 공정의 상대적 생산비율 변화  
 ‘직무간: 리쇼어링’ 리쇼어링 공정의 상대적 생산비율 변화  
 ‘대체효과’: 공정들 사이의 생산비율의 변화로 인한 효과

자료: 이수영·남시훈(2019), p. 72 <표 1>

- 최혜린 외(2020)에서는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리쇼어링의 주요 요인이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등의 어려움, 낮은 신기술 접근성 등을 지적함
-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푸쉬(push)요인이 주로 작용하였으며, 개도국의 임금 상승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그 외에 운송 및 창고 비용, 렌트비, 공급자 관리비용 등 생산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
- 미국 국내에서 회귀를 유인하는 풀(pull) 요인으로는 국내의 풍부한 고숙련 노동자, 자동화 및 혁신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낮은 에너지 비용,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기업에 우호적인 제도 및 정책 등의 경영 환경이 회귀

유인을 제공함

-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고임금, 상위 기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IT 및 반도체 산업 등의 선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인프라 구축, 세금 인센티브, 보조금 같은 단기 정책도 포함함
  - 유럽의 경우 전기장비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항공우주 산업, 방위 산업 같은 첨단기술 산업과 공급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자동차 산업, 수요에 민감한 의류 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집약 산업에서의 리쇼어링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아시아에서 모국으로 리쇼어링한 기업의 경우 ‘Made in’ 효과, 고객과의 접근성이 주요 리쇼어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동유럽에서 돌아온 기업의 경우 낮은 품질, ‘Made in’ 효과, 자동화, 혁신 제품 및 신기술 활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유럽은 저임금 활용을 위해 해외로 나간 제조 공장이 노동집약적인 형태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노동 의존도를 낮춰 수요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디자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혁신과 관련하여 추진됨
  - 대만으로 유턴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국에서 대만으로 유턴하는 기업들이며, 리쇼어링의 주된 이유는 중국 내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때문으로 나타남. 특히 연구개발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로 진출한 대만 기업들은 기술개발, 산업고도화, 재정문제를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유턴을 희망하였으며, 정책 수요에 따라 대만 정부는 2006년 유턴 투자추진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유턴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유턴기업에는 세금 감면, 토지 제공, 임대료 할인, R&D 지원,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새로운 산업 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강유정 외(2021)에서는 해외이전에 기인한 선진국들의 제조업 붕괴의 가속화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교우위를 통한 해외생산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각국의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13년 유턴법 시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온 우리나라의 제도적 분석, 실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리쇼어링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2020년에는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함
- 실제 사례분석은 2020년 법 개정 이후 리쇼어링을 결정한 아주스틸, KG동부제철 및 고문당인쇄의 세 기업 사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리쇼어링의 동기 및 세무적 효과를 분석함
  - 아주스틸(김천시)은 1995년 일반특수강, 스테인리스, 기타 철강제품 제조를 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경북 구미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아주스틸은 필리핀 공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김천시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춤
  - KG동부제철(당진시)은 1982년 철강재 및 비철금속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중국 장쑤성에서 운영하던 일부 사업장을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로 리쇼어링하여 2021년부터 단계적 신규채용을 추진함. 당진시는 리쇼어링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이전 인센티브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함
  - 고문당인쇄(천안시) 주식회사는 1962년 설립된 종합포장인쇄 전문기업으로 중국 청도의 현지법인을 양도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천안시 테크노파크 산업단지로 이전함. 천안시는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
- 2020년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보조금 관련 사항도 증가하였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에 따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빠르게 리쇼어링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제도 확대 수준이 비교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제도 확대 수준이 비교 국가에 비해 높지 않고 유턴기업의 정의와 범위가 타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면 유턴 지원을 확대한 세법개정만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을 보임

- 2021년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10년 한국기업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중국에서 경영한 한국 기업<sup>26)</sup> 중 85.5%가 2011년 대비 현지 투자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sup>27)</sup>
  -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 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 중국(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순으로 답함
  - 중국 내 사업을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67.2%가 동남아와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한다고 대답하였으며, 한국으로의 리쇼어링은 13%만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에서는 글로벌 생산 과정 이론을 기반으로 오프쇼어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모국의 요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과거 국제무역 이론에서는 하나의 물건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점점 더 다양한 나라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함
  - 본 논문에서는 세분화된 국제적 노동력의 분업을 작업 교역(task trade)으로 정의하였고, 이 밖에도 생산의 수직적 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오프쇼어링(offshoring), 아웃소싱(outsourcing), 생산 공유(production sharing), 생산 분화(production fragmentation), 가치사슬의 절단(slicing the value chain)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생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함
    - 각각의 정의는 국제적 생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복수의 국가가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최종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방식을 설명함
  - 오프쇼어링을 통해 더 많은 인력을 연구개발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리카도의 무역이론이 주장하듯 비교우위를 가진 업무에 특화함으로써 무역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
  - 직무(task)의 난이도별로 저숙련 노동(L-tasks)과 고숙련 노동(H-tasks) 두 가지의 생산요소가 존재하는 오프쇼어링 모델을 제시함
    - 각각의 생산요소에서 중간재가 생산되고 중간재의 조합으로 두 가지 최종재가 만들어지며, 오프쇼어링은 저숙련 노동에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함

26)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를 활용, 중국 진출기업(금융업 제외) 512개사 대상 조사 (131개사 응답, 응답률 25.6%)

27) 한국경제인연합회, 「최근 10년 한국기업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조사」, 보도자료, 2021. 12. 22.

-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한다면 해외 이전에 따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과 개별 직무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며, 국내 생산과 해외 오프쇼어링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더 적은 쪽에서 생산하게 됨
- 아웃소싱 고정비용이 작을수록 오프쇼어링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짐
- 분석 결과 오프쇼어링이 가능한 직무와 관련된 요소들의 경우 생산성 효과 (productivity effect)로 인해 오히려 혜택을 얻게 됨

□ Dachs and Zanker(2014)에서는 2010~2012년 중반 유럽 제조업 회사들의 백쇼어링 (backshoring) 현황과 원인을 유럽제조업서베이(EMS)를 사용하여 분석

- 백쇼어링이란 제조 활동이 해외에서 본국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
- 유럽에서의 백쇼어링은 4% 정도로 2013년에서 2015년 중반 사이에 생산시설을 본국으로 옮김
  - 백쇼어링은 주로 전기·정보통신·자동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제조업에서 비중이 높으며, 저기술(low-technology) 산업에서 비중이 낮음
  -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백쇼어링 비율은 2% 정도이며 규모가 증가할수록 점차 백쇼어링 비율도 증가하여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7%임. 다만 기업 규모가 증가할수록 오프쇼어링 비율도 증가함
- 회사들은 대체로 품질의 질이나 유동성 측면에서의 불만족으로 백쇼어링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품질과 유동성은 2012년 유럽제조업서베이에서 백쇼어링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회사의 불만족 요인과 백쇼어링 요인이 일관성을 보임

□ De Backer, K., et al.(2016)에서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현황과 리쇼어링이 모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신흥국에서 본국으로 리쇼어링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신흥국의 임금 증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비용구조 변화
  - 인공지능, 로봇 등 제조업의 디지털화로 인해 저비용, 고품질 생산이 가능해짐
  - 계열사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 관리비용이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출되어 전체 비용 오산 또는 과소평가로 인한 리쇼어링
  -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중요한 경우 제조시설을 본사와 가까이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오프쇼어링 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위협
  -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복잡하고 광범위한 공급망 위험도 증가함.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가까이 옮길 수 있음
  - 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생산시설을 옮길 경우 기업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
  - 특히 미국의 리쇼어링은 달러 약세와 셰일 혁명이 원인이 됨. 역외생산의 에너지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 리쇼어링 시 셰일 혁명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하락함
- 회사들이 생산과정에서의 전략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요구와 개발도상국 경제 상황 변화로 리쇼어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이 일자리 증가보다는 자본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함

## 4. 해외사례

### 가. 미국

-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로 활발하게 이전하였으나, 제조업체 해외 이전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내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 또한 개발도상국의 인건비 상승,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제조비용 감소, 미·중 갈등 등을 계기로 리쇼어링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함<sup>28)</sup>
- 2021년 1,021개 기업이 미국으로 복귀하였고 이로 인해 약 13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 정부 인센티브, 고객·시장과의 접근성, 숙련된 인력, made in USA 이미지, 해외생산비용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sup>29)</sup>

28) 이언경, 「미국의 리쇼어링 (Reshoring) 추진 동향 분석」, 『계간 해양수산』 3(2), 2013, p. 132

29) Reshoring Initiative, “RESHORING INITIATIVE® IH2021 DATA REPORT,” <https://reshorennow.org/blog/reshoring-initiative-ih2021-data-report>, 검색일자: 2022. 1. 28; Reshoring Initiative, “RESHORING INITIATIVE 2018 DATA REPORT,” <https://reshorennow.org/blog/reshoring-initiative-2018-data-report>, 검색일자: 2022. 1. 28.

<표 II -6> 연도별 미국 리쇼어링 기업 현황

(단위: 개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7	159	243	446	354	305	284	635	921	645	1,021	1,104

자료: Reshoring Initiative 제공자료(2022. 2. 25.)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 제조업 강화 등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무역, 국가안보 강화에 초점을 두고 본격화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공급망 복원력 향상의 일환으로 리쇼어링이 가속화됨
  - 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공장이 가동 중단되면서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의료물자 부족, 물류난과 공급망 붕괴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오바마 정부는 2011년부터 ‘미국 제조업부흥(renaissance of the U.S. manufacture)’을 통해 제조업 강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2012년 2월 오바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세제혜택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이 개편안은 법인세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28%로 인하하는 것임
  - 또한 국내제조공제법안(Domestic Production Deduction)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체에 세금공제 혜택을 적용함
    - 제조업체의 경우, 최대 25%의 특별세율을 적용
  - 오프쇼어링에 대한 규제 및 리쇼어링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2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다단계 누진세율 15~35%)에서 단일세율 21%(2018년부터 영구적용)로 인하함
  - 최저한도세(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 기업설비투자 경비의 100% 공제 등 기업의 추가 세금경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sup>30)</sup>
  - 2020년 7월 발효된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에 따라 미국 내 현지 생산·납품 체계 중요성이 증가, 북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역내에서

30) 심혜정·강내영,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과 각국의 대응현황』,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2018, p. 2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며 리쇼어링 현상 심화<sup>31)</sup>

-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① 전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sup>32)</sup> ② 법인세 인하(35% → 오바마 정부 25% → 트럼프 정부 21%)와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장기적인 국내 생산비용 절감 지원 ③ 신규 지원제도의 비연속성·불확실성 제거(영구적인 R&D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함<sup>33)</sup>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다 구체화된 리쇼어링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국익과 공급망 복원력 향상을 위해 국가안보, 무역, 산업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함
  -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Made in America)’ 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10%를 부과하며,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여 해외이전기업의 세부담 증가
  - 핵심부품(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sup>34)</sup>에 따른 조사결과<sup>35)</sup> 공급망 구조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장·단기적 전략을 제시함<sup>36)</sup>
    - (단기적 조치) 필수부품을 선정하고 미국 내 생산 강화 추진, 배터리 공급망 확보, 미국 내 생산 가능한 주요 광물 파악 및 연구개발 지원, 주요 동맹국과의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 강화
    - (장기적 전략) 미국 제조 혁신 및 역량 재건, 노동자에 대한 투자 증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개발 지원, 필수 물자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등

31)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따라 자동차 수출 시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내 생산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2023년 75%까지 늘리고, 역내 생산되는 자동차 1대 구성품의 40%는 시간당 임금이 16달러 이상인 곳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70%를 역내산 제품을 사용해야 함

32)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 미국은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함

33) 『뉴스핌(Newspim)』, 「‘리쇼어링’, 미국은 뜨거웠고 한국은 차가웠다」, 2020. 7. 2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722000803>

34) Executive Order 14017, America’s Supply Chains, The White House, 2021. 2. 24.

35)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36)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바이든 행정부: 주요 4대 산업 공급망에 대한 100일 조사 보고서 발표」, 2021. 6. 8.

□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 -7〉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 관련 법령 내용

법령 번호 및 제정일자	법안	내용
Public Law 111-227 2010. 8. 11.	미국제조업강화법 (U.S. 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미국 내 생산에 필요한 수입원자재는 관세를 줄이고, 해외로부터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함
Public Law 111-226 2010. 8. 10.	아웃소싱 제한 (Preventing Outsourcing)	기업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것을 장려하는 세금 면제 종료
Public Law 113-235 2014. 12. 16.	2013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3)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에 지시하여 관련 기관과 함께 제조업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전시킴
Public Law 114-159 2016. 5. 20.	2016 미국 제조 경쟁력 강화 (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 of 2016)	미국기업이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함
Public Law 115-232 2018. 8. 13.	수출통제개혁법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군사·국가안보 관련 첨단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Public Law 110 - 49 2018. 12. 11.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	외국기업의 합병 등을 통한 기술 습득·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함
2021. 6. 상원안 2022. 2. 하원통과	미국 혁신경쟁법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Buy American’ 규정 강화, 반도체 R&D 역량 강화, 미국산 부품, 자재 등 사용 규정

자료: 이수영 외,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효과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 113

## 나. 일본

□ 일본의 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엔화 가치 상승을 계기로 오프쇼어링이 활발하게 있어왔으나, 장기적 불황 탈피와 약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본재흥전략(2013)’<sup>37)</sup> 차원에서 리쇼어링 유도정책을 추진함

37)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1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발표. 아베정권 출범(자민당) 이후, 일본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수립된 전략으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소득 재분배보다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적이며,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규제완화 추진 등

- 일본의 리쇼어링 주요 원인으로는 엔저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개선, 신흥국 인건비 상승 및 일본 내수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일본 소비시장 규모 확대에 현저한 리트 상실, 자동화와 기술개발에 따른 단위노동비용 감소 등을 들 수 있음<sup>38)</sup>
- 2012년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일본 제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일본 제조업체들이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리쇼어링 추진이 본격화됨
- 이에 내각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함<sup>39)</sup>

<표 II -8> 연도별 일본 리쇼어링 기업 현황

(단위: 개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08	572	510	554	628	724	650	725	612

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광의의 리쇼어링 개념을 사용하기에, FDI 회수, 투자계획 변경 및 아웃소싱 취소 등의 수치가 자국복귀기업의 수에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  
 자료: 강내영·강성은·도원빈,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 혁신과 리쇼어링 - 선진 제조강국을 중심으로 -」, 『Trade Focus』, 2021-0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

- 일본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권한과 자율성하에서 시행하는 유턴기업의 일본 내 기업유치정책을 통하여 지원함
  - 지방자치단체가 본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유치활동을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철폐, 법인세 인하, 경제특구제도 등 기업환경 개선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임<sup>40)</sup>
-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은 대표적인 일본 리쇼어링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 제정됨
  - 지역미래투자촉진 정책은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책정하면 중앙정부가 동의함

기업 여건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이 포함.

3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의 리쇼어링 현황과 시사점」, 2020. 11. 24.

39) 김종규,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2020.

40) 강수연·문제철, 「제4차 산업혁명과 광주전남지역으로의 리쇼어링」, 『전남광주 경제이슈』 NO. 2018-1, 2018, p. 14

- 동의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사업자가 지역경제건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지방자체단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구조임

-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원을 살펴보면 ‘지역미래투자촉진사업비 등 예산 지원조치’, ‘과세특례 등 세제지원’, ‘중소기업 설비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후보 기업 발굴 등 정보지원’, ‘공장입지법 특례 등 규제완화’ 등이 있음

〈표 II -9〉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법」 관련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예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미래투자촉진사업비(2020년도 예산 142.7억엔)</li> <li>• 제조업·상업·서비스 고도연계촉진사업비(2020년 예산 10.1억엔)</li> <li>• 지역혁신기본정비사업비(2019년도 예산: 5.5억엔)</li> <li>• 지방창생추진교부금 활용(2020년도 예산: 1,000억엔)</li> </ul>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의 특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조치</li> <li>• 지자체의 고정자산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한 보전 조치</li> </ul>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 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설비자금, 운전자금을 고정금리로 융자</li> </ul> </li> <li>• 지방경제활성화지원기구(REASAS),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에 의한 펀드 창설 및 활용</li> </ul>
정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ASAS) 등을 활용하여 후보기업 발굴 등을 정보제공</li> </ul>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입지법」의 녹지 면적을 완화</li> <li>• 농지전용 허용, 시가화 조정구역의 개발허가 등 고려</li> <li>• 일반사단법인을 지역단체상표 등록주체로 추가</li> <li>• 지자체에 사업자가 사업환경정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li> </ul>

자료: 經濟産業省, 「地域未來投資促進政策について」, 2020.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정

-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조달 어려움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차 보정(추가)예산에서 생산거점의 국내회귀를 촉진하는 보조금 2,200억엔을 국내복귀 기업에 지원
  - 건물취득비·설비비·시스템 구축비의 일정 비율을 150억엔 한도로 국내복귀 촉진보조금을 지급<sup>41)</sup>

41) 손동희,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

□ 2020년 4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경제 대책의 하나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발표<sup>42)</sup>

- 자국 기업들이 공장을 일본으로 유턴할 경우 정부가 이전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는 중국산 소재, 부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임

<표 II -10> 일본 정부의 국내투자촉진보조금 주요 내용

유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A	[기업의 생산거점 투자] •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및 이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통해 제품을 생산	[아래 2개 요건 모두 충족] • 생산거점의 집중도 • 설비기계 장치의 첨단성	1/2 이내	2/3 이내
B	[국내 생산거점 투자] • 일시적 수요 증가로 수급에 애로가 있는 국민건강 관련 중요 제품의 국내 생산거점 투자 * 중요제품: 마스크,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아래 3개 요건 모두 충족] • 수요 부족 •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품목 • 설비투자 효과(물류시설만)	2/3 이내	3/4 이내
C	[공동투자] •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생산을 위한 다수 중소기업의 공동투자	[아래 3개 요건 모두 충족] • 복수의 중소기업 등의 그룹이 공동 실시·신청하는 사업 • 유형A의 요건 충족 • 그룹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또는 시너지 효과 창출	-	3/4 이내

주: 지원비율은 총 소요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손동희,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

□ 일본의 연도별 리쇼어링 관련 입법 현황 및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음

4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의 리쇼어링 현황과 시사점』, 2020.

<표 II -11>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 관련 법령 및 지원 정책

연도	내 용												
2002,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규제법」 폐지</li> <li>-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2002년)</li> <li>- 「공장재배치 촉진법」(2006년): 수도권 공장 진입 규제 전면 폐지</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재흥전략,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시책</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정</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미래투자촉진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예산지원</td> <td>지역미래투자촉진 사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 고도연계촉진사업, 지역혁신기본 정비사업, 지방창생추진교부금 활용</td> </tr> <tr> <td>세제지원</td> <td>과세특례, 첨단산업 설비투자 감세, 지자체의 고정자산세 지방세 감면</td> </tr> <tr> <td>금융지원</td> <td>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 원활화, 지방경제활성화지원기구,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 등에 의한 펀드 활용</td> </tr> <tr> <td>정보지원</td> <td>지역경제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후보기업 발굴 등 정보 제공</td> </tr> <tr> <td>규제특례</td> <td>공장입지법의 녹지 면적 완화, 일반 사단법인을 지역단체상표 등록주체 추가</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예산지원	지역미래투자촉진 사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 고도연계촉진사업, 지역혁신기본 정비사업, 지방창생추진교부금 활용	세제지원	과세특례, 첨단산업 설비투자 감세, 지자체의 고정자산세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 원활화, 지방경제활성화지원기구,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 등에 의한 펀드 활용	정보지원	지역경제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후보기업 발굴 등 정보 제공	규제특례	공장입지법의 녹지 면적 완화, 일반 사단법인을 지역단체상표 등록주체 추가
	구분	지원내용											
	예산지원	지역미래투자촉진 사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 고도연계촉진사업, 지역혁신기본 정비사업, 지방창생추진교부금 활용											
	세제지원	과세특례, 첨단산업 설비투자 감세, 지자체의 고정자산세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 원활화, 지방경제활성화지원기구,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 등에 의한 펀드 활용											
	정보지원	지역경제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후보기업 발굴 등 정보 제공											
규제특례	공장입지법의 녹지 면적 완화, 일반 사단법인을 지역단체상표 등록주체 추가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정 및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정</li> <li>-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대책으로 국내 생산거점 확보 등을 위한 투자촉진 보조금 2,200억엔을 국내회귀 기업에 지원</li> <li>• 서플라인 체인 개혁</li> <li>- 해외에 진출한 제품 및 부품소재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하거나 아세안 국가로 생산설비를 다변화할 경우 비용 지원(대기업 50%, 중소기업 67%)</li> <li>-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 물품과 의약품 등 생산 기업은 최대 75%까지 지원</li> <li>- 의약품 업계의 일본 거점 정비 비용 50% 보조 등</li> </ul>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안전보장추진법」</li> <li>-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각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소재부품 공급이 중단·지연되어 반도체나 희귀금속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국회를 통과함</li> <li>-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의 경제안전보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자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가속화</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공급망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중요 물자(반도체, 의약품, 중요 광물, 축전지 원재료 등)이 대상</li> <li>•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를 정부가 체크</li> </ul> </td> </tr> <tr> <td>인프라 안정 확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통신, 금융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14개 업종의 대기업이 대상</li> <li>• 중요기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전 심사(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방지)</li> </ul> </td> </tr> <tr> <td>특허 비공개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는 1년 반 후에 공개, 해외 기업의 군사 목적 전용 우려 ⇒ (향후로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내용을 비공개화 가능</li> </ul> </td> </tr> <tr> <td>첨단기술 연구개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 AI, 양자 등 안전보장 관련 &lt;특정 중요기술&gt;의 연구개발에 대해 자금 지원</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내용	공급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중요 물자(반도체, 의약품, 중요 광물, 축전지 원재료 등)이 대상</li> <li>•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를 정부가 체크</li> </ul>	인프라 안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통신, 금융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14개 업종의 대기업이 대상</li> <li>• 중요기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전 심사(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방지)</li> </ul>	특허 비공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는 1년 반 후에 공개, 해외 기업의 군사 목적 전용 우려 ⇒ (향후로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내용을 비공개화 가능</li> </ul>	첨단기술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 AI, 양자 등 안전보장 관련 &lt;특정 중요기술&gt;의 연구개발에 대해 자금 지원</li> </ul>		
	구분	지원내용											
	공급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중요 물자(반도체, 의약품, 중요 광물, 축전지 원재료 등)이 대상</li> <li>•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를 정부가 체크</li> </ul>											
	인프라 안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통신, 금융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14개 업종의 대기업이 대상</li> <li>• 중요기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전 심사(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방지)</li> </ul>											
	특허 비공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는 1년 반 후에 공개, 해외 기업의 군사 목적 전용 우려 ⇒ (향후로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내용을 비공개화 가능</li> </ul>											
첨단기술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주, AI, 양자 등 안전보장 관련 &lt;특정 중요기술&gt;의 연구개발에 대해 자금 지원</li> </ul>												

자료: 강유정·최보람(202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0); 김종규(2020); KOTRA 해외시장뉴스(2022)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최근 일본은 코로나19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도시 봉쇄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리쇼어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sup>43)</sup>
  - 일본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00년 14.5%, 2016년 25.8%로 최고점 이후 2019년 23.5%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중국 수입 의존도는 미국(2019년 18.1%), 한국(2019년 21.3%)보다 높은 수준으로 리쇼어링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일본 제조업 기업들이 자국복귀를 결정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엔화 약세가 있음. 엔화와 세계 각국 통화 간 환율을 의미하는 ‘실질실효환율’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엔저가 진행 중이며,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 등 여타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엔화 가치가 낮아져 제조업 분야의 국내 생산 회귀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봄

<표 II -12> 2022년에 발표된 일본 제조업 분야의 본국 제조거점 건설 사례

기업	내용
SUBARU [자동차]	군마 현에 EV 공장 신설. 2027년 생산 가동 예정. 향후 5년간 국내 생산 체제 재편에 약 2,500억엔을 투자 예정
TDK [전자부품]	이와테 현에 공장 신설. 2024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500억엔. EV 관련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증산 목적. 약 400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전망
KIOXIA [전자부품]	이와테 현에 공장 신설. 2023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1조엔. NAND 3차원 플래시 메모리 증산 목적. 올해 가을에는 미에 현에 건설 중인 신공장이 생산에 들어갈 예정
일본항공 전자공업 [전자부품]	야마가타 현에 공장 신설. 2023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65억엔. EV, 스마트폰 등에서 수요가 증가 중인 커넥터 증산 목적
JVC KENWOOD [내비게이션]	국내용 제품 생산을 인도네시아와 상하이로부터 나가노 현으로 이관. 철저한 자동화로 아시아 신흥국과 동등한 수준까지 생산비용 억제 추진. 기존 해외거점은 현지용 제품 생산을 지속
캐논 [전자기기]	2025년까지 사무기기를 중심으로 고급 기종의 생산을 일본 국내로 이관 예정. 21년 기준으로 66%인 일본 국내생산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
KANEKA [의료기기]	홋카이도에 공장 신설. 투자 총액은 약 100억엔으로 2024년 생산 가동 예정. 신공장에서는 혈액 정화기를 생산할 예정이며 부지 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제로 에너지 팩토리를 지향

43)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급망 혼란 및 엔저로 자국복귀 속도 내는 日 기업들」, 2022. 7. 1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10&CONTENTS\\_NO=1&bbsSn=242&pNttSn=195215](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10&CONTENTS_NO=1&bbsSn=242&pNttSn=195215), 검색일자: 2022. 7. 13.

<표 II -12>의 계속

기업	내용
JX금속 [전자부품]	이바라기 현에 공장 신설. 2025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2,000억엔. 반도체용 스퍼터링(Sputtering) 타깃, 압연 동박, 고기능 동합금조, 결정 재료 등을 제조
고바야시제약 [의약품]	미야기 현에 공장 증설. 2025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 약 250억엔. 세계 각국의 법률 규제에 대응한 제품을 제조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가 목적
교세라 [전자부품]	가고시마 현에 공장 신설. 2023년 생산 가동 예정. 투자 총액은 약 625억엔. 유기 패키지, 수정 디바이스용 패키지 등 반도체 부품 증산 목적
시세이도 [화장품]	후쿠오카에 공장 신설. 2022년 4월부터 생산 개시. 최근 3년 사이에 일본 국내에 3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며 국내 생산을 2배로 확대. 공장 신설에 투입한 총투자액은 약 1,400억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반도체]	2014년에 폐쇄한 야마나시 공장에서의 생산을 2024년부터 재개한다고 발표. 투자 총액은 약 900억엔. 파워 반도체 양산 목적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2)

#### 다. 대만

- 1980년부터 대만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2008년 출범한 대만 마잉주 정부의 ‘대삼통(大三通)’ 정책<sup>44)</sup>과 2010년에 체결된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으로 중국과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이 용이해지고 관세 삭감과 더불어 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가 증대됨
- 대만은 2006년 『해외투자기업 유턴투자 유치 강화조치 및 세부계획(加強協助台商回國投資措施暨細部計畫)』을 발표하고, 11월에는 유턴투자추진 전담부서(促進台商回台投資專案小組)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함
- 2012년 11월, 대만 국민당은 ‘대만기업 국내 유턴 및 투자추진방안(加強推動台商回臺投資方案)’을 발표하여 2014년 말까지 고부가가치 제품 및 핵심 부품산업, 대만계 다국적기업 중 R&D 부서 및 경영본부, 그 외 대만 정부에서 장려하는 업종이

44) 중국과 우편(通郵), 상업(通商), 교통(通航)의 교류를 개선하는 정책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경우 우대책을 제공함

- 외국인노동자를 평균 약 15~20%가량 초과해 고용할 수 있으며, 5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세(就業安定費)’를 면제함

<표 II -13> 대만기업 국내 유턴 및 투자추진방안(加強推動台商回臺投資方案)

지원제도	주요 내용
토지 우대	• 처음 2년간의 임대료 100% 면제, 3~4년차에는 40%, 5~6년차에는 20% 우대
자금 제공	• 중소기업신용기금보증금 자원(중소기업의 대출 보증, 동일 기업의 최대 용자한도는 1억대만달러까지 가능) • 국가발전기금 지원(이 기금의 100억대만달러를 민간 투자회사와 운용, 중소기업에 자금 형성)
세제 혜택	• 영리사업자 소득세율을 17%까지 낮춤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고도로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15%의 공제혜택 제공
R&D 보조	• 소기업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보조(SBIR) • 산업기술개발계획, 과학기술응용 및 서비스 혁신 계획, 선도적 신제품 개발계획(자격요건 부합자에 한해 자금 보조) • 서비스업 연구기술 개발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	• 산업별로 외국인노동자 고용비율 완화(자국민 대비 약 10~35%까지)

자료: 임민경·여지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 83

-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혁신 및 고부가가치 업종 대만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턴기업투자 환영 행동방안(歡迎台商回台投資行動方案)’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짐<sup>45)</sup>

<표 II -14> 대만 유턴기업투자 환영 행동방안(歡迎台商回台投資行動方案)

지원제도	주요 내용
대상	• 중국에 2년 이상 투자 진출한 대만기업 중 미·중 무역마찰 충격으로 본국 회귀 및 투자 희망 기업 • 제조업 생산라인에 스마트 기술 요소 혹은 스마트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조건	• △‘5+2’ 산업혁신 영역 <sup>46)</sup> △고부가가치 제품 및 관련 소재·부품 산업 △국제 공급사슬(GVC) 핵심 위치 △자체 브랜드 국제 판매 △국가 중요 산업정책 관련 사업 투자 등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

45) 윤별아,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외정책대응 및 감사 시사점』, 감사연구원, 2019, p. 34

<표 II -14>의 계속

지원제도	주요 내용
대출 한도	• 국가발전기금을 통한 5,000억NTD 규모
은행 대출이자 정부 보조	• 중소기업: 1.5% 대출이자 지원, 대출기한 5년 • 대기업: 20억NTD 이하 0.5%, 20억~100억NTD 0.3%, 100억NTD 초과는 0.1% 보조, 대출기한 5년
기타 우대혜택	• △외국인 근로자 비율 최대 40%까지 허용 △용지 △안정적 수력·전력 공급 △세무 전담 서비스제공
목표	• 3년간 9,000억NTD의 투자 유치, 7만 7천개 일자리 기회 창출

자료: 오윤미(2021), p. 8 <표 2>, 재인용

- 2019년 8월, 해외자금의 본국회귀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해외자금회귀전문법(海外資金匯回專法)」을 발효<sup>47)</sup>
  - 동 법안은 회귀 자금에 대한 과세율을 회귀 첫해와 이듬해 과세율을 8%와 10%를 적용하며,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한 이후에 실질투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과세율 절반에 해당하는 4%, 5% 상당의 세금환급이 가능토록 규정

## 라. 유럽

- 유럽의 리쇼어링은 ‘성장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유럽 산업(A Strong European Industry for Growth and Economic Recovery)’과 ‘유럽 산업 르네상스(For a European Industrial Renaissance, 2014)’ 정책을 통해 EU의 생산 증대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리쇼어링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제시됨
  - 리쇼어링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국외 생산품 운송비용 증가, 지적재산권 침해, 낮은 생산 공정혁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신흥 개도국으로 이전한 제조업 기업을 선진국 자국으로 다시 이전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안정화와 미·중 간 무역 갈등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리쇼어링 정책 이슈가 크게 부각됨

46) ‘5+2’ 산업은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기계, 바이오메디컬, 방위’와 ‘순환경제, 신농업’을 지칭  
 47) 외교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대만 리쇼어링 동향(해외자금회귀전문법 시행 1주년)」, 2020. 9. 1., [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458/view.do?seq=1346699&page=1](https://overseas.mofa.go.kr/tw-ko/brd/m_1458/view.do?seq=1346699&page=1), 검색일자: 2022. 2. 23.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53개 기업이 유럽으로 유턴하였으며 이 중 제조업 비중이 85%(218개)를 차지함<sup>48)</sup>
  - 리쇼어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12,840개에 달하며 유턴기업당 약 130여 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남<sup>49)</sup>

<표 II -15> 유럽 개별 국가의 리쇼어링 주요 정책 내용

지원제도	주요 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영국무역투자(UK Trade &amp; Investment)와 제조업자문서비스(Manufacturing Advisory Service)는 ‘Reshore UK’를 구축함</li> <li>• ‘Reshore UK’는 리쇼어링 기업을 위한 입지 전략, 비즈니스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li> <li>• 영국 정부는 Advanced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itiative에 금융 지원을 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함</li> <li>• Advanced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itiative는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함</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기업의 복귀를 위해 Colbert 2.0 소프트웨어를 개발·구축함</li> <li>• Colbert 2.0은 기업들이 자국 복귀 시 예비진단, 정부지원금, 컨설팅 업체와의 연결 등을 지원하는 자문 서비스임</li> <li>• 프랑스 정부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MIF(Made in France)를 시행하여 프랑스산 제품을 장려하는 등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함</li> <li>• 코로나19로 의료품의 국내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당 분야의 생산 및 R&amp;D를 위한 액션플랜을 제시함</li> <li>• 미래산업(Industrie de Futur) 정책을 수립하여 독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제조업 디지털화에 대한 로드맵 구축·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해 협력함</li> </ul>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고용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는 리쇼어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펀드(Summer Foundation, n.d.)를 조성함</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혁신 및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한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 리쇼어링 정책은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li> <li>•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해 실질과세율을 29.8%로 낮춤</li> <li>•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간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함</li> </ul>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밀리아 로마냐(Emilia-Romagna) 지역의 투자촉진법은 이탈리아 리쇼어링 정책의 모범 사례에 해당됨</li> <li>• 해당 정책은 지역특화산업, 기술혁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및 행정 지원 등 혜택을 주며 해당 지역 내 리쇼어링을 유인함</li> </ul>

자료: 민혁기 외(2021), pp. 55~56 <표 4-4>

48) Eurofound(2019), *The future of manufacturing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49) 전체 리쇼어링 기업 중 약 40% 기업의 고용 효과로 추정된 추정치임.

### Ⅲ. 타당성 분석





### Ⅲ. 타당성 분석

#### 1. 정부 역할의 필요성

##### 가. 정부 개입의 정당성

-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함
  
- (효율성) 먼저, 본 조세특례제도는 시장실패 교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동 조세특례제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함으로써 일자리 및 국내 투자를 증가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됨
  - 이는, 기업이 사업장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정부가 개입하는 것임
  - 기업은 이윤 극대화의 논리에 기반하여 이전 시의 편익(연구개발 가능성, 자금 조달의 편의성, 제품의 질 향상 등)과 비용(이전비용, 인건비 상승 등)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경우에 이전을 결정함
  - 기업의 이전에 따른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부의 개입은 해외에서의 생산 혹은 해외사업장 폐쇄가 국내에서의 생산보다 효율적이더라도 국내복귀를 결정하게 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낳을 수 있음
  
- 하지만, 국내복귀로 인한 양(+)의 외부성(externality)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사회후생<sup>50)</sup>을 증가시킬 수 있음

50) 사회후생을 국내로 한정하는지, 다른 나라(해외진출국)의 효용도 함께 고려하는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회후생은 국내의 사회후생으로 한정하여 논의함.

- 외부성(externality)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시장을 통하지 않고 영향을 줄 때 발생하는데, 양(+의) 외부성은 다른 경제주체에게 시장을 통하지 않고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에 해당함(Rosen and Gayer, 2010)
  - 양(+의) 외부성이 있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발생하고, 정부의 개입은 양의 외부성이 있는 행위(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실패를 해결함(Rosen and Gayer, 2010)
  -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고용 및 투자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국민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면 양의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국내복귀 촉진은 효율성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음
- 본 조세특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나아가 투자 및 고용 증진과 같은 양(+의) 외부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고용·투자계획 및 통계자료와 기업유치 관련 참고문헌을 검토함으로써 양(+의) 외부효과 존재 가능성을 살펴봄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손동희(2021)는 국내복귀기업 84개사의 고용계획과 투자계획을 정리함
- 대상 기업은 12개의 대·중견기업과 72개의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자동차 12개사, 금속 8개사, 기계 7개사, 화학 6개사, 전자 17개사, 신발 8개사, 주얼리 13개사, 섬유 5개사, 기타 8개사를 포함
- 2020년 9월 기준 국내복귀 기업 84개사의 총고용계획은 3,242명으로 기업당 평균 39명 수준이었음(<표 III-1> 참고)
- 13개의 주얼리기업의 고용계획이 총 5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17개의 전자기업에서 551명, 7개의 기계기업에서 440명, 8개의 신발기업에서 425명 순이었음
  - 평균 고용계획은 기계기업에서 기업당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기업 53명, 섬유기업 45명, 주얼리기업 43명 순으로 많았음

- 또한, 2020년 9월 기준 국내복귀 기업 84개사의 총투자계획은 1조 2,477억원이며, 평균 148억 5,000만원 수준이었음(<표 III-2> 참고)
  - 12개 자동차기업의 투자계획 총액이 4,4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8개 금속기업에서 2,073억원, 6개 화학기업에서 1,895억원, 7개 기계기업에서 1,189억원, 17개 전자기업에서 1,034억원 순이었음
  - 평균 투자규모는 자동차기업이 기업당 36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화학기업이 315억 8,000만원, 금속기업이 259억 1,000만원, 기계기업이 169억 9,000만원 순이었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의 실제 고용 및 투자의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2021년까지 총 108개의 기업이 복귀하여, 연평균 13개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함
  
- 산업통상자원부(2022)는 2021년 기준 21개의 국내복귀기업의 총투자규모는 6,815억원으로, 기업당 262억원 수준으로 발표함
  - 복귀기업의 투자규모는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투자 총액은 전년(2020년) 대비 22%, 평균 투자금액은 15.3% 증가하였음([그림 III-1] 참고)
  
- 또한, 2021년 기준 21개 국내복귀기업의 총고용규모는 1,820명으로 기업당 70명 수준임
  - 복귀기업의 고용수준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총고용규모는 전년(2020년) 대비 55%, 평균 고용자 수는 43.7% 증가함([그림 III-2] 참고)

<표 III-1> 국내복귀기업의 규모별·업종별 고용 계획

(단위: 개, 명)

구분	자동차			금속			기계			화학			전자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투자계획	대중견	4	80	20	2	120	60	-	-	-	3	94	31	2	150	75
	중소	8	296	37	6	181	30	7	440	63	3	80	27	15	401	27
	소계	12	376	31	8	301	38	7	440	63	6	174	29	17	551	32

<표 III-1>의 계속

(단위: 개, 명)

구분	신발			주얼리			섬유			기타			합계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투자계획	대중견	-	-	-	-	-	1	7	7	-	-	-	12	451	38	
	중소	8	425	53	13	554	43	4	216	54	8	198	25	72	2,791	39
	소계	8	425	53	13	554	43	5	223	45	8	198	25	84	3,242	39

주: 1. 평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수임  
 2. 각 산업별·기업별 투자계획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2021. 5. p. 58

<표 III-2> 국내복귀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투자 계획

(단위: 개, 억원)

구분	자동차			금속			기계			화학			전자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투자계획	대중견	4	3,879	969.8	2	1,950	975.0	-	-	-	3	1,655	551.7	2	326	163.0
	중소	8	537	67.1	6	123	20.5	7	1,189	169.9	3	240	80.0	15	708	47.2
	소계	12	4,416	368.0	8	2,073	259.1	7	1,189	169.9	6	1,895	315.8	17	1,034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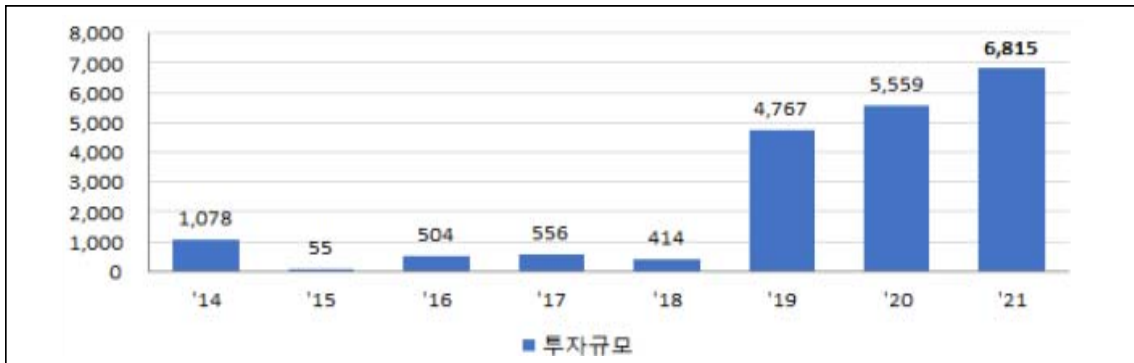
  

구분	신발			주얼리			섬유			기타			합계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개사	총액	평균	
투자계획	대중견	-	-	-	-	-	1	12	12.0	-	-	-	12	7,822	651.8	
	중소	8	500	62.5	13	365	28.1	4	244	61.0	8	749	93.6	72	4,655	64.7
	소계	8	500	62.5	13	365	28.1	5	256	51.2	8	749	93.6	84	12,477	148.5

주: 각 산업별·기업별 투자계획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2021. 5. p. 57

[그림 III-1] 2014~2021년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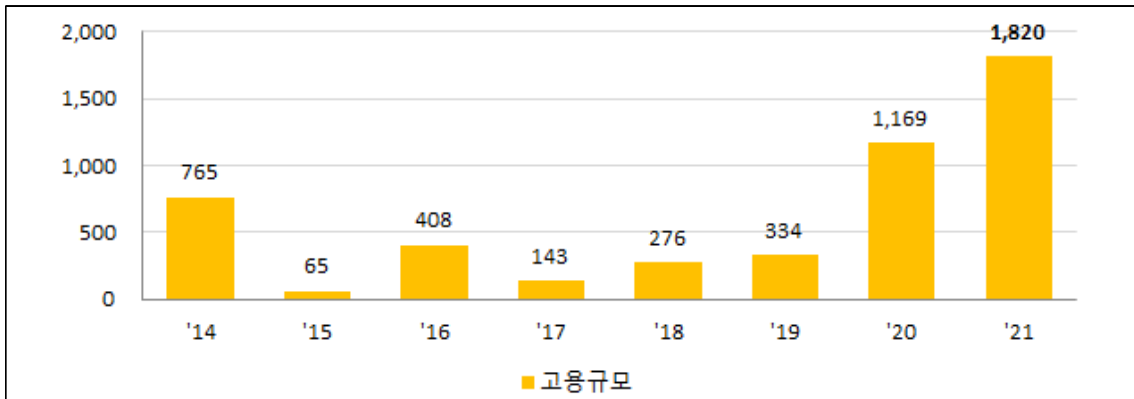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년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동향」, 2022. 1. 11.

[그림 III-2] 2014~2021년 국내복귀기업의 고용규모

(단위: 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년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동향」, 2022. 1. 11.

- 반면, 기업 이전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상반된 결론을 보고함
  - 강법식·김덕모(2006), 정세은·김봉한(2009), 홍성호(2012) 등의 국내 논문들은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에 지역의 고용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 반면, 국내복귀가 주로 한정적인 생산라인에만 국한된다면 그에 따른 고용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제품의 질 향상 및 경제 성장과 같은 파급효과에 대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존재함(이수영·남시훈, 2019; Barbiedri et al., 2018; De Backer, K. et al., 2016; Cassia, F., 2020)
- 결론적으로, 국내복귀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존재하나, 기업의 국내복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함
- 따라서, 먼저 본 조세특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였는지와 그것이 유의한 고용 및 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부의 개입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형평성) 동 조세특례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음

- 기업의 사업장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본 조세특례 외에도 유사 조세특례제도가 존재함<sup>51)</sup>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제63조의 2는 국내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수도권 과밀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 이전 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임(<표 III-3>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표 III-4>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7은 국내 투자 외국인 기업들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관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 자본의 유치 등을 목표로 제정되었음<sup>52)</sup>
  - 감면율은 지역과 투자요건(업종 및 투자금액)에 따라 상이함(<표 III-5>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와 제61조는 사업자가 공장 및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익금 산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세부담 집중을 완화하고자 제정됨(<표 III-6> 참고)
- 위의 유사 조세특례제도는 국내 경제발전 기여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기업들의 위치 선정 문제에 개입하고 이전 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본 조세특례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음
  - 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국내기업과 국내 투자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 기업들과의 형평성 측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51) 윤충식·장태희·강지현(2017)을 참조하여 작성

52)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5&ccfNo=4&cciNo=1&cnpClsNo=2>, 검색일자: 2022. 6. 15.

- 결론적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치로 인한 국내 투자 및 고용과 같은 긍정적인 파급효과의 존재 및 크기에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것으로 보이나 파급효과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유사 조세제도로 인한 수혜기업과 비슷한 선택 상황에 놓인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비슷한 유인을 준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

<표 III-3> 「조특법」 제104조의 24와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비교

구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본 조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비교 조세특례)
근거규정	「조특법」 제104조의 24	「조특법」 제63조
요건	대상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 혹은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업장(법인, 개인)
	이전	<p>해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신설·증설</p> <p>(완전복귀: 해외사업장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개시 후 4년 이내 국외 경영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li> <li>- 사업장 양도 및 폐쇄 후 1년이 내에 창업 혹은 사업장 시설 또는 증설</li> </ul> <p>(부분복귀: 해외사업장 축소·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축소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li> </ul>
	업종	이전 또는 복귀 전과 동일 업종 영위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분류 기준)
감면소득	이전 후 발생 소득	
세액감면	<p>(완전복귀: 해외사업장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년간 감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li> </ul> <p>(부분복귀: 해외사업장 축소·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도권: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li>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 감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li> <li>- 수도권 연접지역으로 이전: 7년간 감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li> </ul>

자료: 윤충식·장태희·강지현(2017), p. 778 표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4> 「조특법」 제104조의 24와 「조특법」 제63조의 2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비교

구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본 조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비교 조세특례)
근거규정	「조특법」 제104조의 24	「조특법」 제63조의 2
요건	대상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 혹은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업장(법인, 개인)
	이전	해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신설·증설 (완전복귀: 해외사업장 폐쇄) - 사업 개시 후 4년 이내 국외 경영 사업장 양도 또는 폐쇄 - 사업장 양도 및 폐쇄 후 1년 이내에 창업 혹은 사업장 시설 또는 증설 (부분복귀: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사업장 축소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1년 이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업종	이전 후 동일 업종 영위(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기준)
감면소득	이전 후 발생 소득	
세액감면	(완전복귀: 해외사업장 폐쇄) - 7년간 감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부분복귀: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비수도권: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 10년간 감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수도권 연접지역: 7년간 감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자료: 윤충식·장태희·강지현(2017), p. 778 표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5> 「조특법」 제121조의 2~7의 감면대상 사업별 감면기간 및 비율

감면대상사업	감면대상별 감면기간 및 비율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관세 등 (자본세)
고도기술수반사업	5년(100%)	5년(100%)	관세·개소세 ·부가세(5년)
산업지원서비스업	2년(50%)	2년(50%)	
특정지역	외투지역	희망지역(7년형) 5년형	관세5년
	경제자유구역	3년(100%)	
	자유무역지역	2년(50%)	
	기업도시개발구역		

자료: 윤충식·장태희·강지현(2017), p. 1566 표를 참고하여 제작성

〈표 III-6〉 「조특법」 제60조~61조의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구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근거규정	「조특법」 제60조	「조특법」 제61조	
요건	대상법인	대도시 안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이전요건	대도시 → 대도시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1년 또는 3년 내 이전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3년 내 이전
	업종요건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과세이연	-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이전비율 -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자료: 윤충식·장태희·강지현(2017), p. 750의 표를 참고하여 재작성

## 나. 정책환경 분석

- 기업의 사업장 선정은 장기적인 계획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적인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만으로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경우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해외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환경의 부정적인 변화로 국내복귀를 고려하게 된 경우 본 조세특례로 인한 혜택은 국내복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 본 절에서는 해외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환경의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봄
  - 첫 번째로, 기업의 사업장 이전 결정요인을 알아봄
  - 두 번째로, 정책환경을 살펴봄
  - 세 번째로, 정부의 역할을 살펴봄

### 1) 기업의 사업장 이전 결정요인

- McIvor and Bals(2021)은 기업의 사업장 이전을 다음의 세 단계로 정리함
  - 사업장 이전 유발요인이 발생하는 단계

- 사업장 이전 비용을 계산하는 단계
  - 이전 위치 선정 단계
- 사업장 이전 유발요인은 기업의 전략 변화와 해외진출국에서의 생산에 대한 불만족이 있음
- 기업전략 변화의 예로는 생산과정 통합, 공급사슬(supply chain)의 변화, 브랜드 가치 향상, made-in 효과 등이 있음
  - 해외진출국에서의 생산에 대한 불만족은 해외생산비용 및 운송비용의 증가, 낮은 제품의 질, 생산과정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 낮은 인적자본, 정부정책의 변화 등이 있음
  - 해외진출국에서의 생산에 대한 불만족은 상대적인 개념임
    - 즉, 국내에서의 생산이 유리해지는 경우 진출국 생산에 대한 불만족은 증가할 수 있음
    - 예로는, 국내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우수한 인적자본의 활용 가능성 등이 있음
- 사업장 이전을 결정한 후에는 사업장 이전의 비용을 계산함
- 사업장 이전 비용은 물리적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해외 진출국 원재료 공급자와의 관계유지 문제, 재정적 손실 가능성 등을 포함
- 이전을 결정 후, 국내복귀와 해외 타 국가로의 이전을 비교하여 최종 이전 위치를 결정

## 2) 정책환경 분석

- 과거, 기업은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높은 수익을 위해 해외진출을 결정함
- 본 연구에서의 설문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기업(30개)들은 해외진출 당시 높은 수익이나(26.7%), 현지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26.7%)하기 위해 이전했음
  - 또한, 해외진출 중인 기업(국내로 복귀하지 않은)들의 해외진출 요인도 위와 유사하여 현지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했기 때문(42.%)에 해외진출을 결

정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현지시장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31%)이었음

□ 현지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은 예상하지 못한 현지시장의 변화로 국내복귀를 결정함

○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현지에서의 낮은 수익성(33.3%), 현지 정책의 변화(20%) 및 생산비용의 변화(10%)의 이유로 국내로 복귀함

○ 중소기업중앙회(2020)의 설문조사에서도 해외진출 중(국내로 복귀하지 않은)인 중소기업들도 현지 생산비용 상승(50%)을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음

□ 실제로, 주요 해외진출국에서 인건비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변화가 관찰됨([그림 III-3] 참고)

○ 최대 해외진출국인 중국(69%<sup>53</sup>)의 경우 2011년 대비 2020년 연평균 임금이 2.4배가량 상승함

- 2011년 연평균 임금은 784만원<sup>54</sup>(40,000중국위안<sup>55</sup>) 정도였으나, 2020년도에는 1,900만원(9만 7,000중국위안<sup>56</sup>)으로 상승함

○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의 해외진출국인 베트남(11%<sup>57</sup>)의 경우에도 2011년 대비 2020년 월평균 최저임금이 2.8배 상승함

- 2011년 월평균 최저임금은 2011년 기준 9만원<sup>58</sup>(1,550,000베트남 동)에서 2020년도에 25만원(4,420,000베트남 동)으로 상승함<sup>59</sup>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도 국내복귀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기업들은 인적·물적자원의 이동제한, 질병통제를 위한 정부정책

5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54) 환율 196.01원/위안 적용(시티은행, <https://www.citibank.co.kr/FxdExrt0100.act>, 검색일자: 2022. 7. 18.)

55)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908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9082), 검색일자: 2022. 4. 11.

56)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908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9082), 검색일자: 2022. 4. 11.

5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58) 환율은 0.056원/베트남 동 적용(VALUEAFX, <https://ko.valutafx.com/KRW-VND.htm>, 검색일자: 2022.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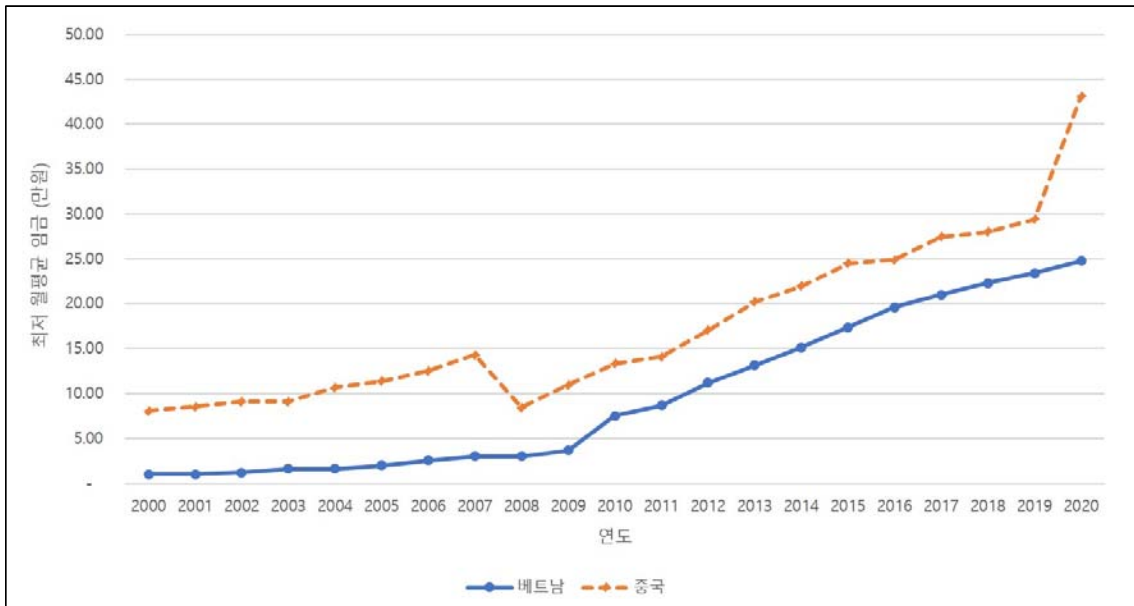
59) 컨트리이코노미, <https://countryeconomy.com/national-minimum-wage/vietnam>, 검색일자: 2022. 4. 11.

변화 등으로 공급사슬(supply chain)에 예상치 못한 교란을 경험하면서, 제품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을 겪게 됨(Strange, 2020)

- 또한, 코로나19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따라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국내복귀를 고려할 수 있음(Barbieri et al., 2020)

[그림 III-3] 중국·베트남 최저 월평균 임금 상승: 2000~2020년도

(단위: 만원)



자료: 컨트리이코노미(countryeconomy) minimum-wag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정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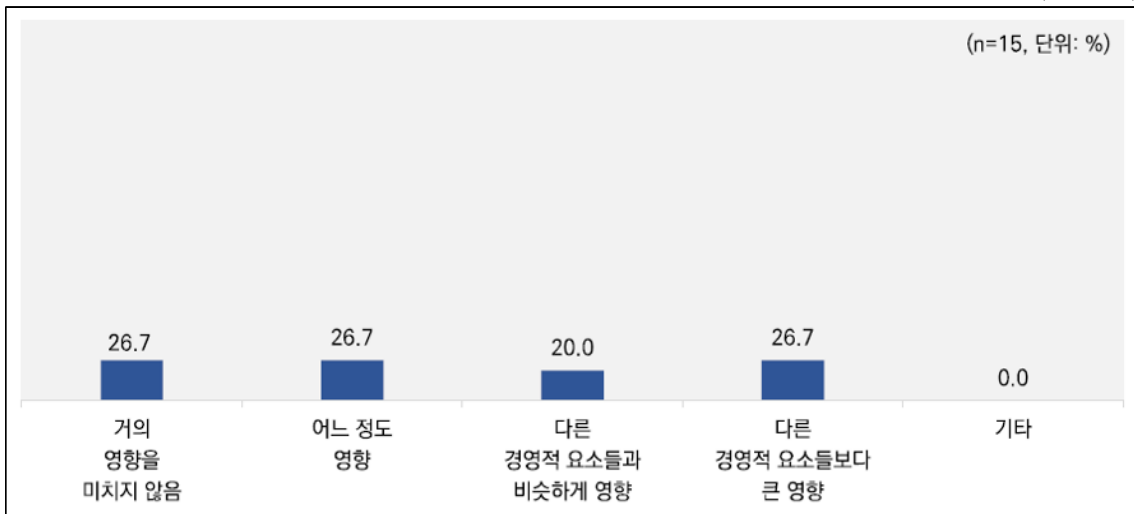
- 복귀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수 있음
- 먼저, 정부는 해외에서의 기업활동보다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이 장·단기적으로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사업장 이전 및 국내복귀를 유도할 수 있음
  - 고용보조금의 지급, 해외근로자 비자 지원 등으로 인건비 압박을 줄이고 고용 정책의 변화, 기초 및 고등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 등으로 국내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법인세 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을 통해 세후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에서의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 더불어서, 정부는 기업의 이전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복귀를 촉진하거나 복귀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
  - 현재 유턴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및 이전보조금 혜택 등이 이에 해당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의 다수(73.3%)가 본 조세특례가 국내복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들의 26.7%가 본 조세특례가 국내복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고, 다른 경영적 요소와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20%,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이 26.7%를 차지함([그림 III-4])

[그림 III-4] 국내복귀기업의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효과성 인식 정도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국내복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 결론적으로, 정책 환경의 변화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본 조세감면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제도 수혜기업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수혜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국세청 법인세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함
  - 국내복귀기업에 관한 정보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음
  - 조세특례 수혜와 관련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법인세 자료를 통해서 보완함
- 먼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복귀기업의 복귀 전·후 특성을 살펴봄
-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한 법인세 데이터를 사용하여 본 조세특례의 수혜기업의 특성 및 수혜 규모를 알아봄

### 가. 국내복귀기업의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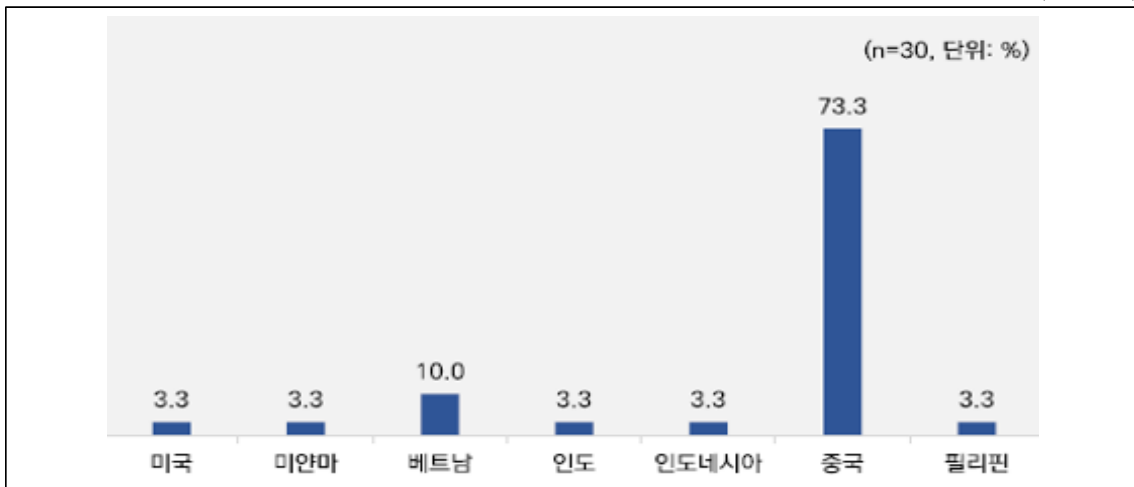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국내복귀기업의 복귀 전·후 특성을 살펴봄
-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한 3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국내복귀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25개)이었으며, 나머지 5개 기업은 중견기업임
  - 국내복귀기업 30개사 중 20개 기업이 본 조세특례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그중 16개 기업이 실제로 혜택을 받음
  - 기업의 2022년도 현재 업태는 제조업이 96.7%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도매업 및 소매업(3.3%)이었음
  - 기업의 2022년도 현재 소재지는 ‘경남’이 16.7%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충남’, ‘부산’이 13.3%로 그다음으로 많음

○ 복귀기업의 2020년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111.1명으로, 100인 이상이 36.7%로 가장 많았음([그림 III-5] 참고)

□ 국내복귀기업의 복귀 전 해외사업장은 중국이 7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베트남으로 10%에 해당함([그림 III-5] 참고)

[그림 III-5]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소재지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국내복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

□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업태는 현 사업장 업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96.7%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도매 및 소매업임

□ 국내복귀 전 상시근로자의 수는 평균 99.2명으로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0인 미만’(33.3%), ‘100인 이상(23.3%)’ 순으로 나타남

□ 복귀기업의 복귀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해외사업장을 폐쇄(완전복귀)하는 형태로 복귀 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부분복귀)의 형태로 복귀 후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복귀기업의 평균적인 복귀형태는 완전복귀가 66.7%로 가장 많았으나, 양상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름

-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완전복귀(62%)하였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대부분 부분복귀(60%)함

<표 III-7> 국내복귀기업의 복귀 유형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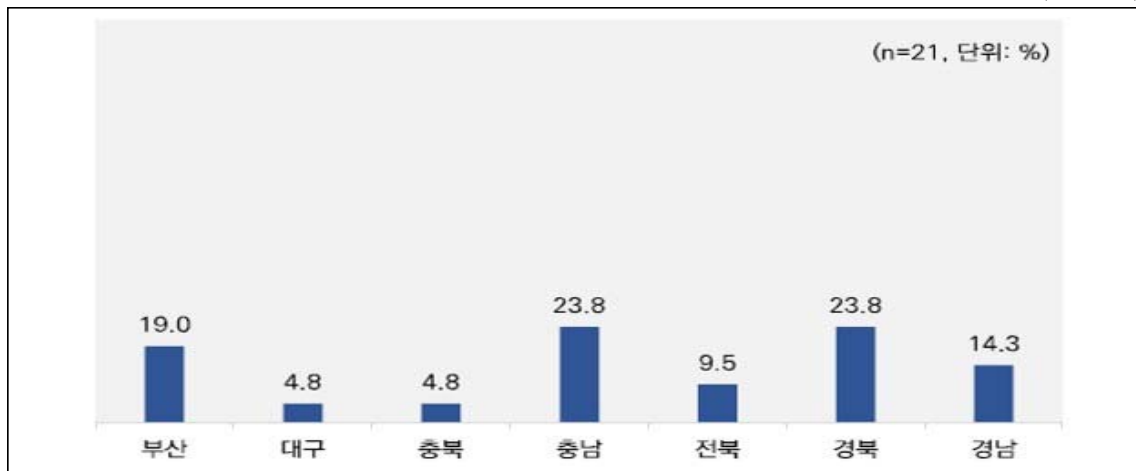
	기업 수	완전복귀	부분복귀
중소기업	25	62	28
중견기업	5	40	60
전체	30	66.7	33.3

자료: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복귀 전 해외사업장 운영기간은 평균 150.9개월로 나타남
  - 부분복귀를 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사업장 운영기간이 완전복귀를 한 기업들의 경우보다 길었음
    - 완전복귀를 한 기업들의 해외사업장 운영기간은 평균 141.49개월이고,
    - 부분복귀를 한 기업들의 해외사업장 운영기간은 평균 169.6개월이었음
- 국내복귀 후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외에 위치함
  - 그중, 충남과 경북이 23.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산(19%)과 경남(14.3%) 순이었음([그림 III-6] 참조)

[그림 III-6] 국내복귀 후 사업장 소재지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국내복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 국내복귀기업의 복귀 후 사업장은 제조업이 95.2%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도매 및 소매업(4.8%)임
- 복귀 후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은 160.4명으로 중소기업은 평균 90.9명, 중견기업은 평균 455.8명임

### 나. 수혜기업 분석

- 국세청 제공 법인세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4~2020년(신고연도 기준) 수혜기업의 특성을 살펴봄
- 신고연도 기준으로 2014~2020년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한 번이라도 받은 기업의 수는 총 10개였음
  - 총 30.43억원의 조세지출과 24개의 감면 건이 있었으며, 평균 감면액은 기업 당 1억 2,700만원 수준이었음(<표 III-8> 참고)

<표 III-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액 및 감면건수: 2015~2020년

(단위: 억원,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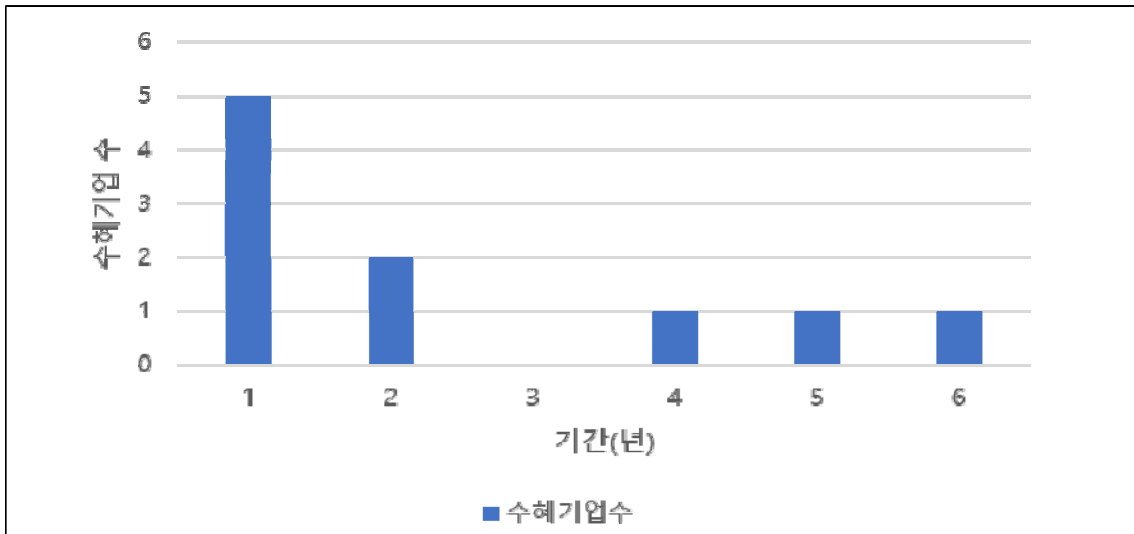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감면액	3.65	7.23	2.69	7.04	8.29	1.54	30.43
감면건수	2	5	4	4	5	4	24
감면액	1.82	1.45	0.67	1.76	1.66	0.38	1.27

주: 1. 신고연도기준으로 작성  
 2. 2014~2020년 동안 한 번 이상 세액감면을 받은 국내복귀기업 10개를 대상으로 작성  
 자료: 국세청 법인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수혜기업은 평균 2.4년 수혜를 받았으며 가장 짧은 수혜기간은 1년, 가장 긴 수혜기간은 6년이었음([그림 III-7] 참조)

[그림 III-7] 수혜기업 수혜기간

(단위: 개, 년)



주: 1. 신고연도기준으로 작성

2. 2014~2020년 동안 한 번 이상 세액감면을 받은 국내복귀기업 10개를 대상으로 작성

자료: 국세청 법인세 데이터(2014~2020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혜를 받은 10개의 기업 중 다수인 9개 기업이 해외사업장 철수방식(완전복귀)으로 복귀를 하였고, 해외사업장 유지방식(부분복귀)으로 복귀한 기업은 1개 기업만 존재함

수혜기업의 대부분 제조업 중소기업이었음

○ 9개 기업은 중소기업이고 1개 기업만이 중견기업임

○ 8개 기업은 제조업, 2개 기업은 도매 및 소매업종임

- 제조업의 세분류는 귀금속, 금속제조, 섬유 및 의복 제조업 등이었음

2020년(신고연도) 기준으로 기업은 부산광역시(3건), 인천광역시(3건), 전라북도(2건) 및 경상북도(2건)로 대부분 수도권 밖에 위치함

2020년(신고연도) 기준 수혜기업들의 평균 자산총계는 213.87억원, 평균 매출액은 122.05억원, 평균 영업손익은 6.58억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9.17억원 수준임

그중,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평균 자산총계는 106.3억원, 평균 매출액

은 117.15억원, 평균 영업손익은 3.22억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4.37억원으로, 중소기업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표 III-9> 참고)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경영지표(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조업 중소기업의 평균 자산총계는 46.16억원, 평균 매출액은 42.77억원, 평균 영업손익은 2.22억원, 평균 당기순이익은 1.57억원 수준이었음

<표 III-9> 2020년(신고연도) 국내복귀기업의 재무제표

(단위: 억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법인세 총부담세액
중소기업	106.30	74.83	117.15	3.22	4.37	2.03	0.51
모든기업	213.87	122.05	205.83	6.58	9.17	4.33	0.71

주: 1. 2014~2020년 동안 한 번 이상 세액감면을 받은 10개의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한 평균  
2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모두 포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다. 소결

- 수혜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본 조세특례 수혜기업들의 복귀에 따른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분석 결과, 수혜기업의 대부분은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완전복귀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복귀 후 수도권 밖에 위치함
- 즉, 본 조세특례제도는 국내 노동임금의 상승으로 해외로 이전하였던 제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위치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을 들여오는 것이 고용 및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면,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거 제조업은 저숙련 노동자를 흡수하여, 중상위 소득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알려짐

-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제조업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저숙련 남성 노동자들의 35.6%에게 정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높은 상대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중산층으로의 편입을 도움(Lawrence, 2017)
  -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제조업의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25%를 유지함 (윤문섭·조현대, 2014)
- 하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제조업의 고용창출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지난 30년간 전체 고용 중 제조업 고용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전체 고용 중 제조업 고용 비중은 1973년 24.75%에서 2016년 10.17%로 감소함 (<표 III-10> 참고)
  - 미국 외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됨
    - 전체 고용 중 제조업 고용 비중이 1973년 27.63%에서 2016년에 12%대로 감소함
  - 이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노동력이 이전과 같이 필요하지 않아진 데 따른 효과임(윤문섭·조현대, 2014)

<표 III-10> 주요 선진국 제조업 고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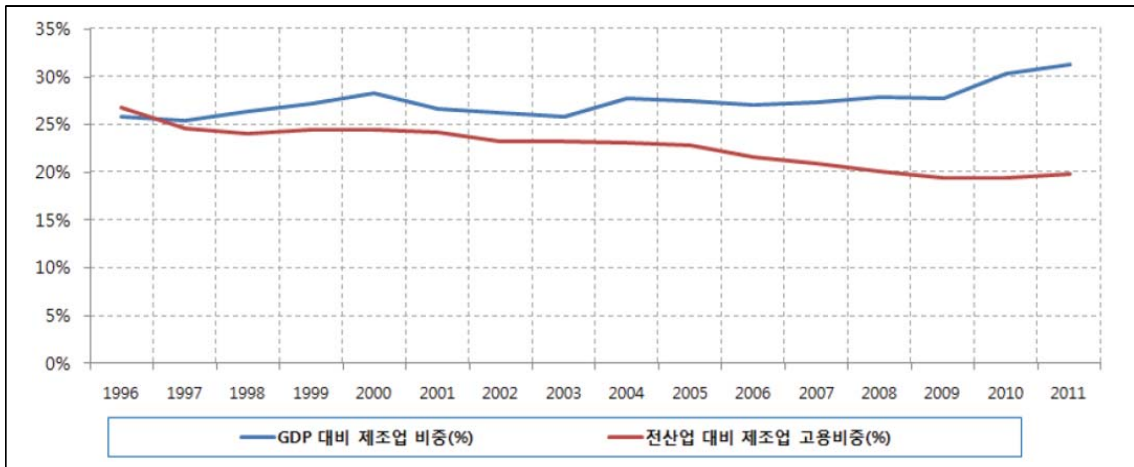
연도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평균
1973	24.75	23.35	22	28.88	36.74	27.86	27.78	25.29	32.06	27.63
1990	16.77	14.42	15.79	21.27	31.62	22.56	24.33	19.08	22.13	20.88
2000	14.35	12.05	15.26	17.87	23.86	22.91	20.66	14.85	14.82	17.4
2010	10.13	8.9	10.27	13.32	20.1	18.87	16.95	10.64	9.85	13.23
2016	10.17	7.51	9.37	12.15	19.15	18.23	16.1	9.52	9.46	12.41

자료: Lawrence(2017), p. 13 Table 1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제조업에서의 생산이 증가함에도 고용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됨([그림 III-8] 참고)
- 우리나라 전체 생산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 2000~2010년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은 5.2% 감소함(윤문섭·조현대, 2014)

[그림 III-8] 1996~2011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및 고용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윤문섭·조현대(2014), p. 9 [그림 4]

-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도, 길은선(2021)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세부 제조업 산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함
  - 수출 주력사업 중 화학, 일반기계, 식료품 및 전기 장비 세부 항목에서 일자리의 꾸준한 증가를 확인하였음
  - 전기,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특수기계 제조업의 경우 2014년도 이후 증가세가 정체되었으나 대량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보고함
- 결론적으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본 조세 특례로 제조업 중심의 해외진출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의 타당성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세부 제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본 조세특례의 효과 및 잠재적인 수혜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3. 지원방법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	$\frac{\text{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text{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
--------------------------------	---	--

-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에서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2021년에 이를 폐지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분에 비례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감면 기산연도는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기존에 이전(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유턴 초기 결손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음
- 또한,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완전복귀와 해외사업장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로 이전하는 부분복귀를 모두 지원하고 있음
  - 2013년부터 시작된 부분복귀에 대한 지원은 그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이었다가, 점차 중견기업(2017년), 대기업(2019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음
- 본 장에서는 동 조세특례제도 지원방법의 타당성을 다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재정지원이 아닌 조세제도로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 부분복귀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 세액감면 대상소득액 정의의 타당성
    - 해외매출액과 국내매출액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
    - 국내복귀소득과 국내매출액의 비율을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
- 먼저, 국내복귀기업을 조세제도로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함
- 본 조세특례제도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복귀 후 충분한 소득이 없어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산업통산부(2022)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내로 복귀한 88개 기업 중 69개 기업이 동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함<sup>60)</sup>

- 강유정·최보람(2021)이 2020년 리쇼어링을 결정한 기업들(아주스틸, KG동부제철, 고문당인쇄)의 과세소득을 추정해본 결과, 모든 기업에서 과세소득이 크지 않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함
  - 아주스틸의 과세소득은 2억 6,800만원, KG동부제철은 0원, 고문당인쇄의 과세소득은 1억 2,000만원으로 추정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함
  - 30개의 국내복귀기업 중 5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함
  - 5개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4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 ‘법인세 혹은 소득세가 크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없었다’고 보고함
- 동 조세특례제도는 국내복귀 초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감면 기산연도를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지정함
  - 즉, 국내복귀 초기에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 소득발생 시에 최대 7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럼에도, 결손액 이월 등의 이유로 과세소득이 적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여, 기업 특성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인 경우도 존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조세특례는 부분복귀를 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복귀기업은 완전복귀(66.7%)의 형태로 복귀하였으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완전복귀(62%)하였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대부분 부분복귀(60%)함
- 이는, 부분복귀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대해 유인효과가 클 수 있음을 보여줌
  -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규모가 커서 완전복귀에 대한 결정이

60) 강유정·최보람(2021)

상대적으로 어려워 부분복귀 지원으로 인한 유인효과가 클 수 있음

- 중견 및 대기업의 국내복귀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부분복귀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감면대상 소득의 정의가 국내복귀소득,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국내사업장 매출액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달라져, 기업에 따라 인센티브 구조가 다를 것으로 보임
- 먼저, 감면대상 소득은 해외사업장의 매출액이 복귀 후 국내사업장 매출액에 비해서 클 경우 인정범위가 커짐
  - 즉, 해외에서의 높은 매출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이 커지는 구조임
    - 이는, 기존에 해외에서의 생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 생산량의 국내이전 규모가 크더라도 감축비율 기준(50%)을 충족하지 못해서 세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포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sup>61)</sup>
  - 반면, 해외사업장에서의 매출액이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국내사업장에서의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이 작아짐
    - 즉, 국내외 기업환경 및 시장상황의 변화로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서 복귀하는 경우는 감면대상 소득이 크지 않을 것임
    - 국내시장에서의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인효과가 크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 감면대상 소득액 산정방식은 해외에서의 매출액이 큰 기업들에 대한 유인효과가 큰 반면, 해외에서의 기업환경이 불리하여졌으나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은 유리해져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임
- 변화된 대상 소득액 산정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유턴사업장의 국내소득 대비 매출액이 큰 경우 감면대상 소득이 작아지는 것임
  - 즉, 해외 매출액이 비슷하더라도, 소득과 매출액 간 차이가 큰 산업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감면대상 소득이 작을 것임

61) 강유정·최보람(2021)

- 이에 따라, 산업군의 특성에 따라 다른 유인구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 정리하면, 본 조세특례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복귀 후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수혜 가능 여부가 결정됨
- 또한, 본 조세특례의 대상 소득액 산정방식은 국내복귀 전후의 매출의 상대적인 크기나 산업군에 따라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복귀 후 국내에서의 과세소득이 크고, 해외에서의 매출액이 국내에서의 매출액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과 국내에서의 과세소득이 국내에서의 매출액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을 유인함
- 따라서, 국내소득이 크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이 좀더 효율적이며, 납세의무와 조세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는 조세감면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4.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가. 국내복귀 관련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sup>6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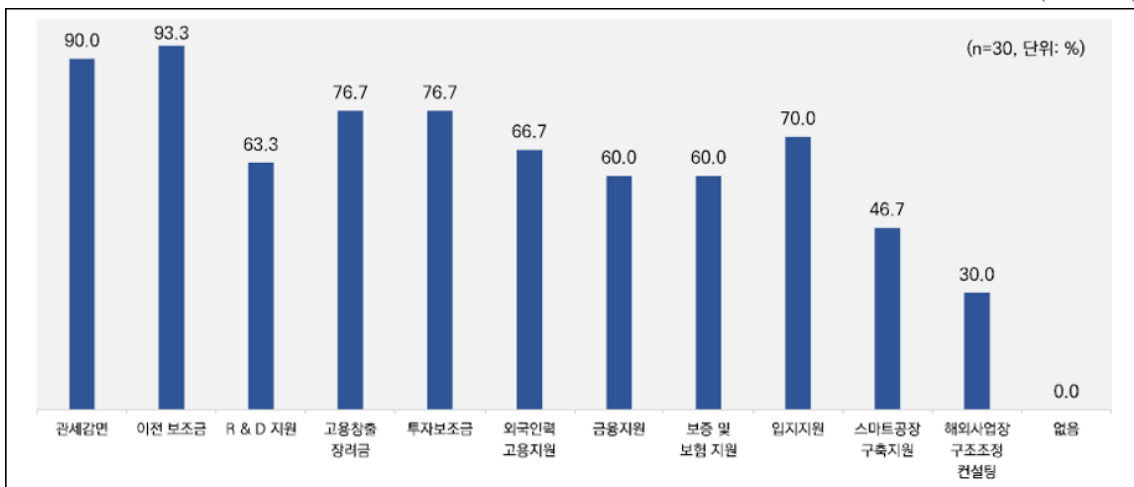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돕기 위한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은 11건 정도로 파악됨
  - 관세감면,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외국인력 고용지원, 무역보험, 보증우대, 입지지원, 정책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지원 등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복귀기업들은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다수가 실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30개의 국내복귀기업은 최소 2개 이상의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

62) 제도 설명과 관련된 부분은 KOTRA(2021), 손동희(2021)을 참고하여 작성함

- 30개의 국내복귀기업 중 18개의 기업이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의 수혜를 받음
- 본 조세특례제도와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을 동시에 수혜한 기업도 4개사로 확인됨
-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 중 알고 있는 제도로 이전보조금(28개사)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관세감면(27개사), 투자보조금(23개사)과 고용창출 장려금(23개사) 순이었음 ([그림 III-9] 참고)
-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 중 실제 지원받은 제도로는 투자보조금이 가장 많았고(9개사), 관세감면(6개사), 이전보조금(5개사), 고용창출 장려금(4개사) 순이었음([그림 III-10] 참고)
- 설문조사를 통해 11건의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 중 관세감면, 투자보조금(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이전보조금에 대한 인지 및 수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11개의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 중 관세감면, 투자보조금(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이전보조금의 내용 및 수혜규모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본 조세특례와의 중복성을 검토해보고자 함
  - 그 외 유사 재정사업의 개요는 <표 III-11>에 정리함

[그림 III-9] 알고 있는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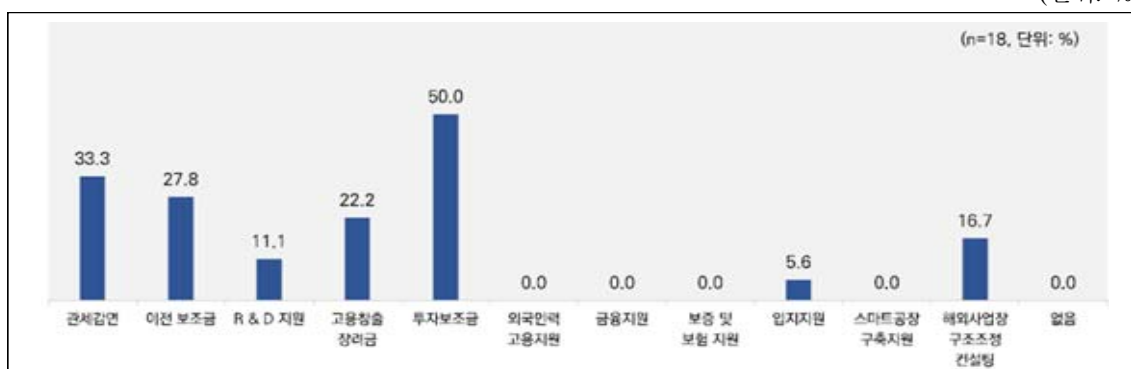


주: 중복 응답을 허용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국내복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그림 III-10] 수혜받은 지원제도

(단위: %)



주: 중복 응답을 허용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국내복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표 III-11> 기타 유사 재정사업 개요

사업	지원 내용
외국인력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7비자 발급지원: 해외현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생산 관리자 대상자에게 E-7 비자 발급 허용</li> <li>E-9비자 발급지원: 중소기업이 5억원 이상 설비투자 완료 시, 기존 외국인 고용인원과 별개로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고용 허용</li> </ul>
무역보험·보증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수출) 보험·보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보증)료 할인: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료 20% 이내 할인 및 수출 신용보증(매입) 0.1%p 차감 할인</li> <li>한도우대: 수출신용보증 및 수입보험 책정가능한도 1.5배 우대</li> </ul> </li> <li>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국내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에 대해서 보증비율 90~95% 이내로 보증률 0.2~0.5%p 감면</li> </ul>
입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유재산 사용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의계약 허용 및 최장 50년 국·공유지 임대 가능</li> <li>임대료 산정 특례(재산가액 1% 이상) 및 감면(최대 50%) 등</li> </ul> </li> <li>산업단지 우선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 복귀기업 우대</li> <li>동반복귀기업 입주 시 전용 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li> </ul> </li> </ul>
정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투자금액 80~90% 대출 지원: 최저 1.5%로, 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li> <li>운영자금 저리 대출: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li> </ul>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중견기업 대상</li> <li>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50%, 5억원 한도로 지원</li> <li>스마트공장 신규 구축의 사업비 50%, 1.5억원 한도로 지원</li> </ul>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지원(건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일정요건 만족 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건설팅 비용의 30~70% 지원(USD 20,000 한도)</li> </ul>

자료: 손동희(2021), p. 18, 표 [국내복귀기업 대상 기타 주요지원] 및 Invest Korea, 『국내복귀기업지원』을 활용하여 재작성

## 1) 관세감면

- 관세감면<sup>63)</sup>은 유턴기업 복귀 시 해외에서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모든 기업 대상 완전복귀의 경우 100%, 부분복귀의 경우 50% 감면함
- 2013년도에 신설되어, 2017년도에 관세감면 지원한도가 2배로 확대, 2019년도에는 관세감면 지원한도를 생략하는 변화가 있었음
  - 조세감면의 대상 확대와 관세감면 요건의 완화가 같은 시기(2013, 2015, 2017년도)에 이루어져 본 조세특례제도와 보완적으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음
- 손동희(2021)에 따르면, 2014~2019년간 유턴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조세지출은 약 2억 7,600만원이며(<표 III-12> 참조), 본 조세특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2015~2019년간 222억원 수준이었음<sup>64)</sup>
  - 또한, 수혜기업의 평균 감면액은 관세의 경우 980만원, 본 조세특례의 경우 1억 2,700만원 수준임
- 따라서, 관세감면의 경우 본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 않음
- 또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국내복귀 이후의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관세감면은 이전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복귀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어 두 조세제도의 성격이 다소 다름
- 결론적으로, 국내복귀를 촉진한다는 지원목적이 같고 해외진출기업이라는 수혜 대상이 중복되나, 복귀 촉진의 방법이 다르다는 점과 관세감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상호 중복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63)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64)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5~2019.

<표 III-12> 2014~2019년도 관세감면, 투자보조금 및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관세감면		투자보조금 (입지 설비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8	79	3	4,429	-	-
2015	5	25	1	2,255	7	969
2016	3	47	2	4,258	6	1335
2017	4	13	2	3,033	2	477
2018	2	13	-	-	1	324
2019	6	99	2	7,456	1	6
합계	28	276	10	21,431	17	3,110

주: 1. 투자보조금 합계는 2014~2017, 2019년 기준, 고용창출 장려금 합계는 2015~2019년 기준 작성  
 2. 관세감면의 경우 국세청·관세청에서 감면받은 기업명을 비공개하여 업체 수의 중복집계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손동희(2021), p. 23, p. 24의 표를 참고하여 재작성

## 2) 투자보조금(입지·설비 보조금)과 이전보조금

- 투자보조금(입지·설비 보조금)은 토지 매입 및 건설투자, 기계장비구입 및 근로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비율에 따라 기업당 최대 600억원까지 (국비 기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지원비율은 복귀지역(<표 III-13>), 신규고용 인원수, 투자규모, 업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함

<표 III-13> 복귀지역별 이전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단위: %)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 지원비율
수도권	11%	40
수도권 인접지역	21%	45
일반지역	24%	65
지원우대지역	34%	75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44%	75

자료: KOTRA(2021), p. 18의 표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4~2019년 투자보조금 지급은 총 10건이 있었으며, 지급액은 총 214억 3,100만원이었음(<표 III-12> 참조)

- 본 소득세·법인세 조세감면과 건수 및 지출액의 규모가 비슷함(2015~2019년간 총 20건,<sup>65)</sup> 222억원<sup>66)</sup>)
- 기업당 평균 지급액은 투자보조금(입지·설비 보조금)의 경우 21억 4,300만원, 본 조세특례의 경우 1억 2,700만원 수준으로, 입지·설비 보조금의 평균 수혜금액이 높았음
- 이전보조금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운송비용 해체 및 재설치 비용, 보험료, 수수료 등과 같은 해외사업장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기업당 4억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지원비율과 지방비 대비 국비 지원비율은 복귀지역별로 상이함(<표 III-13> 참고)
- 투자보조금(입지·설비 보조금)과 이전보조금은 국내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국내복귀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복귀 후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본 조세특례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또한, 투자보조금(입지·설비 보조금)과 이전보조금의 경우 별도의 조건을 충족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sup>67)</sup>에서도 본 조세특례제도와 차이점이 있음
- 따라서, 투자보조금(입지·설비 보조금)과 이전보조금은 본 조세특례제도와 중복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3) 고용창출 장려금

-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고용창출 장려금은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100명 한도로 2년간 지급함
  -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sup>68)</sup> 및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은 포함하지 않음

65) 국세청 법인세 자료 가공

66)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5~2019.

67) 손동희(2021)

- 지원한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연간 총액 720만원, 중견기업은 360만원임

- 손동희(2021)에 따르면 2014~2019년 동안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은 총 17건이 있었으며, 총지급금액은 31억원(<표 III-12> 참조)으로 소득세·법인세 조세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과 비교해 총지급 규모가 크지 않았음(2015~2019년간 222억원<sup>69)</sup>)
- 반면, 기업당 평균 지급액은 고용창출 장려금은 1억 8,235만원으로 본 조세특례제도의 평균 지급액(1억 2,700만원)보다 높았음
- 고용창출 장려금이 경우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국내복귀 후 기업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본 조세특례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음
- 또한, 고용창출 장려금은 2년 한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초기 정착 시 인건비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도 최대 7년간 지원하는 본 조세특례제도와는 차이가 있어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됨

####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sup>70)</sup>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존재하여, 정책목표 간 충돌이 예상됨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총 8개로, 2,154억원의 예산으로 14,325개사와 103개의 컨소시엄을 지원함(<표 III-14> 참고)
- 지원사업 중 본 조세특례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과 수출인큐베이터임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시 대기업의 네트워크(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및

68)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이거나 500명 이하의 제조업, 300명 이하의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인 경우의 기업을 의미함

6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5~2019.

70) 중소벤처기업부(2021)를 참조하여 작성

인프라(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를 기반으로 한 공동마케팅활동,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

- 지원규모는 2021년을 기준으로 190억원 수준으로 1,320개사 지원

○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경우 세계 경제 주요 교역거점(미국, 유럽, 중국 등)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마케팅, 법률/회계 자문,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등으로 현지 진출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함(12개국 20개소)<sup>71)</sup>

- 지원규모는 2021년 기준 167억원으로 260개사 지원

□ 본 지원사업은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점에서, 본 조세특례제도와 반대되는 유인을 주고 있음

□ 하지만, 동 해외진출사업의 지원내용은 제조업 이외의 기업에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 본 조세특례제도의 주된 수혜기업과의 중복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지원사업과 본 조세특례제도의 주력 수혜산업군을 설정하는 등의 구분을 통해서, 동일한 지원대상에게 상반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임

<표 III-14> 20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단위: 억원, 개사)

사업명	예산	지원규모
수출바우처	1,064	3,125
수출컨소시엄	103	103개 컨소시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190	1,320
전자상거래 활용수출	379	6,700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53	720
브랜드K 육성관리	62	200
수출인큐베이터	167	260
온라인수출 플랫폼	36	2,000
<b>합 계</b>	<b>2,154</b>	<b>14,325개사, 103개 컨소시엄</b>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p. 1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표를 이용하여 저자 제작성

7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21F0.do>, 검색일자: 2022. 7. 18.

## IV. 효과성 분석





## IV. 효과성 분석

- 동 과세특례의 정책목표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함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세감면의 효과성 파악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기업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진출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진출 희망기업 자료, 그리고 한국기업데이터의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대상군을 설정하고 국내복귀 혹은 해외진출의 결정에 있어 세액감면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인인지에 대해 분석
    - 설문조사의 기초통계량 결과를 통하여 해당 기업들이 생각하는 국내복귀 혹은 해외진출의 결정에 있어 조세감면의 경제적 가치 및 중요도를 확인
  -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성과저해 원인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기업 자료, 국세청의 과세 미시자료,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유턴기업들 중 본 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주된 요인에 대해 분석
  - 회귀분석을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 분석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기업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진출기업 자료, 국세청의 과세 미시자료,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정보, 각 해외진출국가의 법인세율, World Bank의 규제관련 자료 등을 병합하여 국내복귀 결정요인을 분석
    -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과 그렇지 아니한 기업 간 매칭을 통하여 과거 연구 및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결정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국내복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진반응 모형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함
  
- 동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조세감면의 효과성 파악
    - 설문조사 결과, 해당 조세특례제도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제한적이지만

-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파악함
- 다른 경영·경제적 요소에 비하여 정책적 요소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성과저해 원인 분석
  - 개별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 조세특례제도의 성과저해 원인은 국내 복귀기업의 경영상태 악화 및 휴폐업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음
  -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제한요건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 분석
  - 회귀분석 결과, 해외의 법인세율이 높을수록(또는 국내 대비 해외 법인세율이 클수록) 국내복귀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해외진출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클수록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진출국의 정책 및 환경이 친기업적일수록 국내로의 복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됨

## 1. 조세감면의 효과성 파악

### 가. 설문조사 목적 및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 기업 자료, 국세청 과세 미시자료, 기업 재무 자료 간의 병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모든 자료들이 효과적으로 병합이 된다고 가정하여도 국내복귀의 정량적 요소들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함
  - 따라서,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제도의 대상기업들과 미래에 수혜가 가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설문조사에서는 과거에 실시된 설문조사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선택지를 제

- 공하고 개별 국내복귀 요소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직접 묻는 방식을 채택함
- 선행연구 등에서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
    - 선행연구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선택지의 수가 적고, 개별 선택지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포괄적인 경우가 많았음
    - 앞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아니오의 이분법적 답변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 구성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음
    - 개별 국내복귀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같은 각 요인별 비교는 기존의 설문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음
  - 본 분석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기존의 설문조사 대비 국내외 선행연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질문의 선택지를 구체화 및 세분화하여 보다 정확한 요소 파악이 가능케 설정함
    - 국내복귀 요인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위하여 각 요소들에 대한 순위 비교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유도함
    - 다만 이러한 설문조사의 차별점은 응답자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완료하는 데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함

#### 나. 설문조사 결과 - 국내복귀기업 대상

- 본 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받은 유턴기업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유턴기업 목록에 있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정한 국내복귀기업이지만 본 제도의 비수혜기업들도 다수 존재함
  - 국내복귀 관련 지원제도들을 수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련 제도들의 이해도가 높은 것이 표본의 특징임
- (국내복귀 결정 이유)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파악한 국내복귀 결정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의 기업 경영·경제적 요소들(수익, 비용, QC 등)을 고려한 이후에 국내의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됨
  - 대상: 국내복귀기업(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모두 포함)

- 질문 방식: 국내복귀기업들이 국내복귀를 결정한 이유를 1, 2, 3순위로 질문
- 설문 결과: 경영·경제적 요인들을 가장 중요한 국내복귀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이후에 국내의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기타를 제외한 총 8가지의 응답지가 있었으며, 1, 2, 3순위를 동일한 복수표로 고려하였을 때, 국내의 정책적 요소는 7순위에 해당하였음
  - 1순위만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5번째에 해당하는 국내복귀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음
  - 국내복귀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귀 이유는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가 과반수 이상(56.7%)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선택한 결정 요인이었음
  -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가 순서대로 그다음 중요한 복귀 결정요인으로 파악되었음

〈표 IV-1〉 국내복귀 결정 이유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A	B	C	D	E	F	G	H	I
전체	30	56.7	30.0	0.0	43.3	46.7	26.7	43.3	30.0	0.0
1순위	30	33.3	10.0	0.0	20.0	3.3	6.7	23.3	3.3	0.0
2순위	30	16.7	10.0	0.0	23.3	13.3	6.7	13.3	16.7	0.0
3순위	23	8.7	13.0	0.0	0.0	39.1	17.4	8.7	13.0	0.0

- 주: A.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  
 B.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환경비용 증가, 환율변동 등)  
 C. 기술 탈취의 우려가 있어서  
 D.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 (사유재산 몰수의 위험, 촌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 비자 발급 등)  
 E.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  
 F.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보조금 지원, FTA체결, 산업용지 확보 등)  
 G.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자금조달의 편리성, 연구개발 가능 등)  
 H. 수요 등 국내 내수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I. 기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국내복귀 결정요인의 경제적 가치) 국내복귀 결정요인의 경제적 가치를 복귀연도의 매출액 대비로 파악하였음
  - 대상: 국내복귀기업(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모두 포함)
  - 질문 방식: 국내복귀 결정요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개의 요인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복귀연도의 매출액 대비로 질문함

- 설문 결과: 응답한 요인들 중에 국내의 정책적 요소는 가장 낮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기타를 제외한 8가지 응답지 중 국내의 정책적 요소는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7순위(매출액 대비 107.5%)에 해당하였음<sup>72)</sup>
  - 가장 많이 선택한 요인은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 수익성이 없어서”이었지만,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요인은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가 매출액 대비 120.8%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차지하였음
  -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와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 수익성이 없어서”가 순서대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모습을 보여줌

<표 IV-2> 국내복귀 결정요인의 총경제적 가치

(단위: 개, %)

국내복귀 결정이유	사례 수	평균
A	17	115.9
B	9	114.4
C	0	-
D	13	120.8
E	14	117.1
F	8	107.5
G	13	115.4
H	9	115.6
I	0	-

- 주: A.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  
 B.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  
 C. 기술 탈취의 우려가 있어서  
 D.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 (사유재산 몰수의 위험, 촌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 비자 발급 등)  
 E.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  
 F.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보조금 지원, FTA체결, 산업용지 확보 등)  
 G.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자금조달의 편리성, 연구개발 가능 등)  
 H. 수요 등 국내 내수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I. 기타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2) 이는 국내의 유통기업 관련 모든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조세정책만 고려하게 되면 이보다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함

-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본 조세특례제도가 국내복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혜기업
  - 질문 방식: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함
  - 설문 결과: 본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상대적으로 다른 경영적 요소보다 작은 영향을 주었다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크게 조사됨
    - 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내복귀에 다른 경영적 요소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작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과반수(73.4%)로 조사됨
    - 해당 제도의 국내복귀 결정에 대한 영향이 다른 경영적 요소에 비하여 작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과반수가 넘는 것(53.4%)으로 조사됨

〈표 IV-3〉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단위: 개, %)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다른 경영적 요소와 비슷하게 영향
26.7 (4)	26.7 (4)	20.0 (3)

주: 괄호 안은 응답 기업 수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 본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내복귀의 기간 요건(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는 5년 이내)이 존재하고 이것이 국내복귀에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혜기업
  - 질문 방식: 세액감면제도가 해외사업장의 복귀 결정 이후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질문함<sup>73)</sup>
  - 설문 결과: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을 5년 이내에 완료하는 조건은 국내복귀기업의 복귀 계획의 왜곡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본 「조세특례제한법」의 기간 요건은 국내복귀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이 과반이 넘지만(66.7%), 일부 기업들(26.7%)에는 복귀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73) 추가적으로 실제로 감소된 기간을 질문하였으나, 응답 수가 적고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

<표 IV-4>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계획에 미친 영향

(단위: 개, %)

감소시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증가시킴
26.7 (4)	66.7 (10)	6.7 (1)

주: 괄호 안은 응답 기업 수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결정에 미친 영향) 본 조세특례제도는 국내복귀 이후에 국내 이전·증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면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수혜기업
  - 질문 방식: 근로자 수, 설비투자, R&D투자에 대한 결정에 본 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5단계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의 각 생산요소에 대한 평균과 「조특법」이 차지하는 영향을 조사함
  - 설문 결과: 근로자 수와 설비투자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수혜기업들이 과반수 이상(66.7%) 본 제도가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함
    - 설비투자와 R&D투자의 경우, 각각 과반수 이상(60%, 80%)의 기업이 본 제도에 따른 생산활동 결정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다만 직접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서는 근로자 수와 설비투자가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의 평균적인 근로자 수와 설비투자 수준의 약 17%가 본 제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고용 및 투자한 부분이라고 응답하여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IV-5>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에 미친 영향

(단위: %, 개, 점)

구분	크게 감소 1	감소 2	변화없음 3	증가 4	크게 증가 5	평균
근로자 수	0.0 (0)	13.3 (2)	20.0 (3)	66.7 (10)	0.0 (0)	3.5
설비투자	0.0 (0)	0.0 (0)	60.0 (9)	33.3 (5)	6.7 (1)	3.5

<표 IV-5>의 계속

(단위: %, 개, 점)

구분	크게 감소 1	감소 2	변화없음 3	증가 4	크게 증가 5	평균
R&D투자	0.0 (0)	6.7 (1)	80.0 (12)	13.3 (2)	0.0 (0)	3.1

주: 1. 괄호 안은 응답 기업 수를 의미함

2. 평균은 크게 감소 1점, 감소 2점, 변화없음 3점, 증가 4점, 크게 증가 5점을 주었을 때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6>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구분	세액감면 혜택 동안 평균	조특법이 차지하는 영향
근로자수	22.6명	17.0%(4명)
설비투자	24.3억원	16.5%(4억원)
R&D투자	3.8억원	5.9%(0.2억원)

주: 괄호 안은 세액감면 혜택 동안 평균과 조특법이 차지하는 영향 비율을 곱한 값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타 지원제도와 비교)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여러 제도들 중 본 제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상: 국내복귀기업(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모두 포함)
  - 질문 방식: 국내복귀기업들이 효과적이었던 국내복귀 제도를 선택하게 하고 본 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효과 정도를 질문함
  - 설문 결과: 여러 지원제도들 중 본 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제도의 효과는 다른 모든 국내복귀 지원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됨
    - 1, 2순위 모두 본 조세특례제도를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라고 응답함
    - 응답기업의 절반이 다른 모든 국내복귀 지원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본 제도의 효과가 더 크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함

<표 IV-7>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단위: %, 개)

지원제도	1순위	2순위
관세감면	5.6% (1)	16.7% (3)
이전보조금	22.2% (4)	0.0% (0)
R&D지원	0.0% (0)	0.0% (0)
고용창출 장려금	11.1% (2)	5.6% (1)
투자보조금	22.2% (4)	16.7% (3)
외국인력 고용지원	0.0% (0)	0.0% (0)
금융지원	0.0% (0)	0.0% (0)
보증 및 보험 지원	0.0% (0)	0.0% (0)
입지지원	0.0% (0)	5.6% (1)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0.0% (0)	0.0% (0)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0.0% (0)	16.7% (3)
본 제도	38.9% (6)	38.9% (6)

주: 괄호 안은 응답기업 수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8> 세액감면제도와 타 지원제도의 효과 비교

(단위: %, 개)

본 제도의 효과가 더 큼	비슷함	본 제도의 효과가 더 작음
3.3 (1)	46.7 (14)	50.0 (15)

주: 괄호 안은 응답기업 수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설문조사 결과 - 해외진출기업 대상

- 본 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구득한 해외진출 기업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들 기업이 추후에 국내로 복귀하면 본 조세특례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 대상임
  
- (국내복귀 의사) 해외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대상: 해외진출기업

- 질문 방식: 향후 5년 내 국내복귀 의사가 있는지 질문함
  - 설문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총 100개의 기업 중 96개의 기업이 국내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현지시장에서의 높은 수익 기대”(48%)와 “현재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47%) 등의 이유로 해외진출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제도 인지 여부)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인지 여부를 질문함
- 대상: 해외진출기업
  - 질문 방식: 본 조세특례제도의 인지 여부를 질문함
  - 설문 결과: 해외진출기업 100개 중 24개의 기업들만 본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를 질문함
- 대상: 해외진출기업
  - 질문 방식: 만약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고 가정한다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봄
  - 설문 결과: 100개의 해외진출기업 중 66개사가 본 제도를 활용할 의사를 보였음
    - 대기업의 경우 표본 내의 11개사 모두가 세액감면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88.9%, 8/9)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5.7%, 6/7) 순으로 세액감면 신청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건설업”(50%, 4/8)의 경우 해당 제도의 활용 의사가 가장 낮았음
    - 활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34개 기업들의 76.5%가 “유사 다른 제도들의 혜택이 더 커서 신청할 필요성을 못느낌”이라고 응답함
-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 본 조세특례제도가 국내복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상: 해외진출기업 중 제도 활용의 의사를 보인 기업
  - 질문 방식: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설문을 실시함

- 설문 결과: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63.6%)이 본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본 「조세특례제한법」의 국내복귀 결정에 대한 영향이 다른 경영적 요소들에 비하여 작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것(97.0%)으로 조사됨

<표 IV-9>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예상)

(단위: %, 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다른 경영적 요소와 비슷하게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보다 큰 영향
63.6 (42)	33.3 (22)	3.0 (2)	0.0 (0)

주: 괄호 안은 응답기업 수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 결정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만약 기업이 국내 복귀를 하였을 때, 본 조세특례제도가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상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상: 해외진출기업 중 제도 활용의 의사를 보인 기업
- 질문 방식: 복귀 결정 이후 국내복귀까지 걸린 기간, 근로자 수, 설비투자, R&D투자에 대한 결정에 본 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5단계로 나누어 질문함
- 설문 결과: 대부분 본 제도가 복귀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함

<표 IV-10>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결정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단위: %, 개, 점)

구분	크게 감소 1	감소 2	변화없음 3	증가 4	크게 증가 5	평균
복귀기간	0.0 (0)	6.1 (4)	87.9 (58)	6.1 (4)	0.0 (0)	3.0
근로자수	0.0 (0)	6.1 (4)	87.9 (58)	6.1 (4)	0.0 (0)	3.0
설비투자	0.0 (0)	4.5 (3)	90.9 (59)	4.5 (3)	0.0 (0)	3.0
R&D투자	0.0 (0)	4.5 (3)	92.4 (60)	3.0 (2)	0.0 (0)	3.0

주: 1. 괄호 안은 응답 기업 수를 의미함

2. 평균은 크게 감소 1점, 감소 2점, 변화없음 3점, 증가 4점, 크게 증가 5점을 주었을 때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액감면제도가 기타 정부지원 대비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효과) 해외진출기업들이 기대하는 본 제도의 효과와 다른 지원제도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대상: 해외진출기업
  - 질문 방식: 해외진출기업들이 예상하는 본 제도의 효과와 다른 지원제도들의 효과를 비교하도록 질문함
  - 설문 결과: 본 제도의 기대되는 효과는 다른 모든 국내복귀 지원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됨
    -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71%)이 다른 모든 국내복귀 지원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본 제도의 효과가 더 크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함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전체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대기업의 경우 본 제도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54.5%로 높았음

〈표 IV-11〉 세액감면제도와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효과 비교

(단위: %, 개)

본 제도의 효과가 더 큼	비슷함	본 제도의 효과가 더 작음
17 (17)	54 (54)	29 (29)

주: 괄호 안은 응답기업 수를 의미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성과저해 원인 분석

### 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본 조세특례제도의 성과저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귀속연도 기준 2014년의 모든 국내유턴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 표본을 2014년으로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내복귀 시점 이후에 국내로 이주 혹은 증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해 감면하고 있으며, 복귀 이후 5년이 지나면 과세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혜택 적용이 시작됨
    -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자료가 귀속연도 기준 2014년부터 2019년

이기 때문에 2014년에 복귀한 기업들의 강제적 혜택 적용 시점인 2019년을 확인하여 혜택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파악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및 민감한 기업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명은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해외진출지역, 국내복귀지역, 국내복귀일자 등의 정보를 어떤 기업인지 특정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정리함
  - 회사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명과 무관함
  - 해외진출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자료가 존재하나 해외진출국가 수준에서 요약함
  - 국내복귀지역의 경우 본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역 요건에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에서 정리하였음
  - 국내복귀일자의 경우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의 수혜 연기 최대연수인 5년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 정보까지 정리함
  
- 2014년 총 17개의 국내복귀기업 중에서 11개(A기업~K기업)의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들 기업에 대하여 기업 개요와 재무정보를 정리하고 해당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한 근거를 추론함
  - 기업 개요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기업데이터의 재무정보와 연결하여 정리함
    - 기업 개요에는 해외진출국가, 국내복귀지역, 국내복귀일자, 국내복귀유형, 중소기업 여부, 산업 분류, 휴폐업 여부를 요약함
  - 비수혜기업의 재무정보에는 귀속연도 기준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요약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누적 과세이연 금액을 정리함
    - 재무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외감기업,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못한 경우(지연, 휴폐업 등), 혹은 구독하는 자료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로 표시함
    - 재무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변경되는 과세이연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누적 과세이연 금액의 전년도 금액을 그대로 사용함

## 나.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 1) A기업

- (기업 개요: A기업) A기업은 2014년 3월에 중국에서 완전 철수 형식으로 전라북도 국내복귀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던 이력이 없음
  -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업종 분류상 귀금속 관련 제조업으로 분류됨
  - 기업 개요상으로는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기업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

<표 IV-12>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A기업)

회사명(가명)	A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전라북도
국내복귀일자	2014년 3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산업 분류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휴폐업 여부	No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재무정보: A기업)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연도 기준 손실로 인한 과세이연에 의하여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2014년 적자(-36,083,000원)으로 인하여 과세이연 금액이 증가함
  - 이후에 누적 당기순이익이 과세이연 금액을 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재무정보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2019년까지의 기록상 가장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여전히 2019년도의 과세이연 누적

금액이 남아 있음

- 2015년의 당기순이익이 과거 기록상 가장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인 2019년의 당기순이익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도 여전히 2019년도의 과세이연 누적금액은 -9,559,000원으로 음(-)의 값을 가짐
- 국내복귀 이후로 점점 당기순이익이 양호해지고 있으나 아직 과세이연 누적금액이 없어질만큼 수익을 보지 못하였음
- 산업의 평균적인 업황을 고려하였을 때,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까지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표 IV-13> 비수혜기업 재무정보(A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5,580	-31,689	-36,083	-36,083
2015	-	-	-	-36,083
2016	261,957	7,620	3,598	-32,485
2017	236,815	16,482	3,292	-29,193
2018	358,321	17,747	6,014	-23,179
2019	364,603	7,000	6,810	-16,369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하였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전년도 자료를 사용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비수혜 원인: A기업) A기업의 경우 적자로 인한 과세이연의 증가로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2) B기업

- (기업 개요: B기업) 2014년 3월 B기업은 중국에서 완전 철수 형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턴기업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국내복귀지역은 전라북도이며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함
  - 조사기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던 이력이 없음
-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귀금속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 기업 개요상으로는 본 제도의 수혜기업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 IV-14>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B기업)

회사명(가명)	B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전라북도
국내복귀일자	2014년 3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산업 분류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휴폐업 여부	No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재무정보: B기업) 귀속연도 기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손실로 인하여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2014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적자(-146,676,000원)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세이연 금액이 증대됨
  - 지속적인 사업 악화로 인하여 누적 당기순이익이 과세이연 금액을 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이후 확인 가능한 정보가 없어 제대로 된 파악이 불가능함
    - 다만 신용도 등급이 비슷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2016년 이후의 당기순이익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IV-15> 비수혜기업 재무정보(B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0	-140,264	-146,676	-146,676
2015	503,474	-610,741	-231,209	-377,885
2016	-	-	-	-377,885
2017	-	-	-	-377,885

<표 IV-15>의 계속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8	-	-	-	-377,885
2019	-	-	-	-377,885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비수혜 원인: B기업) B기업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과세이연의 증가로 실질 세금이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3) C기업

□ (기업 개요: C기업) C기업은 2014년 3월 완전 철수 형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턴기업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중국에서 전라북도로 완전 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함
- 조사기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던 이력이 없음
-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귀금속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 기업 개요상으로는 본 제도의 수혜기업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 IV-16>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C기업)

회사명(가명)	C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전라북도
국내복귀일자	2014년 3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산업 분류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휴폐업 여부	No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재무정보: C기업) 귀속연도 기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손실로 인한 과세이연에 의하여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2014년 적자(-36,083,000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함
  -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과세이연 금액이 -1,716,469,000원까지 누적됨
  - 이후 당기순이익이 과세이연 금액을 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8년부터 양(+)의 당기순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과세이연 누적금액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산업의 평균적인 업황을 고려하였을 때,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까지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표 IV -17> 비수혜기업 재무정보(C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0	-154,638	-88,517	-88,517
2015	204,237	-1,186,252	-944,131	-1,032,648
2016	1,065,732	-1,240,366	-532,517	-1,565,165
2017	4,372,144	-341,185	-151,304	-1,716,469
2018	9,164,791	533,960	568,284	-1,148,185
2019	9,148,725	297,291	378,528	-769,657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비수혜 원인: C기업) 결과적으로 C기업은 큰 누적 적자로 인하여 최근까지 실질 부담 세금이 없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4) D기업

- (기업 개요: D기업) D기업은 2014년 3월 중국에서의 사업장을 완전 청산 형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턴기업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중국에서 광주광역시로 사업장을 완전 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함

- 귀속연도 기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조사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던 이력이 없음
-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주형 및 금형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음
- 기업 개요상으로는 본 제도의 수혜기업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 IV-18>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D기업)

회사명(가명)	D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북귀지역	광주광역시
국내북귀년도	2014년 3월
국내북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산업 분류	주형 및 금형 제조업
휴폐업 여부	No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재무정보: D기업) 재무정보상으로는 지속적인 양(+)의 당기순이익을 보여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양(+)의 당기순이익을 보여 양호한 재무 상태를 보임
    - 이에 따라 적자로 인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표 IV-19> 비수혜기업 재무정보(D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23,348,341	2,086,808	708,350	0
2015	25,684,614	1,977,873	1,029,270	0
2016	26,012,858	2,048,924	2,309,226	0
2017	22,373,149	2,278,032	269,215	0
2018	23,406,809	1,801,817	1,710,399	0
2019	23,619,379	1,586,094	143,281	0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기타 정보: D기업) 재무 공시에서 제공하는 기업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한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2015년 중국 공장의 증축으로 인하여 본 조세특례제도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 2014년 3월에 국내로 공장을 증축하여 이전하였음
  -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2015년 4월에 중국 공장을 증축함
  - 2014년 당시 청산 및 양도의 방법으로 혜택의 조건을 만족하였으나 2015년 중국 공장의 증축으로 인하여 청산조건 불만족
  
- (비수혜 원인: D기업) 종합적으로 D기업은 큰 누적 적자로 인하여 최근까지 실질 부담 세금이 없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5) E기업

- (기업 개요: E기업) E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완전 청산 형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턴기업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2014년 3월 중국에서 전라북도로 사업장을 완전 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함
  - 귀속연도 기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의류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음
  - 2019년 폐업을 한 후 유한회사로 전환하여 동일 회사명 및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립함
    - 혜택 대상기업은 이미 폐업한 상태이므로 본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표 IV-20>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E기업)

회사명(가명)	E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전라북도
국내복귀년도	2014년 3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표 IV-20>의 계속

회사명(가명)	E기업
산업 분류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휴폐업 여부	Yes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재무정보: E기업) E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본 조세특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나 기존 기업을 폐업한 후 유한회사로 전환하여 더 이상 대상 기업이 아니게 되었음

<표 IV-21> 비수혜기업 재무정보(E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	-	-	0
2015	489,427	86,895	80,999	0
2016	542,272	87,410	90,116	0
2017	469,058	32,263	116,371	0
2018	556,314	-41,950	61,394	0
2019*	790,952	62,487	61,582	0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함  
 4. 폐업한 후 2019년에 유한기업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를 사용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비수혜 원인: E기업) 종합적으로 E기업은 유한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해당 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를 수혜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6) F기업

(기업 개요: F기업) F기업은 2014년 3월에 중국에서 완전 철수 형식으로 충청남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던 이력이 없음
-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업종 분류상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을 제조 하였음
- 기업 개요상으로는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기업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 할 수 없음

<표 IV-22>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F기업)

회사명(가명)	F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충청남도
국내복귀년도	2014년 3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산업 분류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휴폐업 여부	No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재무정보: F기업) 귀속연도 기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큰 누적 손실로 인한 과세이연에 의하여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857,389,000원과 -1,415,289,000원의 적자가 발생함
-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과세이연 금액이 2019년 기준 -4,821,641,000원까지 누적됨
- 이후 당기순이익이 과세이연 금액을 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이후에도 양(+)의 당기순이익을 가질 가능성이 낮아 과세이연 누적금액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산업의 평균적인 업황을 고려하였을 때,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까지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표 IV-23> 비수혜기업 재무정보(F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541,391	-1,589,370	-1,857,389	-1,857,389
2015	4,518,123	-1,422,357	-1,415,289	-3,272,678
2016	8,454,154	239,809	218,284	-3,054,394
2017	11,170,313	430,168	238,761	-2,815,633
2018	9,881,486	-1,216,007	-1,255,523	-4,071,156
2019	9,802,743	-703,186	-750,485	-4,821,641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비수혜 원인: F기업) 결과적으로 F기업은 큰 누적 적자로 인하여 최근까지 실질 부담 세금이 없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7) G기업

- (기업 개요: G기업) G기업은 2014년 9월에 중국에서 완전 철수 형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던 이력이 없음
  - 중국에서 유압기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음
  - 기업 개요상으로는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기업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

<표 IV-24>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G기업)

회사명(가명)	G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복귀년도	2014년 9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표 IV-24>의 계속

회사명(가명)	G기업
산업 분류	유압기기 제조업
휴폐업 여부	No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재무정보: G기업) 귀속연도 기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큰 누적 손실로 인한 과세이연에 의하여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207,409,000원과 -1,235,990,000원의 적자가 발생함
  - 이로 인하여 과세이연 금액이 2018년 기준 -2,443,399,000원까지 누적됨
  - 2019년 당기순이익이 과세이연 금액을 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IV-25> 비수혜기업 재무정보(G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5,708,961	496,014	333,775	0
2015	6,127,668	535,818	366,532	0
2016	6,850,541	521,473	296,643	0
2017	6,695,682	9,153	-1,207,409	-1,207,409
2018	6,497,693	66,266	-1,235,990	-2,443,399
2019	6,619,666	332,638	19,141	-2,424,258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비수혜 원인: G기업) G기업은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적자로 인하여 최근까지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금이 없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8) H기업

- (기업 개요: H기업) H기업은 중국의 사업장을 완전 청산 형식으로 산업통상자원 부로부터 유턴기업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2014년 9월 중국에서 세종시로 사업장을 완전 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 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함
  - 귀속연도 기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의류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음
  - 2016년 12월 경영 악화로 폐업함
    - 혜택 대상기업은 이미 폐업한 상태이므로 본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표 IV-26>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H기업)

회사명(가명)	H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복귀년도	2014년 9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산업 분류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휴폐업 여부	Yes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재무정보: H기업) H기업의 경우 만일 현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였다면, 본 조세특례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나 폐업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표 IV-27> 비수혜기업 재무정보(H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985,627	94,649	83,323	0
2015	1,002,660	80,030	62,060	0
2016	680,716	24,883	14,635	0
2017	-	-	-	-
2018	-	-	-	-
2019	-	-	-	-

-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9) I기업

- (기업 개요: I기업) I기업은 2014년 10월 중국에서 완전 철수 형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전라북도로 이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함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던 이력이 없음
  -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업종 분류상 귀금속 관련 제품을 제조하였음
  - 기업 개요상으로는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기업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

<표 IV-28>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I기업)

회사명(가명)	I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전라북도
국내복귀년도	2014년 10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산업 분류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휴폐업 여부	No

-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재무정보: I기업) 2014년부터 지속된 손실로 인한 과세이연에 의하여 해당 조세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파악 가능한 정보 내에서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적자 발생
  - 2019년까지의 누적된 적자(과세이연 금액)는 - 752,432,000원임
    - 이는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2017년과 2019년의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계산임
    - 재무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시기에 다른 귀속연도의 자료와 유사한 적자 수준을 보인다면 과세이연의 누적금액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의 평균적인 업황을 고려하였을 때,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까지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표 IV-29〉 비수혜기업 재무정보(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0	-126,796	-139,688	-139,688
2015	1,687,823	-488,985	-224,960	-364,648
2016	2,324,255	-863,052	-287,277	-651,925
2017	-	-	-	-651,925
2018	3,297,213	-28,658	-100,507	-752,432
2019	-	-	-	-752,432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비수혜 원인: I기업) I기업은 2014년 이래로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2019년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10) J기업

- (기업 개요: J기업) J기업은 2014년 10월 중국에서 완전 철수 형식으로 산업통상

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전라북도로 이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함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던 이력이 없음
- 중국에서 귀금속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음
- 기업 개요상으로는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혜기업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

<표 IV-30>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J기업)

회사명(가명)	J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전라북도
국내복귀년도	2014년 10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산업 분류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휴폐업 여부	No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재무정보: J기업) 2014년부터 지속된 손실로 인한 과세이연에 의하여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파악 가능한 정보 내에서는 2014년에 발생한 적자로 인하여 과세이연 금액이 증가함
- 2019년까지의 누적된 과세이연 금액은 - 12,769,000원임
  - 이는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2016년, 2017년 및 2019년의 당기순이익을 0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계산임
  - 2014년 적자 폭이 크기 않아서 재무정보가 없는 연도의 자료들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이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함
  - 다만 KISLINE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현금흐름 등급이 낮고 자본잠식 상태

- 이기 때문에, 사실상 휴폐업일 가능성이 높음
- 산업의 평균적인 업황을 고려하였을 때,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까지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표 IV-31> 비수혜기업 재무정보(J기업)

(단위: 천원)

귀속연도(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과세이연(누적)
2014	0	-29,098	-42,458	-42,458
2015	504,242	22,746	27,663	-14,795
2016	-	-	-	-14,795
2017	-	-	-	-14,795
2018	1,700,181	-36,679	2,026	-12,769
2019	-	-	-	-12,769

-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3. 과세이연의 경우 2014년 적자분부터 합산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 (비수혜 원인: J기업) J기업은 2014년 발생한 적자로 인하여 2019년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제도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11) K기업

- (기업 개요: K기업) K기업은 2014년 10월 중국에서 완전 철수 형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복귀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경기도로 이주하였으며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주하여 국내복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업은 아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외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분류됨

<표 IV-32> 비수혜기업 원인 분석: 기업 개요(K기업)

회사명(가명)	K기업
해외진출국가	중국
국내복귀지역	경기도
국내복귀년도	2014년 10월
국내복귀유형	청산 및 양도
중소기업 여부	Yes
산업 분류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휴폐업 여부	No

주: 1. 2014년 선정된 유턴기업 중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회사명(가명)의 경우 무작위로 알파벳을 할당하였으며, 본래의 기업 이름과 무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를 연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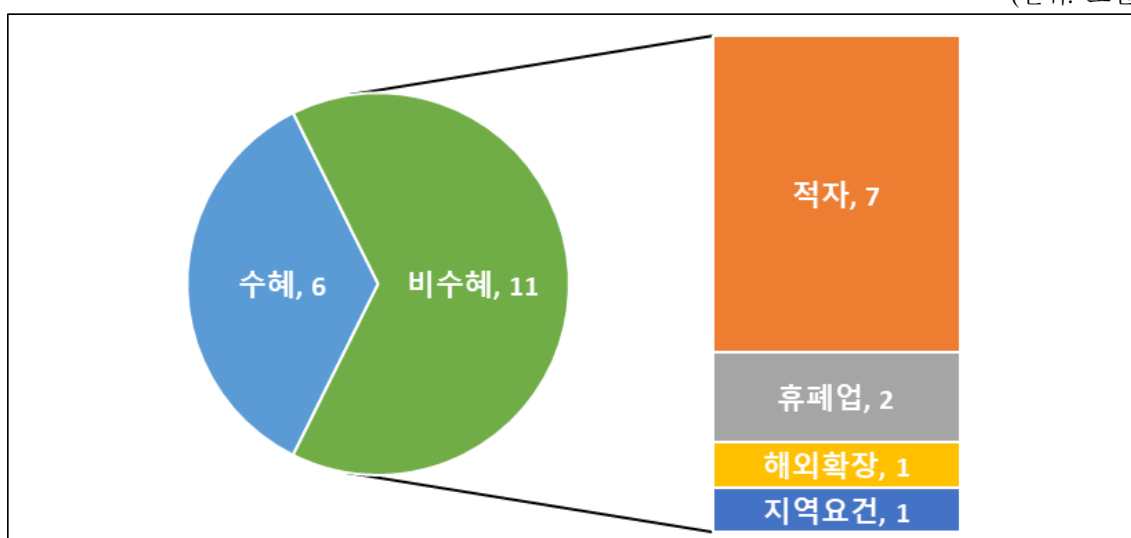
(재무정보: K기업) K기업의 경우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비수혜 원인: K기업) K기업은 2014년 이전 당시 본 조세특례제도의 지역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 제도를 수혜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다. 분석 결과

[그림 IV-1] 성과저해 요인 분석(2014년 국내복귀기업 기준)

(단위: 조원)



자료: 저자 작성

- [그림 IV-1]에서 요약되어 있듯이 2014년 국내복귀기업들의 기업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동 제도의 성과저해 원인은 수혜대상 기업들의 적자 및 휴폐업이 주된 이유로 파악됨
  - 2014년 총 17개의 기업이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턴기업 인증 시에 17개 기업 모두 완전 철수를 목표로 하였음
    - 2014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1개의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중소기업이었으며, 귀금속 관련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17개 기업 중 6개(35.3%)의 기업이 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며, 11개(64.7%)의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강제적 수혜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까지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 본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모두 중견기업이었으며 귀금속 관련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해당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81.8%(9개)의 기업이 적자 및 휴폐업으로 인하여 동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밝혀짐
    - 다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생존 주기가 짧기 때문에 본 제도의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 다른 비수혜 원인으로는 동 「조세특법」상 지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복귀 이후에 수익이 개선되면서 해외 확장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각각 1개 사례로 비중이 낮음
    - 특히 2021년까지 전체 유턴기업 중 동 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과저해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 분석

#### 가. 분석자료

- 동 과세특례의 정책목표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을 구성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기업 목록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득한 유턴기업 목록에는 유턴기업 승인날짜, 기업명, 본점 주소, 복귀유형, 해외진출 국가 및 지역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승인 유통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업들 중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들을 의미함
- 자료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승인 유턴기업들로 구성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진출기업 목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구득한 해외진출기업 목록은 해외진출기업의 회사명, 주소, 진출년도, 진출형태, 투자형태, 업종, 취급분야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격년 주기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7일에 업데이트된 2020년까지 총 10,400여개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목록을 구득하여 사용함
  - 다만, 이 자료는 해외진출기업의 전수를 수록한 것은 아니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정보제공 동의 의사를 표한 기업에 한해 수록된 자료임
  - 조사시점 기준 2020년 7~9월의 자료이며, 이 기간까지의 기업의 요청에 따른 추가 등재 및 철수 후 삭제를 반영 자료임
  - 1944년부터 2020년까지의 해외진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중인 기업들만 포함하고 있어 샘플의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이 있을 수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도별 기업 및 해외진출 국가 특성 변수들을 고려함

-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재무 자료
  -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는 연도별 기업특성 및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국내 자료 중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국세청 신고 기업 수 대비 대략 30~60% 사이의 기업을 표본으로 함
  -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표본이 구성되어 있음
  - 기업 특성 변수로는 산업 중분류, 총자본, 총매출액을 고려하였음
- 해외진출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 해외진출국가의 연도별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은 개별 국가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수득함

- World Bank의 규제 질(regulatory quality) 지수
  - Kaufmann and Kraay(2007)이 개발한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중 하나인 규제 질 지수를 활용함
  - 지수는 1996년부터 약 200여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산출되고 있음
  - 규제 질 지수는 각 국가의 규제가 민간부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지표화
  - 지수 결정에는 창업의 용이성, 불공정 거래의 정도, 최저임금 수준, 노동유연성, 투자제한, 거래제한, 금융거래제한 등과 같은 정책 및 환경의 친기업적인 정도를 고려함
  - 법인세율의 경우 규제 질 지수 결정 구성 요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세금 부과의 공평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sup>74)</sup>
  - Kaufmann and Kraay(2007)에 따르면 다른 유사 지수들과 다르게 연도별 개별 국가들의 정책 및 환경의 친기업적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시계열적 변화도 비교 가능하도록 지표를 고안함

□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t시점의 유턴기업과 해외진출기업들을 t-1시점의 자료들과 다음 순서 및 방법으로 자료들을 병합하였음<sup>75)</sup>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기업 목록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진출기업 목록에 있는 기업들을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재무 자료와 병합
- 기업 재무정보와의 병합은 다음 순서로 실시함
  - 사업자 등록번호 자료가 있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병합
  - 미병합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글 회사명 기준으로 병합
  - 미병합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문 회사명 기준으로 지역명, 회사를 나타내는 표현(Co., LTD. 등), 공란을 모두 제거한 후, 대문자로 변환함<sup>76)</sup>
  - 변환된 영문 회사명을 대상으로 음성적 유사도 알고리즘(Phonetic Matching Algorithm)인 Soundex를 활용하여 병합
- 해외진출국가의 ISO 3166-1 alpha-3을 기준으로 연도별 법정 최고세율 자료와 병합

74) 구체적인 규제 질 지수 결정 구성 요소는 아래의 World Ban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참고: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downloadFile?fileName=rq.pdf>)

75) 이는 추후 분석에서 t시점의 국내복귀의 원인이 t-1시점의 기업환경, 산업환경, 국가별 경영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인 가정을 고려하여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

76) 예를 들어, Samsung Electronics Africa Co.는 SAMSUNGELECTRONICS로 변환함

- World Bank의 규제 질(regulatory quality) 지수 자료와 병합
- 회귀분석을 위하여 다음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90개의 유턴기업이 매칭되었으며, 이는 전체 유턴기업 중 80.36%에 해당함
  - 병합이 안 된 경우
  - 총자본, 총매출액, 산업중분류가 없는 경우
    - 한국기업데이터상 산업중분류 자료가 공란인 경우 수작업으로 회사 홈페이지의 재무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 가능한 경우 표본에 남김
    - 총자본 및 총매출액의 경우에도 한국기업데이터상 공란이나 회사 홈페이지의 재무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수득이 가능할 경우 표본에 남김

## 나. 계량추정전략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처치집단과 함께 유사한 특성을 가진 통제집단으로 구성된 표본을 활용한 이진 반응 모형(Binary Response Model)을 고려함
  - 처치집단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복귀기업으로 구성
  - 국내복귀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외부감사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복귀 시점 전후로 결측치가 많아 제대로된 패널자료 구축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처치집단인 국내복귀기업과 통제집단인 국내복귀년도 - 1 시점에 국내복귀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해외진출기업들을 포함하는 pooled cross-sectional data를 구축하여 표본으로 활용함
  - 구축된 표본을 활용하여 어떠한 요인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 위함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진 반응 모형을 고려하였으며, 확률분포함수의 가정에 따른 추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로짓 모형(Logit Model),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모두 추정함
    - 이진 반응 모형은 종속변수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 질적 변수에 활용되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복귀 여부를 종속변수로 고려하고 있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모형임

- 선형확률 모형은 경제주체의 선택(종속변수)이 독립변수와 선형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정한 모델이며, 기존의 선형 OLS모델과 동일하여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선택확률이 0과 1 사이를 벗어난 값을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단점이 있음
- 이러한 구조적인 단점을 보완한 모형이 로짓 모형과 프로빗 모형이며, 이는 확률분포함수를 각각 로지스틱(logistic) 분포와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분포함수로 가정하여 선택확률이 0과 1 사이에 값을 가지도록 설정됨
- 종속변수에는 국내복귀기업 여부, 독립변수에는 과거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복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고려함

□ 통제집단은 다음과 같은 매칭방법으로 선택된 해외진출기업으로 구성함

- 분석의 목표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특성 변수인 기업 규모와 산업을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매칭하여 통제집단을 설정함
- 구체적인 매칭과정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로 처치집단인 국내복귀기업과 동일한 산업인 해외진출기업만을 매칭 대상으로 제한함
  - 사실상 횡단면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연도로 매칭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는 시계열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임
  - 제한된 매칭 대상에서 복귀연도 - 1 시점의 총자본을 기준으로 매칭을 실시하여 가장 유사한 기업을 각 pair의 matched sample로 선정함
  - 매칭에 사용된 기준은 Euclidean distance를 활용하였으나, 각 연도와 산업이 동일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매칭 변수는 총자본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매칭 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k-nearest, Mahalanobis 등)에 따른 분석 표본 차이가 없음
  - 결과적으로 각 pair는 처치집단인 1개의 국내복귀기업과 매칭된 1개의 해외진출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동일한 연도별·산업별 특징을 가지면서 기업 규모가 해외진출기업 중에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통제집단이 pair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국내복귀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복귀기업과 그와 유사한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함

○ 추정 회귀식

$$Uturn = \alpha + \beta_1 Tax + \beta_2 Sales + \beta_3 Regulatory Quality + Pair + \epsilon \quad \text{식 (1)}$$

○ 종속변수는 복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Uturn*)로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복귀를 한 경우에는 1,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복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짐

○ 독립변수는 본 조세특례제도, 과거연구,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Tax*), 매출액(*Sales*), 해외진출국가의 규제 질 지수(*Regulatory Quality*)를 고려함

-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은 복귀연도 - 1 시점의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을 의미하며, 해외법인세율이 국내복귀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함
- 매출액은 복귀연도 - 1 시점의 K-GAAP 기준 매출액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 생산활동에 가장 중요한 수익 측면을 파악하기 위함
- 상장기업의 경우 K-IFRS 기준으로 재무정보를 제공하나 TS2000에서 K-GAAP 변환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장기업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K-GAAP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K-GAAP 기준의 매출액을 활용하여 분석함
- 매출액 이외에도 기업의 수익과 관련된 변수들(영업이익, 순이익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업의 매출에서 법인세, 노동비용 등과 같은 비용 측면이 고려된 후의 변수들이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고려하지 않음
- 해외진출국가의 규제 질 지수는 복귀연도 - 1 시점의 해외진출국가의 규제의 질 지수 값을 의미하며, 법인세 정책 이외의 기업 친화적 제도·환경의 정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포함됨
- 규제의 질 지수의 구성 요소에는 법인세율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중요 요인 변수 중 하나인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과 다중공산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과 해외진출국가의 규제의 질 지수는

복귀연도 - 1 시점의 국내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과의 차이와 국내와의 규제의 질 지수 차이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pair별 매칭이 동일 연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으로부터 기인함

- 기본적으로 횡단면 분석이나 연도별 매칭 pair별 고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air별 고정효과(Pair)를 통제함
-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는 pair별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 회귀식으로부터 추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만약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이 국내에 비해 높을수록)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 확률이 높아진다면(+),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의 계수인  $\beta_1$ 이 양(+의 값으로 추정됨
  - 만일 해외진출기업의 매출액이 높을수록(+ 국내복귀 확률이 낮아진다면(-), 매출액의 계수인  $\beta_2$ 가 음(-)의 값으로 추정됨
  - 마지막으로 해외진출국가의 경영환경이 기업 친화적일수록(+, 해외진출국가의 경영환경이 국내에 비해 기업 친화적일수록)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 확률이 낮아진다면(-), 해외진출국가의 규제의 질 지수의 계수인  $\beta_3$ 이 음(-)의 값으로 추정됨

#### 다. 추정 결과

- 아래의 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식 (1)의 회귀분석 모형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만을 고려한 모형의 결과는 해외진출국가의 법인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으로 파악됨
    - <표 IV-33>의 (A)열의 결과는 선형확률 모형의 추정 결과로 다른 모든 요소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올릴 경우 국내복귀 확률이 대략 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B)의 경우, 다른 모든 요소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올릴 경우 국내복귀 확률이 1.13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exp(\beta_1) = 1.135 > 1$ )

-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C)도 이전 결과들과 유사하게 다른 모든 요소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라갈 경우 국내복귀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beta_1 > 0$ )
-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 매출액과 해외진출국가의 규제의 질을 고려한 이후에도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표 IV-33>의 (B), (D), (F)열의 결과는 각각 선형확률 모형, 로짓 모형,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이며, 다른 모든 요소들이 동일하였을 때,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 최고세율의 상승이 국내복귀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사업의 악화(매출액 감소)와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표 IV-33> 국내복귀 요인 분석

	(A)	(B)	(C)	(D)	(E)	(F)
	<i>Uturn</i>	<i>Uturn</i>	<i>Uturn</i>	<i>Uturn</i>	<i>Uturn</i>	<i>Uturn</i>
최대세율(%)	0.030 <sup>*</sup> (0.015)	0.033 <sup>**</sup> (0.013)	0.127 <sup>**</sup> (0.050)	0.171 <sup>***</sup> (0.059)	0.078 <sup>***</sup> (0.029)	0.098 <sup>**</sup> (0.033)
매출액(억원)		-0.128 <sup>***</sup> (0.017)		-1.276 <sup>***</sup> (0.415)		-0.751 <sup>***</sup> (0.270)
규제의 질(0~1)		-2.361 <sup>***</sup> (0.346)		-12.57 <sup>***</sup> (2.030)		-7.660 <sup>***</sup> (1.221)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추정방식	LPM	LPM	Logit	Logit	Probit	Probit
N	180	180	180	180	180	180
R2	0.042	0.227	0.031	0.189	0.031	0.212

- 주: 1.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복귀기업과 매칭된 기업들의 pooled data 사용  
 2. 매칭은 연도와 산업(중분류)가 동일한 대상 중 복귀연도 - 1의 총자본을 기준으로 함  
 3.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4. 매출액은 기업의 복귀연도 - 1 시점의 매출액을 억단위로 환산  
 5. 최대세율과 규제의 질은 진출국가의 복귀연도 - 1 시점 자료를 의미함  
 6. 고정효과는 matching pair 수준(연도 × 산업 × pair)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기업데이터, World Bank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

- 종합적으로 해외진출국가의 법정 법인세율(또는 해외진출국가와 국내의 법정 법인세율의 차이)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효과는 통제변수의 유무 및 추정방식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V.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V.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조특§104의 24)는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국내로 이전(완전복귀)하거나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부분복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함(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본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타당성 분석
  - (정부 개입의 타당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고용 증가, 투자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장을 국내 및 지방으로 이전할 시에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바, 비슷한 의사결정을 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본 조세특례 제도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도 부합함
    - 유사 조세 감면 혜택의 예로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 있음
  - (지원 대상의 적절성)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고연도 기준 2014~2020년에 총 10개의 기업이 동 조세특례로 인한 세액감면을 한 번 이상 받았음<sup>77)</sup>
    - 수혜기업의 대부분은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완전복귀한 제조업 중심의 중소 기업으로 복귀 후 수도권 밖에 위치함

77) 총 30억원의 조세지출과 24개의 감면 건이 있었음

- 수혜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본 조세특례 수혜기업들의 복귀에 따른 고용 및 투자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기업 이전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함(강법식·김덕모, 2006; 정세은·김봉한, 2009; 이수영·남시훈, 2019)
  - 또한, 향후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세부 제조업이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어, 수혜기업의 특성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함(길은선, 2021)
- (지원방법의 타당성) 본 조세특례 지원방법의 타당성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재정지원이 아닌 조세제도로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부분복귀를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세액감면 대상소득액 정의의 타당성
  - 먼저, 본 조세특례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복귀 후 소득이 크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이 적은 기업의 경우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또한, 중견기업의 부분복귀 비율이 높아, 본 조세특례의 부분복귀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지원대상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본 조세특례의 대상소득액은 국내복귀 전후 매출의 상대적 크기나 산업군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유인효과를 크게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기업 특성별 유인효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함
- (다른 정책과의 중복성)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위한 유사 세제 및 재정사업은 11건 정도로, 분석 결과 중복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중 투자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관세감면, 이전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순이었음
  - 반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의 경우 본 조세특례의 정책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주력 수혜산업군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지원대상에 상반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임

## □ 효과성 분석

- 동 과세특례는 해외기업의 국내복귀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조세감면의 효과성 파악) 설문조사 결과, 동 제도는 해외기업의 국내복귀에 최우선 요인은 아니나 제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수혜기업은 과반수가 감면제도가 국내복귀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해외진출기업의 과반수는 해당 제도의 국내복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함
  - 수혜기업 중 73.4%(11/15)는 해당 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경영적 요소와 비슷하거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46.7%(7/15)로 높음
  - 미래에 동 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63.6%(42/66)가 해당 제도의 국내복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함
  - 국내복귀 결정 이유: 국내 정책 요소는 여러 국내복귀 유인 중 우선순위가 낮으나 긍정적 효과 존재
- (성과저해 원인 분석) 기업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동 제도의 성과저해 원인은 수혜대상 기업들의 적자 및 휴폐업이 주된 이유로 파악됨
  - 해당 「조특법」상 강제적으로 수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도 국내복귀기업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sup>78)</sup>
    - 2014년 총 17개 기업이 모두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완전 철수를 목표로 하였음
    - 6개(35.3%)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며, 11개(64.7%)의 기업은 「조특법」상 강제적 수혜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도 혜택을 받지 못함
    - 비수혜기업 중 81.8%(9개)의 기업이 적자 및 휴폐업으로 인하여 동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함
    - 다른 비수혜 원인으로는 동 「조특법」상 지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복귀 이후에 수익이 개선되면서 해외 확장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각각

78) 국세청에서 공유받은 수혜법인 자료가 귀속연도 기준 2014년부터 2019년이기 때문에, 2015년 이후의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조특법」상 강제적 법인세 감면혜택 시작 시기(복귀 후 5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불가함

1개 사례로 비중이 낮음

- 특히 2021년까지 전체 유턴기업들 중 동 제도의 지역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과저해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복귀 요인 분석) 국내복귀기업과 매칭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국내복귀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턴기업 자료와 KOTRA의 해외진출기업 자료를 매칭하여 분석 표본을 구성함
  -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세금 정책에 따른 국내복귀 유인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진출 국가의 최대세율이 상승할수록 국내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통제변수들을 제어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줌
  - 해외진출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클수록 국내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국내복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수익성 악화 측면과 일관됨
  - 진출 국가의 기업 정책 및 환경이 친기업적일수록 국내복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역시 설문조사와 일관성이 있음
- (종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돕기 위한 조세특례의 타당성이 소명되며, 해외 기업의 국내복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 및 지원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으나, 뚜렷한 제도적 원인을 찾기는 어려움
  - 우려가 되었던 지원기간 또는 지역 제한은 큰 저해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존재가 국내복귀의 유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하고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복귀 대상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실제로 제도가 확대될 경우에는 향후 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산업 및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정책과의 충돌이 우려되어, 제도가 확대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문헌

- 강내영·강성은·도원빈,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기술 혁신과 리쇼어링 - 선진 제조강국을 중심으로 -」, Trade Focus 2021-0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
- 강법식·김덕모, 「기업관계자가 본 광주·전남의 기업유치와 투자환경」, 『국토연구』, 제49권, 국토연구원, 2006, pp. 39~53.
- 강수연·문제철, 「제4차 산업혁명과 광주전남지역으로의 리쇼어링」, 『전남광주 경제이슈』 No. 2018-1, 2018.
- 강유정·최보람, 「리쇼어링 지원 - 세법개정으로 충분한가?」,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제38권 제1호, 2021, pp. 119~151.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1.
- 권성오·김무열·최승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기획재정위원회, 『[2024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7인) 검토보고서』, 2020. 3.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검토보고서』, 2012. 10.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각 연도  
\_\_\_\_\_,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길은선·김지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특성 변화와 인력재배치 방향』, 산업연구원, 2021.
- 김성국, 「중국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제39권 제3호, 2014, pp. 19~39.
- 김종규,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보고서, 2020.
- 민혁기·문종척·강지현·안유나, 「리쇼어링 추진전략과 과제」, ISSUE PAPER 2021-02, 산업연구원, 2021.

- 서민교,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유턴에 관한 연구: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8권 제4호, 2013, pp. 317~338.
- 손동희, 『국내복귀기업관련 주요정책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
- 심혜정·강내영,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과 각국의 대응현황」,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2018, p. 2.
- 오윤미,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4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윤문섭·조현대, 「선진국 진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 및 대응방안」, STEPI Insight, 2014, 134: pp. 1~22.
- 윤별아,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외 정책대응 및 감사 시사점』, 감사연구원, 2019.
- 윤충식·장태희·강지현,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 이수영·남시훈,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3호, 2019, pp. 55~79.
- 이수영·최혜린·김혁황·박민숙·남시훈,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효과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이언경, 「미국의 리쇼어링 (Reshoring) 추진 동향 분석」, 『계간 해양수산』, 제3권 제2호, 2013, pp. 132~149.
- 임민경·여지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정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정세은·김봉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투자, 고용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15권 제2호, 2009, pp. 105~169.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경영지표[제조업]」, 2021.
- \_\_\_\_\_,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2020.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1.
- 최혜린·이수영·박민숙,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학보』, 제27권 제2호, 2020, pp. 99~137.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의 리쇼어링 현황과 시사점』, 2020.
- 홍성효, 「이전기업을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충남의 사례」, 『한국균형발전연구』, 제3권 제3호, 2012, pp. 95~110.

經濟産業省, 『地域未來投資促進政策について』, 2020.

Barbieri, P., Ciabuschi, F., Fratocchi, L. and Vignoli, M., “What do we know about manufacturing reshoring?,” *Journal of Global Operations and Strategic Sourcing*, Vol. 11 No. 1, 2018, pp. 79-122. <https://doi.org/10.1108/JGOSS-02-2017-0004>.

Cassia, F., “‘Manufacturing is coming home’: Does Reshoring Improve Perceived Product Quality?,” *The TQM Journal*, 2020.

Dachs, Bernhard and Zanker, Christoph, “Backshoring of production activities in European manufacturing,” MPRA Paper No. 63868, posted 12, 2015.

De Backer, K. et al., “Reshoring: Myth or Realit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 27, OECD Publishing, Paris, 2016. 1. 26., <http://dx.doi.org/10.1787/5jm56frbm38s-en>.

Eurofound, *The future of manufacturing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2019.

Grossman, Gene M., and Esteban Rossi-Hansberg, “Trading Tasks: A Simple Theory of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8 (5): 1978-97, 2008.

Harvey, R., & Gayer, T, *Public Finance*,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10.

Koen De Backer & Carlo Menon & Isabelle Desnoyers-James & Laurent Moussiég, “Reshoring: Myth or Reality?,”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 27, 2016.

Kaufmann, Daniel; Kraay, Aart., “Governance Indicators: Where Are We, Where Should We Be Going?,”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370, World Bank, 2007.

McIvor R, Bals L., “A Multi-theory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shoring Decisi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30(6), 2021 Dec, 101827.

Reshorin Initiative, “RESHORING INITIATIVE® IH2021 DATA REPORT,” <https://reshorennow.org/blog/reshoring-initiative-ih2021-data-report>, 검색일자: 2022. 1. 28.

\_\_\_\_\_, “RESHORING INITIATIVE 2018 DATA REPORT,” <https://reshorennow.org/blog/reshoring-initiative-2018-data-report>, 검색일자: 2022. 1. 28.

Robinson PK, Hsieh L, “Reshoring: a Strategic Renewal of Luxury Clothing Supply Chains,” *Operations Management Research*, 9(3), 2016 Dec, pp. 89~101.

Strange, R, “The 2020 Covid-19 Pandemic and Global Value Chains,” *Journal of Industrial*

*and Business Economics*, 47(3), 2020, pp. 455~465.

Zhai W, Sun S, Zhang G, “Reshoring of American Manufacturing Companies from China,”  
*Operations Management Research*, 9(3), 2016 Dec, pp. 62~74.

뉴스핌(Newspim), 「‘리쇼어링’, 미국은 뜨거웠고 한국은 차가웠다」, 2020. 7. 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년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동향 보도자료」, 2022. 1. 11.

\_\_\_\_\_, 「유턴범위 확대를 통한 국내복귀 및 투자 활성화 추진」, 2022. 6. 22.

\_\_\_\_\_, 「2021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 2022. 1. 11.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최근 10년 한국기업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조사」, 2021.  
12. 22.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대만 리쇼어링 동향(해외자금회귀전문법 시행 1주년)」,  
2020. 9. 1.

중앙일보, 「유턴했더니 반짝 혜택만...기업들 국내복귀 망설이는 이유」, 2022. 4. 26.

한겨레, 「‘유턴 기업’ 지난해 26개사 역대 최다...공급망 재편 영향」, 2022. 1. 11.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바이든 행정부: 주요 4대 산업 공급망에 대한 100일 조사  
보고서 발표」, 2021. 6. 9.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2021.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급망 혼란 및 엔저로 자국복귀 속도 내는 日 기업들」, 2022.  
7. 1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10&CONTENTS\\_NO=1&bbsSn=242&pNttSn=195215](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10&CONTENTS_NO=1&bbsSn=242&pNttSn=195215), 검색일자: 2022. 7. 13.

\_\_\_\_\_, 「2020년 중국 평균임금 통계로 보는 산업 동향」, 2021. 7. 5.,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908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189082), 검색일자: 2022. 4. 11.

####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수출인큐베이터/코리아스타트업센터」, <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21F0.do>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외국인투자 지원-조세지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5&ccfNo=4&cciNo=1&cnpClsNo=2>

Invest Korea, 「해외인력 고용지원」,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243/web.do>

\_\_\_\_\_, 「입지지원」,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246/web.do>  
\_\_\_\_\_, 「보증·보험지원」,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244/web.do>  
\_\_\_\_\_, 「금융지원」,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245/web.do>  
\_\_\_\_\_, 「구조조정 컨설팅 신청」,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2203/web.do>

countryeconomy, <https://countryeconomy.com/national-minimum-wage>

Reshorin Initiative, <https://reshorenw.org/>

VALUEAFX, <https://ko.valutafx.com/KRW-VND.htm>

World Bank, Regulatory Quality,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

# 부 록





< 부 록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

2022. 5.

## < 목 차 >

<b>제1장. 조사개요</b> .....	<b>147</b>
1. 조사 목적 .....	148
2. 조사 대상 .....	148
3. 조사 진행 경과 .....	148
4. 응답자 특성 .....	148
<b>제2장. 조사 결과</b> .....	<b>150</b>
1. 국내유턴기업 .....	151
1) 기업 현황 .....	151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	152
3)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및 복귀 요인 .....	157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금감면제도 .....	163
2. 해외진출기업 .....	176
1) 기업 현황 .....	176
2) 사업장 현황 .....	178
3)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및 복귀 .....	179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금감면제도 .....	187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제도 인식 및 활용 .....	192
3. 해외진출희망기업 .....	196
1) 기업 현황 .....	196
2) 해외진출 및 복귀 .....	200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금감면제도 .....	207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제도 인식 및 활용 .....	212

## < 표목차 >

<표 1> 응답자 특성 .....	148
<표 2> 2020년 상시근로자 수 .....	152
<표 3> 국내복귀 유형 .....	152
<표 4>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소재지 .....	153
<표 5> 국내복귀 전 상시근로자 수 .....	154
<표 6> 해외사업장 운영기간 .....	154
<표 7>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소재지 .....	155
<표 8>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업태 .....	156
<표 9> 국내로의 복귀 후 상시근로자 수 .....	156
<표 10> 해외진출 결정 요인 - 종합 .....	157
<표 11> 해외진출 결정 요인 - 1순위 .....	158
<표 12> 해외진출 결정 요인 - 2순위 .....	158
<표 13> 해외진출 결정 요인 - 3순위 .....	158
<표 14>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159
<표 15> 국내복귀 결정 이유 - 종합 .....	160
<표 16> 국내복귀 결정 이유 - 1순위 .....	161
<표 17> 국내복귀 결정 이유 - 2순위 .....	161
<표 18> 국내복귀 결정 이유 - 3순위 .....	161
<표 19> 국내복귀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162
<표 20>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	163
<표 21> 국내복귀 세액감면 신청 여부 .....	164
<표 22>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	165
<표 23>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에 미친 영향 .....	166
<표 24>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167
<표 25>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상시근로자 수 ..	167
<표 26>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설비투자 .....	168

<표 27>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R&D투자 .....	168
<표 28>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	169
<표 29>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	170
<표 30> 알고 있는 지원제도 - 1 .....	171
<표 31> 알고 있는 지원제도 - 2 .....	171
<표 32> 수혜받은 지원제도 - 1 .....	172
<표 33> 수혜받은 지원제도 - 2 .....	172
<표 34>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1순위 - 1 .....	173
<표 35>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1순위 - 2 .....	173
<표 36>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2순위 - 1 .....	173
<표 37>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2순위 - 2 .....	174
<표 38> 세액감면 혜택 외 제도들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	175
<표 39> 세액감면제도와 그 외 제도의 효과 비교 .....	176
<표 40> 2020년 상시근로자 수 .....	177
<표 41> 국내사업장 수도권 과밀억제권 여부 .....	178
<표 42> 해외진출 결정 이유 - 종합 .....	179
<표 43> 해외진출 결정 이유 - 1순위 .....	180
<표 44> 해외진출 결정 이유 - 2순위 .....	181
<표 45> 해외진출 결정 이유 - 3순위 .....	181
<표 46>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182
<표 47> 향후 5년 내 국내복귀 의사 .....	183
<표 48> 국내복귀 고려 이유 - 종합 .....	184
<표 49> 국내복귀 고려 이유 - 1순위 .....	185
<표 50> 국내복귀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186
<표 51>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	187
<표 52>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	188
<표 53>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예상) .....	189
<표 54>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 결정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	190
<표 55>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없는 이유 .....	191
<표 56>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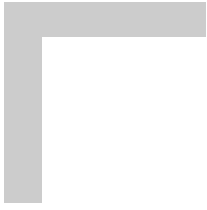
<표 57>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193
<표 58> 세액감면 혜택 이외의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 ..	194
<표 59> 세액감면제도가 기타 정부 지원 대비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효과 .....	195
<표 60> 2020년 상시근로자 수 .....	196
<표 61> 해외진출 여부 .....	197
<표 62> 해외진출 국가 - 1 .....	198
<표 63> 해외진출 국가 - 2 .....	198
<표 64> 해외진출 희망 국가 - 1 .....	199
<표 65> 해외진출 희망 국가 - 2 .....	200
<표 66> 해외진출 결정 이유 - 종합 .....	201
<표 67> 해외진출 결정 이유 - 1순위 .....	201
<표 68> 해외진출 결정 이유 - 2순위 .....	201
<표 69> 해외진출 결정 이유 - 3순위 .....	202
<표 70>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202
<표 71>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진출 기업 유무 .....	203
<표 72>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 및 국내사업장 확장 기업 유무 .....	204
<표 73>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종합 .....	205
<표 74>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1순위 .....	206
<표 75>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2순위 .....	206
<표 76>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3순위 .....	206
<표 77>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	207
<표 78>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예상 .....	208
<표 79>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영업이익 영향 .....	209
<표 80>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	210
<표 81>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제도의 해외진출 및 진출 이후 결정 영향 .....	211
<표 82>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212
<표 83>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1 .....	213
<표 84>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2 .....	213
<표 85>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영업이익 .....	214

<표 86>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215
<표 87>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제도가 경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	216

## < 그림목차 >

[그림 1] 2020년 상시근로자 수 .....	151
[그림 2]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소재지 .....	153
[그림 3]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업태 .....	153
[그림 4]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소재지 .....	155
[그림 5]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업태 .....	156
[그림 6] 해외진출 결정 요인 .....	157
[그림 7] 국내복귀 결정 이유 - 종합 .....	160
[그림 8]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	163
[그림 9] 국내복귀 세액감면 신청 여부 .....	164
[그림 10]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	165
[그림 11]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에 미친 영향 .....	166
[그림 12]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	168
[그림 13]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	169
[그림 14] 알고 있는 지원제도 .....	170
[그림 15] 수혜받은 지원제도 .....	171
[그림 16]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172
[그림 17] 세액감면 혜택 외 제도들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	174
[그림 18] 세액감면제도와 그 외 제도의 효과 비교 .....	175
[그림 19] 2020년 상시근로자 수 .....	177
[그림 20] 해외진출 결정 이유 .....	179
[그림 21] 향후 5년 내 국내복귀 의사 .....	183
[그림 22] 국내복귀 고려 이유 .....	184
[그림 23]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	187
[그림 24]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	188
[그림 25]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예상) .....	189
[그림 26]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없는 이유 .....	190

[그림 27]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192
[그림 28] 세액감면 혜택 이외의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	193
[그림 29] 세액감면제도가 기타 정부 지원 대비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효과 ....	195
[그림 30] 2020년 상시근로자 수 .....	196
[그림 31] 해외진출 여부 .....	197
[그림 32] 해외진출 국가 .....	198
[그림 33] 해외진출 희망 국가 .....	199
[그림 34] 해외진출 결정 이유 .....	200
[그림 35]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진출 기업 유무 .....	203
[그림 36]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 및 국내사업장 확장 기업 유무 .....	204
[그림 37]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205
[그림 38]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	207
[그림 39]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예상 .....	208
[그림 40]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영업이익 영향 .....	209
[그림 41]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	210
[그림 42]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	211
[그림 43]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212
[그림 44]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영업이익 영향 ...	214
[그림 45]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	215
[그림 46]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제도가 경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	216



# 제1장.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진행 경과
4. 응답자 특성

## 1. 조사 목적

-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24)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세제혜택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 조사 대상

- ▣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한 기업, 해외진출한 기업,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3. 조사 진행 경과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음
- ▣ 2022년 4월 25일~5월 13일까지 진행되었음

## 4. 응답자 특성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국내유턴기업		사례 수	비율
전체		30	1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25	83.3
	중견기업	5	16.7
국내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36.7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33.3
	완전복귀만 함	9	30.0

〈표 1〉의 계속

(단위: 명, %)

해외진출기업		사례 수	비율
전체		100	100.0
기업규모	제조업	52	52.0
	도매 및 소매업	25	25.0
	건설업	9	9.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6.0
	운수 및 창고업	5	5.0
	기타	3	3.0
국내복귀 유형	제조업	65	65.0
	도매 및 소매업	9	9.0
	건설업	8	8.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7.0
	운수 및 창고업	5	5.0
	기타	6	6.0
기업규모	중소기업	58	58.0
	중견기업	31	31.0
	대기업	11	11.0
해외진출 희망기업		사례 수	비율
전체		100	10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77.0
	도매 및 소매업	10	1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8.0
	기타	5	5.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99.0
	중견기업	1	1.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44.0
	진출하지 않음	56	56.0



## 제2장. 조사 결과

---

1. 국내유턴기업
2. 해외진출기업
3. 해외진출희망기업

# 1. 국내유턴기업

## 1)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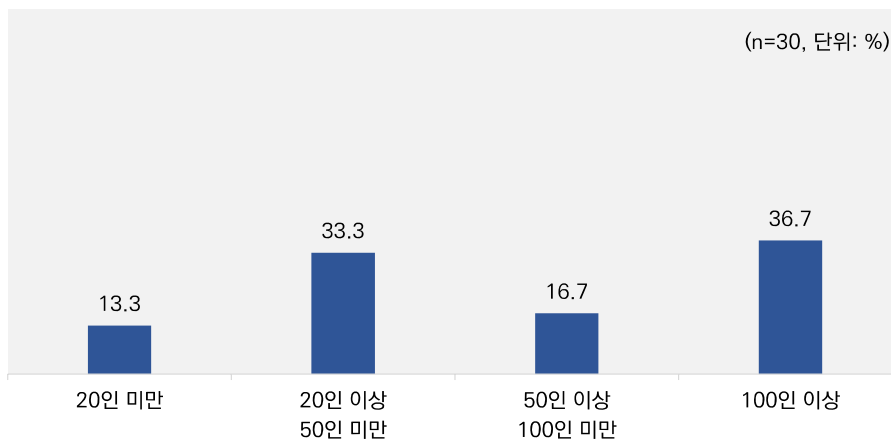
### (1) 일반 현황

- 설문에 응답한 국내유턴기업 30개 중 '중소기업'이 83.3%, '중견기업'이 16.7%였다
- 기업의 업태는 '제조업'이 96.7%, '도매 및 소매업'이 3.3%였다
- 기업의 소재지는 '경남'이 16.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경북', '충남', '부산'이 13.3%로 많았다

### (2) 2020년 상시근로자 수

- 2020년 기준 국내유턴기업들의 상시근로자수 규모를 살펴보면, '100인 이상'이 36.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인 이상 50인 미만'(33.3%), '50인 이상 100인 미만'(16.7%), '20인 미만'(13.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111.1명이었다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가 40.0%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은 모두 '100인 이상'이었다. '중소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66.4명, '중견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334.8명이었다
- 복귀 유형별로는,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의 경우 '100인 이상'기업이 45.5%로 가장 많았고,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의 경우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50.0%로 가장 많았다. '완전복귀만 한' 기업의 경우 '20인 미만',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각 33.3%로 많았다

[그림 1] 2020년 상시근로자 수



〈표 2〉 2020년 상시근로자 수

(단위: 명, %)

		사례 수	20인 미만	2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평균
전체		(30)	13.3	33.3	16.7	36.7	111.1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16.0	40.0	20.0	24.0	66.4
	중견기업	(5)	0.0	0.0	0.0	100.0	334.8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9.1	18.2	27.3	45.5	118.3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0.0	50.0	10.0	40.0	129.3
	완전복귀만 함	(9)	33.3	33.3	11.1	22.2	82.2

##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 (1) 국내복귀 유형

- 국내유턴기업들의 국내복귀 유형을 살펴보면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33.3%), ‘완전복귀만 함’(30.0%)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가 40.0%로 가장 많은 반면, ‘중견기업’에서는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가 60.0%로 가장 많았다.

〈표 3〉 국내복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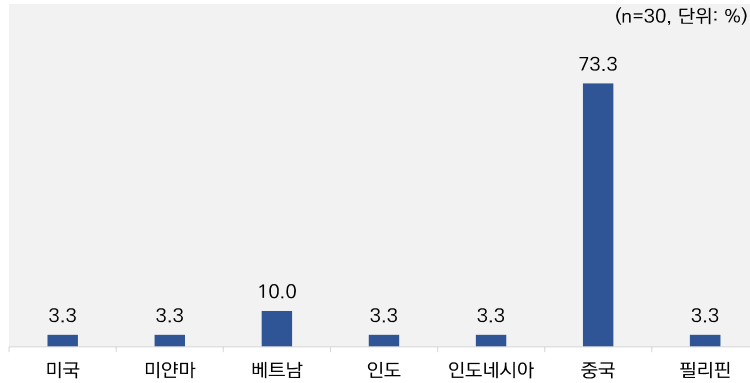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완전복귀만 함
전체		(30)	36.7	33.3	30.0
기업규모	중소기업	(25)	40.0	28.0	32.0
	중견기업	(5)	20.0	60.0	20.0

### (2)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소재지

- 국내유턴기업들의 국내복귀전 해외사업장 소재지는 중국이 7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베트남’(10.0%)이었다

[그림 2]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소재지



<표 4>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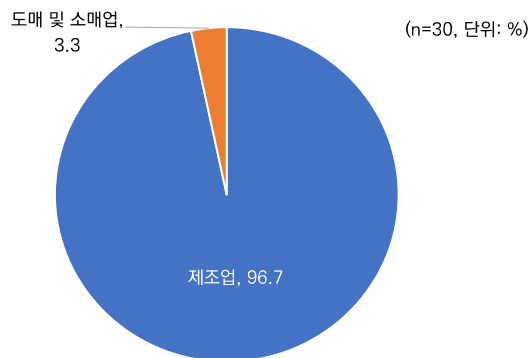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미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전체		(30)	3.3	3.3	10.0	3.3	3.3	73.3	3.3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0.0	4.0	12.0	4.0	4.0	76.0	0.0
	중견기업	(5)	20.0	0.0	0.0	0.0	0.0	60.0	2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0.0	0.0	18.2	0.0	0.0	72.7	9.1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10.0	0.0	0.0	0.0	10.0	80.0	0.0
	완전복귀만 함	(9)	0.0	11.1	11.1	11.1	0.0	66.7	0.0

### (3)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업태

-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의 업태는 '제조업'이 96.7%였고, '도매 및 소매업'이 3.3%였다

[그림 3]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 업태



#### (4) 국내복귀 전 상시근로자 수

- 국내유턴기업들의 국내복귀 전 상시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40.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인 미만'(33.3%), '100인 이상'(23.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99.2명이었다

〈표 5〉 국내복귀 전 상시근로자 수

(단위: 명, %)

		사례 수	20인 미만	2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평균
전체		(30)	33.3	40.0	3.3	23.3	99.2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40.0	40.0	4.0	16.0	76.8
	중견기업	(5)	0.0	40.0	0.0	60.0	211.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27.3	27.3	9.1	36.4	151.5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30.0	40.0	0.0	30.0	113.9
	완전복귀만 함	(9)	44.4	55.6	0.0	0.0	18.8

#### (5) 해외사업장 운영기간

- 국내유턴기업들의 해외사업장 운영기간은 평균 150.9개월이었다
- 복귀 유형이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인 경우 해외사업장 운영기간이 평균 127.9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고,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기업에서 169.6개월로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다.

〈표 6〉 해외사업장 운영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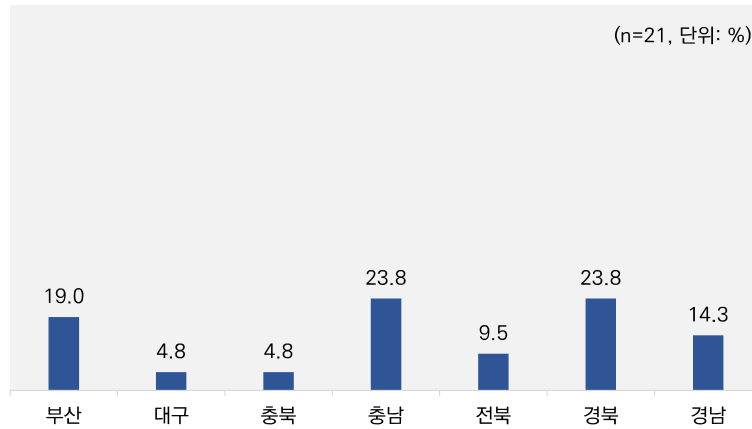
(단위: 명, 개월)

		사례 수	평균
전체		(30)	150.9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152.6
	중견기업	(5)	142.4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127.9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169.6
	완전복귀만 함	(9)	158.1

(6)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소재지

- 국내유턴기업의 국내복귀 후 사업장 소재지로는 ‘충남’, ‘경북’이 23.8%로 가장 많았다. 복귀 후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에 해당하는 업체는 없었다

[그림 4]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소재지



<표 7>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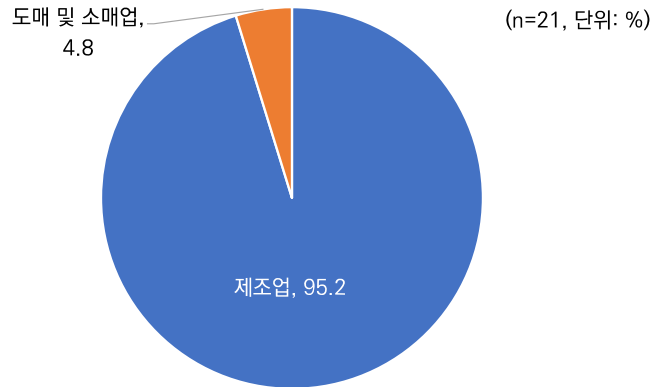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체		(21)	19.0	4.8	4.8	23.8	9.5	23.8	14.3
기업 규모	중소기업	(17)	23.5	5.9	5.9	23.5	11.8	17.6	11.8
	중견기업	(4)	0.0	0.0	0.0	25.0	0.0	50.0	25.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36.4	0.0	0.0	27.3	0.0	36.4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0.0	10.0	10.0	20.0	20.0	10.0	30.0
	완전복귀만 함	(0)	0.0	0.0	0.0	0.0	0.0	0.0	0.0

(7)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업태

- 유턴기업들의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의 업태는 ‘제조업’이 95.2%로 대부분이었고, ‘도매 및 소매업’이 4.8%였다

[그림 5]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업태



<표 8> 국내로의 복귀 후 사업장 업태

(단위: 명, %)

		사례 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전체		(21)	95.2	4.8
기업 규모	중소기업	(17)	94.1	5.9
	중견기업	(4)	10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100.0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90.0	10.0
	완전복귀만 함	(0)	0.0	0.0

### (8) 국내로의 복귀 후 상시근로자 수

- 유턴기업들의 국내로의 복귀 후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160.4명이었다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평균 90.9명, ‘중견기업’은 평균 455.8명이었다

<표 9> 국내로의 복귀 후 상시근로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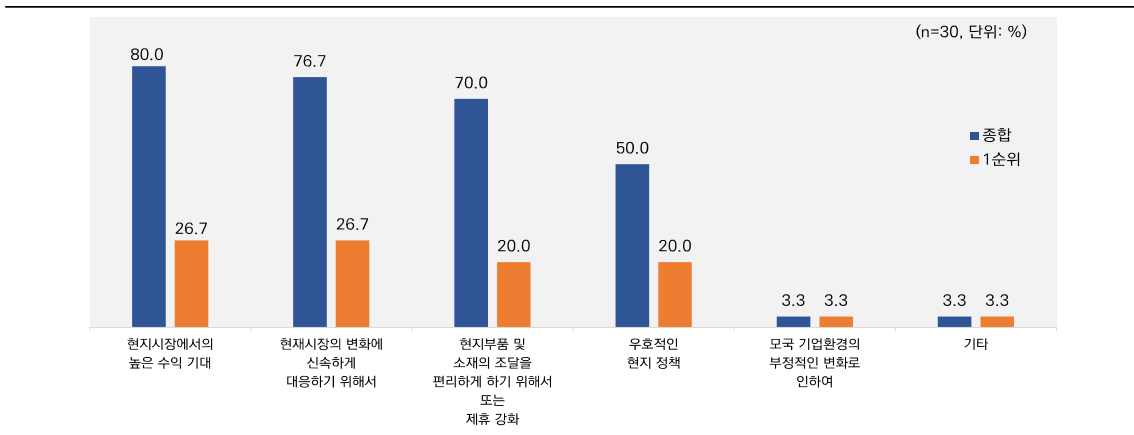
		사례 수	평균
전체		(21)	160.4
기업 규모	중소기업	(17)	90.9
	중견기업	(4)	455.8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158.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163.0
	완전복귀만 함	(0)	-

### 3)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및 복귀 요인

#### (1) 해외진출 결정 요인

- 국내유턴기업들이 해외진출 당시 해외진출을 결정했던 이유를 1, 2, 3순위로 물어보고 그 결과를 종합했을 때,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80.0%로 가장 많았고,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가 76.7%,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후를 강화하기 위하여'가 70.0%로 나타났다
- 해외진출 결정 이유 1순위 응답으로는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와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다

[그림 6] 해외진출 결정 요인



<표 10> 해외진출 결정 요인 - 종합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30)	80.0	76.7	70.0	50.0	3.3	3.3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80.0	84.0	64.0	48.0	4.0	4.0
	중견기업	(5)	80.0	40.0	100.0	6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81.8	72.7	54.5	63.6	9.1	9.1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80.0	80.0	70.0	50.0	0.0	0.0
	완전복귀만 함	(9)	77.8	77.8	88.9	33.3	0.0	0.0

- ①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 ②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③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후를 강화하기 위하여
- ④ 우호적인 현지 정책(세금, 보조금, 비자혜택 등)이 있어서
- ⑤ 모국기업 환경의 부정적인 변화(경쟁 심화 등)로 인하여
- ⑥ 기타

〈표 11〉 해외진출 결정 요인 - 1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30)	26.7	26.7	20.0	20.0	3.3	3.3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24.0	24.0	20.0	24.0	4.0	4.0
	중견기업	(5)	40.0	40.0	20.0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27.3	18.2	9.1	27.3	9.1	9.1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30.0	40.0	10.0	20.0	0.0	0.0
	완전복귀만 함	(9)	22.2	22.2	44.4	11.1	0.0	0.0

〈표 12〉 해외진출 결정 요인 - 2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30)	23.3	36.7	33.3	6.7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24.0	44.0	28.0	4.0	0.0	0.0
	중견기업	(5)	20.0	0.0	60.0	2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18.2	45.5	18.2	18.2	0.0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20.0	30.0	50.0	0.0	0.0	0.0
	완전복귀만 함	(9)	33.3	33.3	33.3	0.0	0.0	0.0

〈표 13〉 해외진출 결정 요인 - 3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25)	36.0	16.0	20.0	28.0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21)	38.1	19.0	19.0	23.8	0.0	0.0
	중견기업	(4)	25.0	0.0	25.0	5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0)	40.0	10.0	30.0	20.0	0.0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8)	37.5	12.5	12.5	37.5	0.0	0.0
	완전복귀만 함	(7)	28.6	28.6	14.3	28.6	0.0	0.0

## (2)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를 복귀연도 매출 대비 비율로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요인인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복귀연도 매출액 대비 평균 152.1%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선택한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복귀연도 매출액 대비 평균 144.8%로 나타났다

〈표 14〉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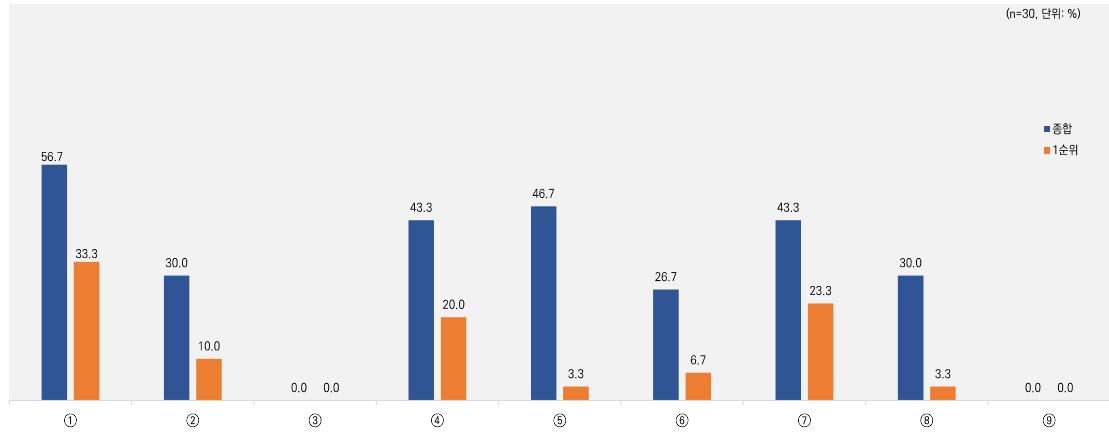
		사례 수	평균
해외진출 결정이유	①	(24)	152.1
	②	(23)	144.8
	③	(21)	134.3
	④	(15)	136.7
	⑤	(1)	200.0
	⑥	(1)	200.0

- ①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②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③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후를 강화하기 위하여  
 ④ 우호적인 현지 정책(세금, 보조금, 비자혜택 등)이 있어서  
 ⑤ 모국기업 환경의 부정적인 변화(경쟁 심화 등)로 인하여  
 ⑥ 기타

## (3) 국내복귀 결정 이유

- 유턴기업들이 국내복귀를 결정한 이유를 1, 2, 3순위로 묻고 그 응답을 종합했을 때,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의 이유)'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46.7%),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43.3%),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4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국내복귀 결정 이유 - 종합



- ①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의 이유)
- ②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환경비용 증가, 환율변동 등의 이유)
- ③ 기술 탈취의 우려가 있어서
- ④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 (사유재산 몰수의 위험, 총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 비자 발급 등의 이유)
- ⑤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
- ⑥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보조금 지원, FTA체결, 산업용지 확보 등)
- ⑦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자금조달의 편리성, 연구개발 가능 등)
- ⑧ 수요 등 국내 내수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⑨ 기타

<표 15> 국내복귀 결정 이유 - 종합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0)	56.7	30.0	0.0	43.3	46.7	26.7	43.3	3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60.0	24.0	0.0	40.0	44.0	28.0	48.0	28.0	0.0
	중견기업	(5)	40.0	60.0	0.0	60.0	60.0	20.0	20.0	4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63.6	9.1	0.0	45.5	63.6	27.3	45.5	27.3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30.0	50.0	0.0	40.0	30.0	40.0	50.0	40.0	0.0
	완전복귀만 함	(9)	77.8	33.3	0.0	44.4	44.4	11.1	33.3	22.2	0.0

- ①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의 이유)
- ②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환경비용 증가, 환율변동 등의 이유)
- ③ 기술 탈취의 우려가 있어서
- ④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 (사유재산 몰수의 위험, 총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 비자 발급 등의 이유)
- ⑤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
- ⑥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보조금 지원, FTA체결, 산업용지 확보 등)
- ⑦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자금조달의 편리성, 연구개발 가능 등)
- ⑧ 수요 등 국내 내수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⑨ 기타

〈표 16〉 국내복귀 결정 이유 - 1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0)	33.3	10.0	0.0	20.0	3.3	6.7	23.3	3.3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36.0	4.0	0.0	20.0	4.0	8.0	24.0	4.0	0.0
	중견기업	(5)	20.0	40.0	0.0	20.0	0.0	0.0	2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45.5	0.0	0.0	18.2	0.0	9.1	18.2	9.1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20.0	20.0	0.0	20.0	0.0	0.0	40.0	0.0	0.0
	완전복귀만 함	(9)	33.3	11.1	0.0	22.2	11.1	11.1	11.1	0.0	0.0

〈표 17〉 국내복귀 결정 이유 - 2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0)	16.7	10.0	0.0	23.3	13.3	6.7	13.3	16.7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20.0	8.0	0.0	20.0	8.0	8.0	16.0	20.0	0.0
	중견기업	(5)	0.0	20.0	0.0	40.0	40.0	0.0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18.2	9.1	0.0	27.3	9.1	9.1	18.2	9.1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10.0	10.0	0.0	20.0	30.0	10.0	0.0	20.0	0.0
	완전복귀만 함	(9)	22.2	11.1	0.0	22.2	0.0	0.0	22.2	22.2	0.0

〈표 18〉 국내복귀 결정 이유 - 3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23)	8.7	13.0	0.0	0.0	39.1	17.4	8.7	13.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18)	5.6	16.7	0.0	0.0	44.4	16.7	11.1	5.6	0.0
	중견기업	(5)	20.0	0.0	0.0	0.0	20.0	20.0	0.0	4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9)	0.0	0.0	0.0	0.0	66.7	11.1	11.1	11.1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8)	0.0	25.0	0.0	0.0	0.0	37.5	12.5	25.0	0.0
	완전복귀만 함	(6)	33.3	16.7	0.0	0.0	50.0	0.0	0.0	0.0	0.0

#### (4) 국내복귀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국내복귀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를 복귀연도 매출 대비 비율로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요인인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복귀연도 매출액 대비 평균 115.9%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선택한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복귀연도 매출액 대비 평균 117.1%로 나타났다.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복귀연도 매출액 대비 120.8%로 나타났다

〈표 19〉 국내복귀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단위: 명, %)

	사례 수	평균	
국내복귀 결정이유	①	(17)	115.9
	②	(9)	114.4
	③	(0)	-
	④	(13)	120.8
	⑤	(14)	117.1
	⑥	(8)	107.5
	⑦	(13)	115.4
	⑧	(9)	115.6
	⑨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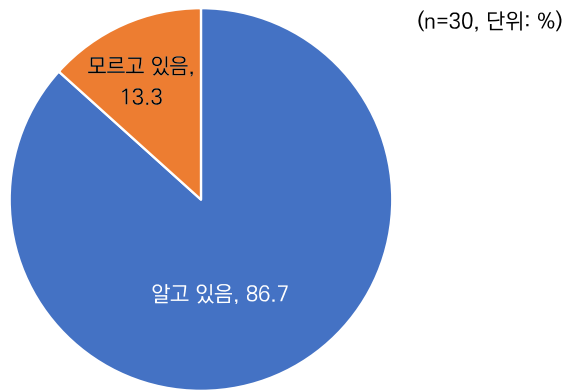
- ①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의 이유)
- ②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환경비용 증가, 환율변동 등의 이유)
- ③ 기술 탈취의 우려가 있어서
- ④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 (사유재산 몰수의 위험, 총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 비자 발급 등의 이유)
- ⑤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
- ⑥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보조금 지원, FTA체결, 산업용지 확보 등)
- ⑦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자금조달의 편리성, 연구개발 가능 등)
- ⑧ 수요 등 국내 내수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⑨ 기타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액감면제도

##### (1)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 국내복귀를 고려할 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86.7%,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13.3%였다
- 국내복귀 유형별로는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기업에서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100.0%로 가장 많았다. ‘완전복귀만 한’ 기업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2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8]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표 20>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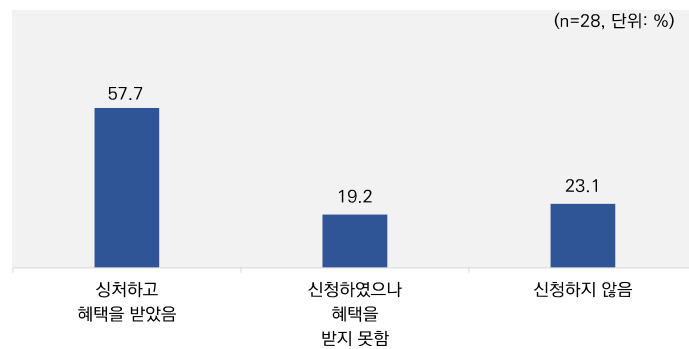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30)	86.7	13.3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88.0	12.0
	중견기업	(5)	80.0	2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100.0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80.0	20.0
	완전복귀만 함	(9)	77.8	22.2

## (2) 국내복귀 세액감면 신청 여부

-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제도를 신청하였는지 물었을 때에는,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음'이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신청하지 않았음'(23.1%),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함'(19.2%)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은 모두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음'이라고 응답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음'이라는 응답이 50.0%였고,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함'이 22.7%, '신청하지 않음'이 27.3%로 나타났다
- 국내복귀 유형별로는 '완전복귀만 한' 기업에서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음'이라는 응답이 42.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9] 국내복귀 세액감면 신청 여부



<표 21> 국내복귀 세액감면 신청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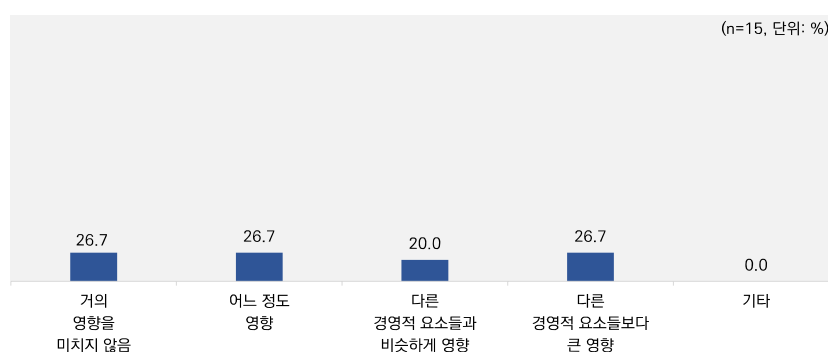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신청하고 혜택을 받았음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함	신청하지 않음
전체		(26)	57.7	19.2	23.1
기업 규모	중소기업	(22)	50.0	22.7	27.3
	중견기업	(4)	10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63.6	18.2	18.2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8)	62.5	12.5	25.0
	완전복귀만 함	(7)	42.9	28.6	28.6

### (3)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경영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각각 26.7%로 나타났고,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한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그림 10]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표 22> 세액감면제도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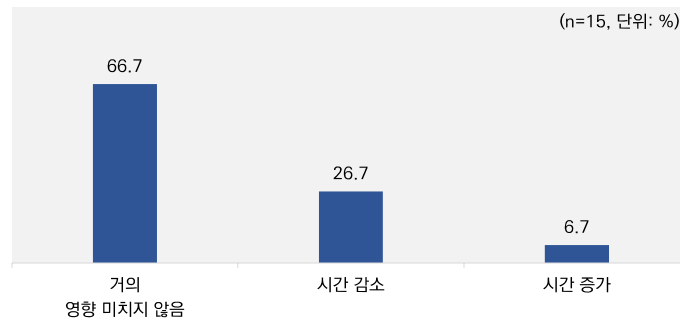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하게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	기타
전체		(15)	26.7	26.7	20.0	26.7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11)	27.3	18.2	27.3	27.3	0.0
	중견기업	(4)	25.0	50.0	0.0	25.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28.6	42.9	14.3	14.3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5)	0.0	20.0	20.0	60.0	0.0
	완전복귀만 함	(3)	66.7	0.0	33.3	0.0	0.0

#### (4)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에 미친 영향

- 세액감면제도가 해외사업장의 복귀 결정 이후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다.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을 감소시켰다’는 응답이 26.7%,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을 증가시켰다’는 응답은 6.7%였다. 감소기간 평균은 0.9년, 증가기간 평균은 1.0년이였다

[그림 11]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에 미친 영향



<표 23>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사례 수	거의 영향 미치지 않음	감소	증가	감소기간		증가기간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전체	(15)	66.7	26.7	6.7	(4)	0.9	(1)	1.0	
기업 규모	중소기업	(11)	63.6	27.3	9.1	(3)	1.0	(1)	1.0
	중견기업	(4)	75.0	25.0	0.0	(1)	0.5	(0)	-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71.4	28.6	0.0	(2)	1.3	(0)	-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5)	40.0	40.0	20.0	(2)	0.5	(1)	1.0
	완전복귀만 함	(3)	100.0	0.0	0.0	(0)	-	(0)	-

(5)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세액감면제도가 근로자 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을 때, '증가'라는 응답이 66.7%로 '감소'(13.3%)보다 많았다. '변화 없음'은 20.0%였다
-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증가'가 40.0%(증가 33.3%, 크게 증가 6.7%), '감소'라는 응답은 없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에서 '증가'라는 응답이 75.0%(증가 50%, '크게 증가' 25.0%)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 R&D투자에 대해서는 '증가'가 13.3%, '감소'가 6.7%였다.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은 80.0%였다

〈표 24〉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사례 수	크게 감소	감소	변화없음	증가	크게 증가	평균
근로자 수	(15)	0.0	13.3	20.0	66.7	0.0	3.5
설비투자	(15)	0.0	0.0	60.0	33.3	6.7	3.5
R&D투자	(15)	0.0	6.7	80.0	13.3	0.0	3.1

(6)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상시근로자 수 평균은 22.6명으로, 이 중 세액감면이 차지하는 영향은 평균 17.0%였다
-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설비투자 평균은 2,427,933,333원으로, 이 중 세액감면이 차지하는 영향은 평균 16.5%였다
-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R&D투자 평균은 380,000,000원으로, 이 중 세액감면이 차지하는 영향은 평균 5.9%였다

〈표 25〉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상시근로자 수

(단위: 명, %)

		세액감면 혜택 동안 평균		조특법이 차지하는 영향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전체		(15)	22.6	(15)	17.0
기업 규모	중소기업	(11)	6.7	(11)	15.0
	중견기업	(4)	66.3	(4)	22.5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34.4	(7)	15.7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5)	15.6	(5)	24.0
	완전복귀만 함	(3)	6.7	(3)	8.3

〈표 26〉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설비투자

(단위: 명, 원, %)

		세액감면 혜택 동안 평균		조특법이 차지하는 영향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전체		(15)	2,427,933,333	(15)	16.5
기업 규모	중소기업	(11)	1,492,636,364	(11)	9.3
	중견기업	(4)	5,000,000,000	(4)	36.3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1,644,857,143	(7)	15.7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5)	4,540,000,000	(5)	21.0
	완전복귀만 함	(3)	735,000,000	(3)	10.7

〈표 27〉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의 경영 결정에 미친 영향 - R&D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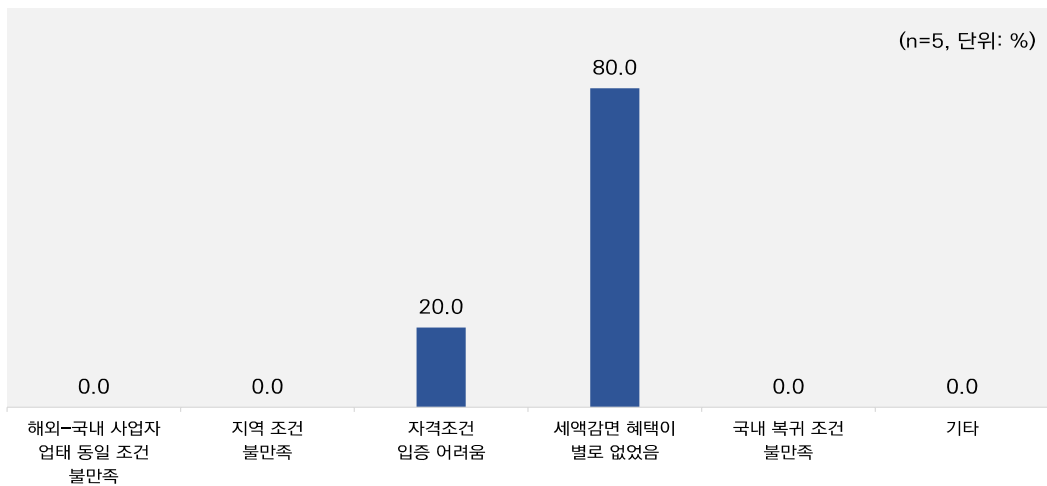
(단위: 명, 원, %)

		세액감면 혜택 동안 평균		조특법이 차지하는 영향	
		사례 수	평균	사례 수	평균
전체		(15)	380,000,000	(15)	5.9
기업 규모	중소기업	(11)	63,636,364	(11)	2.3
	중견기업	(4)	1,250,000,000	(4)	15.8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585,714,286	(7)	9.3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5)	120,000,000	(5)	4.0
	완전복귀만 함	(3)	333,333,333	(3)	1.0

(7)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자격은 되었으나 내야 하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가 크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별로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80.0%로 가장 많았다.

[그림 12]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표 28〉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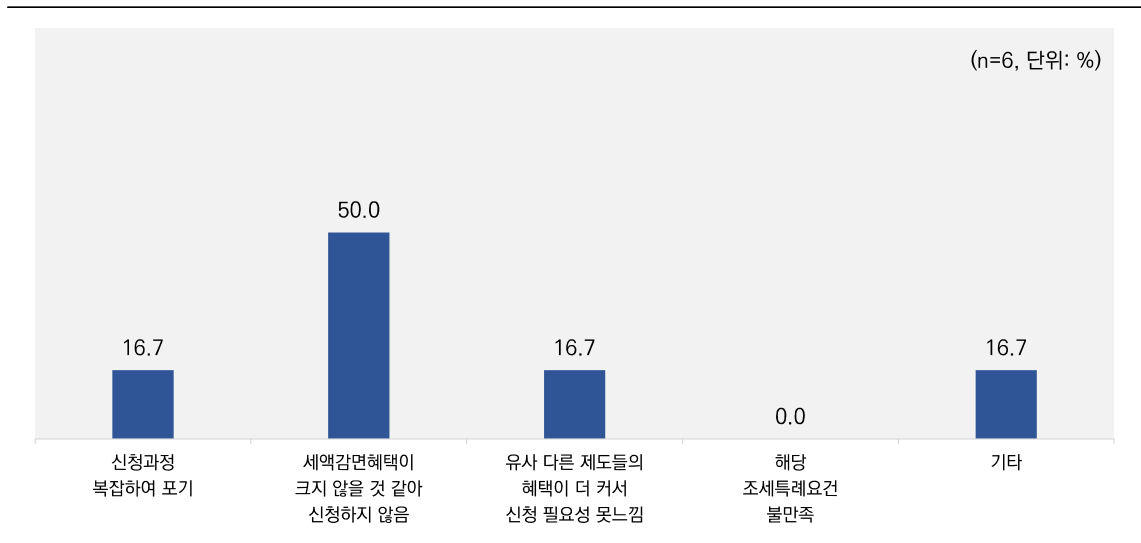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5)	0.0	0.0	20.0	80.0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5)	0.0	0.0	20.0	80.0	0.0	0.0
	중견기업	(0)	0.0	0.0	0.0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2)	0.0	0.0	0.0	100.0	0.0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	0.0	0.0	100.0	0.0	0.0	0.0
	완전복귀만 함	(2)	0.0	0.0	0.0	100.0	0.0	0.0

- 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 사업장의 업태 동일 조건 불만족
- ② 지역 조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불만족
- ③ 자격 조건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
- ④ 자격은 되었으나 내야 하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가 크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별로 없었음  
(법인세액 혹은 소득세액이 0원에 가까웠음)
- ⑤ 국내복귀조건 불만족
- ⑥ 기타

(8)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제도는 알았으나 세액감면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그림 13]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표 29〉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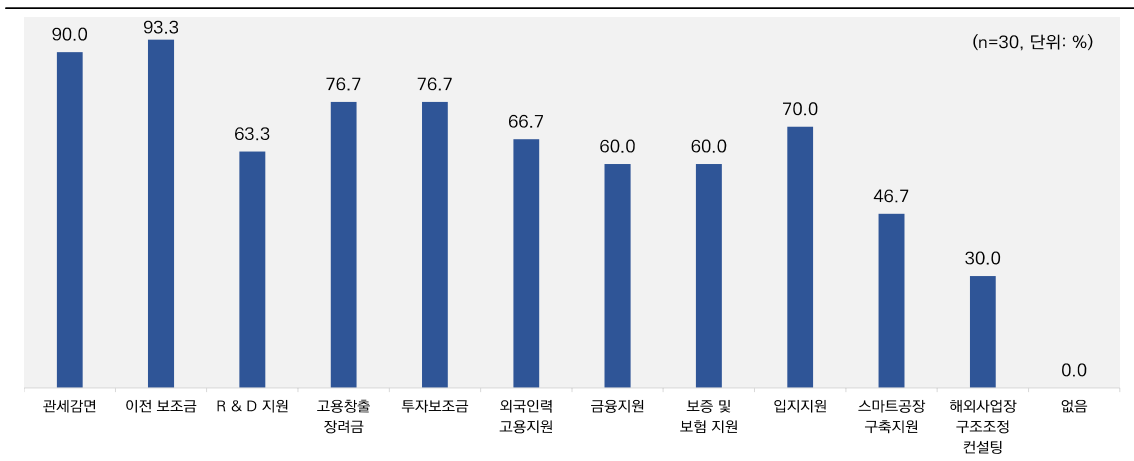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6)	16.7	50.0	16.7	0.0	16.7
기업 규모	중소기업	(6)	16.7	50.0	16.7	0.0	16.7
	중견기업	(0)	0.0	0.0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2)	0.0	100.0	0.0	0.0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2)	50.0	0.0	0.0	0.0	50.0
	완전복귀만 함	(2)	0.0	50.0	50.0	0.0	0.0

- ① 제도는 알았으나 신청과정이 복잡해서 포기함  
 ② 제도는 알았으나 세액감면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국내복귀 후 매출이 크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신청하지 않음  
 ③ 유사 다른 제도들의 혜택(관세감면, R&D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투자보조금 등)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④ 해당 조세특례요건을 불만족해서  
 ⑤ 기타

(9) 알고 있는 지원제도

-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들 중 알고 있는 지원제도로는 '이전 보조금'이라는 응답이 9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관세감면'(90.0%)이 많았다

[그림 14] 알고 있는 지원제도



〈표 30〉 알고 있는 지원제도 - 1

(단위: 명, %)

		사례 수	관세 감면	이전 보조금	R&D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투자 보조금	외국인력 고용지원
전체		(30)	90.0	93.3	63.3	76.7	76.7	66.7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88.0	96.0	64.0	76.0	80.0	68.0
	중견기업	(5)	100.0	80.0	60.0	80.0	60.0	6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90.9	100.0	72.7	90.9	90.9	63.6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90.0	80.0	60.0	80.0	70.0	70.0
	완전복귀만 함	(9)	88.9	100.0	55.6	55.6	66.7	66.7

〈표 31〉 알고 있는 지원제도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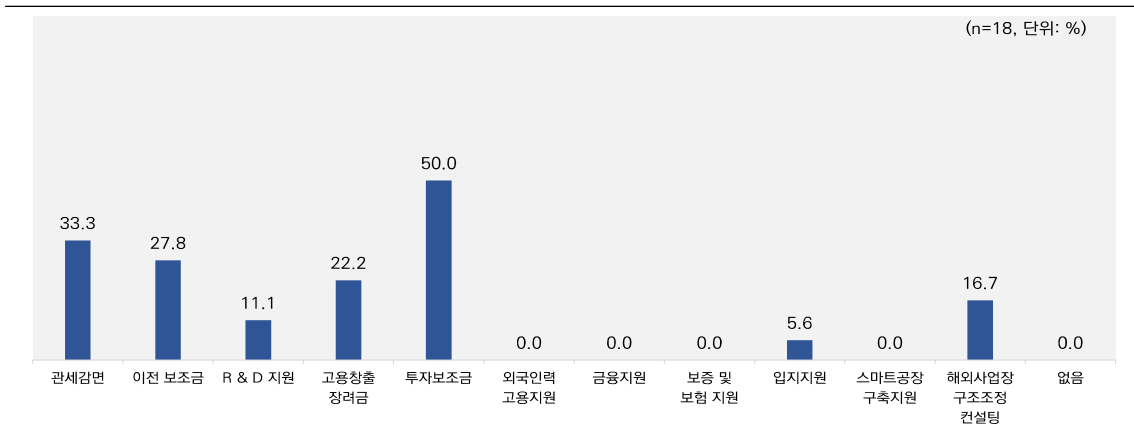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금융지원	보증 및 보험지원	입지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전체		(30)	60.0	60.0	70.0	46.7	3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64.0	64.0	68.0	48.0	24.0
	중견기업	(5)	40.0	40.0	80.0	40.0	6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72.7	72.7	72.7	72.7	36.4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60.0	50.0	80.0	30.0	30.0
	완전복귀만 함	(9)	44.4	55.6	55.6	33.3	22.2

(10) 수혜받은 지원제도

- 실제로 수혜를 받았던 지원제도로는 '투자보조금'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세감면'(33.3%), '이전보조금'(2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수혜받은 지원제도



〈표 32〉 수혜받은 지원제도 - 1

(단위: 명, %)

		사례 수	관세 감면	이전 보조금	R&D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투자 보조금	외국인력 고용지원
전체		(18)	33.3	27.8	11.1	22.2	5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14)	35.7	35.7	7.1	21.4	42.9	0.0
	중견기업	(4)	25.0	0.0	25.0	25.0	75.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42.9	14.3	0.0	14.3	42.9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6)	33.3	16.7	16.7	50.0	66.7	0.0
	완전복귀만 함	(5)	20.0	60.0	20.0	0.0	40.0	0.0

〈표 33〉 수혜받은 지원제도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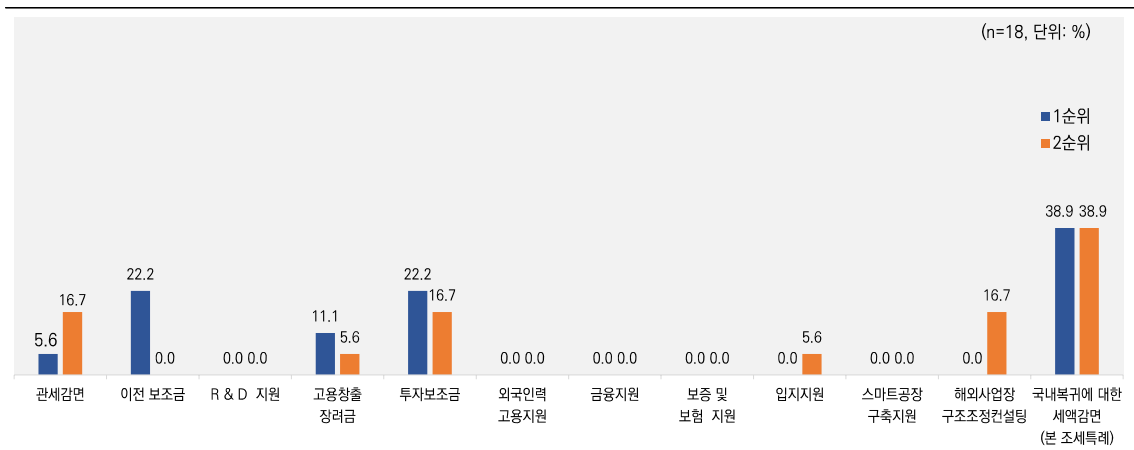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금융 지원	보증 및 보험지원	입지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전체		(18)	0.0	0.0	5.6	0.0	16.7
기업 규모	중소기업	(14)	0.0	0.0	0.0	0.0	14.3
	중견기업	(4)	0.0	0.0	25.0	0.0	25.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0.0	0.0	0.0	0.0	14.3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6)	0.0	0.0	16.7	0.0	16.7
	완전복귀만 함	(5)	0.0	0.0	0.0	0.0	20.0

(11)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지원제도 중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었는지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1순위 응답으로는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본 조세특례)’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

[그림 16]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표 34〉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1순위 - 1

(단위: 명, %)

		사례 수	관세 감면	이전 보조금	R&D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투자 보조금	외국인력 고용지원
전체		(18)	5.6	22.2	0.0	11.1	22.2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14)	7.1	28.6	0.0	14.3	14.3	0.0
	중견기업	(4)	0.0	0.0	0.0	0.0	5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14.3	14.3	0.0	0.0	14.3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6)	0.0	0.0	0.0	33.3	50.0	0.0
	완전복귀만 함	(5)	0.0	60.0	0.0	0.0	0.0	0.0

〈표 35〉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1순위 - 2

(단위: 명, %)

		사례 수	금융 지원	보증 및 보험지원	입지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전체		(18)	0.0	0.0	0.0	0.0	0.0	38.9
기업 규모	중소기업	(14)	0.0	0.0	0.0	0.0	0.0	35.7
	중견기업	(4)	0.0	0.0	0.0	0.0	0.0	5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0.0	0.0	0.0	0.0	0.0	57.1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6)	0.0	0.0	0.0	0.0	0.0	16.7
	완전복귀만 함	(5)	0.0	0.0	0.0	0.0	0.0	40.0

〈표 36〉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2순위 - 1

(단위: 명, %)

		사례 수	관세 감면	이전 보조금	R&D 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투자 보조금	외국인력 고용지원
전체		(18)	16.7	0.0	0.0	5.6	16.7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14)	21.4	0.0	0.0	7.1	14.3	0.0
	중견기업	(4)	0.0	0.0	0.0	0.0	25.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28.6	0.0	0.0	0.0	28.6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6)	0.0	0.0	0.0	16.7	0.0	0.0
	완전복귀만 함	(5)	20.0	0.0	0.0	0.0	20.0	0.0

〈표 37〉 가장 도움이 된 지원제도 - 2순위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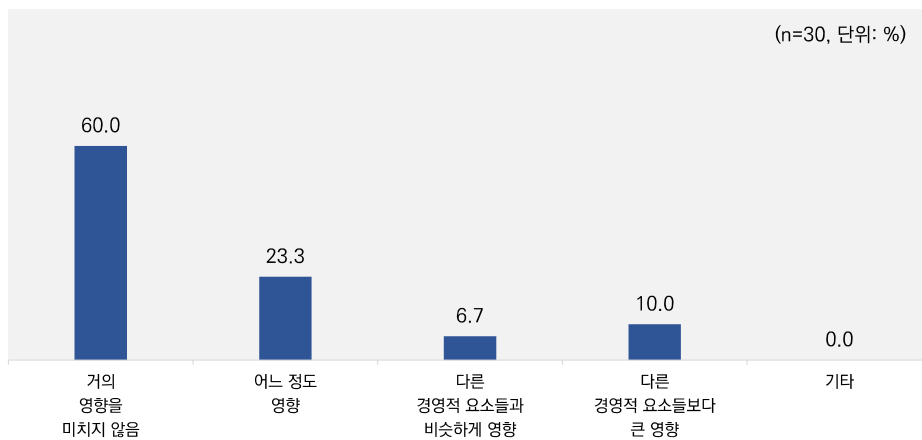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금융 지원	보증 및 보험지원	입지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전체		(18)	0.0	0.0	5.6	0.0	16.7	38.9
기업 규모	중소기업	(14)	0.0	0.0	0.0	0.0	14.3	42.9
	중견기업	(4)	0.0	0.0	25.0	0.0	25.0	25.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7)	0.0	0.0	0.0	0.0	14.3	28.6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6)	0.0	0.0	16.7	0.0	16.7	50.0
	완전복귀만 함	(5)	0.0	0.0	0.0	0.0	20.0	40.0

(12) 세액감면 혜택 외 제도들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 세액감면 혜택을 제외한 제도들이 기업의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았을 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다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68.0%로 많았고, '중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경영적 요소들(경제, 산업, 시장 등)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40.0%로 많았다
- 국내복귀 유형별로는 '완전복귀만 한' 기업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88.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17] 세액감면 혜택 외 제도들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표 38〉 세액감면 혜택 외 제도들의 국내복귀 결정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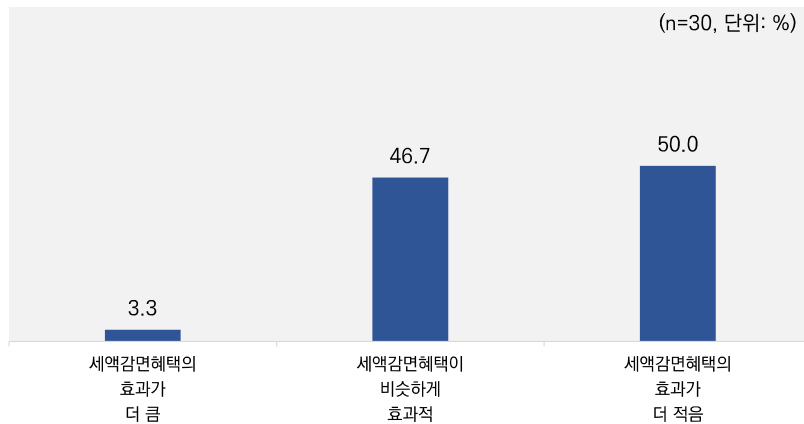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거의 영향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하게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	기타
전체		(30)	60.0	23.3	6.7	1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68.0	20.0	4.0	8.0	0.0
	중견기업	(5)	20.0	40.0	20.0	20.0	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45.5	27.3	9.1	18.2	0.0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50.0	30.0	10.0	10.0	0.0
	완전복귀만 함	(9)	88.9	11.1	0.0	0.0	0.0

(13) 세액감면제도와 그 외 제도의 효과 비교

- 세액감면제도가 그 외의 정부 지원들에 비해,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물었을 때에는, '세액감면 혜택의 효과가 더 적었다'라는 응답이 50.0%, 세액감면 혜택이 비슷하게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46.7%였다. '세액감면 혜택의 효과가 더 컸다'는 응답은 3.3%였다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세액감면 혜택의 효과가 더 적었다'는 응답이 56.0%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에서는 '세액감면 혜택이 비슷하게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80.0%로 가장 많았다
- 국내복귀 유형별로는 '완전복귀만 함' 기업에서 '세액감면 혜택의 효과가 더 적었다'는 응답이 66.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18] 세액감면제도와 그 외 제도의 효과 비교



〈표 39〉 세액감면제도와 그 외 제도의 효과 비교

(단위: 명, %)

		사례 수	세액감면혜택의 효과가 더 컸다	세액감면혜택이 비슷하게 효과적	세액감면혜택의 효과가 더 적었다
전체		(30)	3.3	46.7	5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25)	4.0	40.0	56.0
	중견기업	(5)	0.0	80.0	20.0
국내 복귀 유형	완전복귀 및 국내확대	(11)	0.0	63.6	36.4
	부분복귀 및 국내확대	(10)	10.0	40.0	50.0
	완전복귀만 함	(9)	0.0	33.3	66.7

## 2. 해외진출기업

### 1)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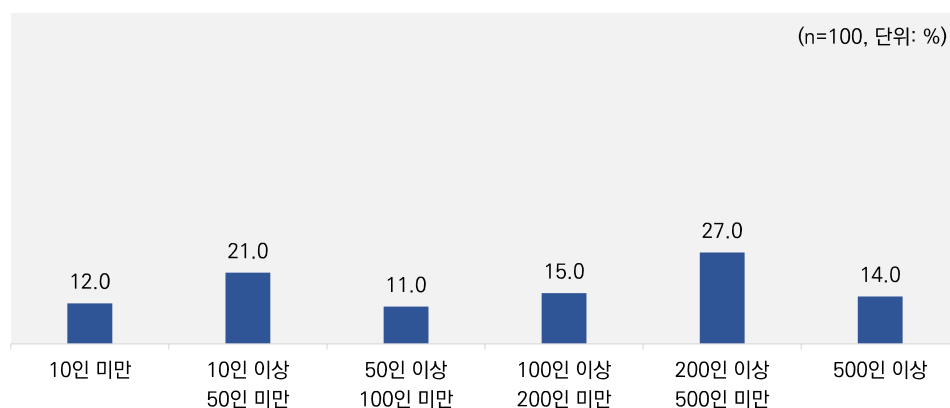
#### (1) 일반현황

- 설문에 응답한 해외진출기업 100개 중 '중소기업'이 58.0%, '중견기업'이 31.0%, '대기업'이 11.0%였다
- 기업의 국내사업장의 업태는 '제조업'이 65.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설업'(9.0%), '도매 및 소매업'(8.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운수 및 창고업'(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2020년 상시근로자 수

- 해외진출기업들의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살펴보면, '200인 이상 500인 미만'이 27.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0인 이상 50인 미만'(21.0%), '100인 이상 200인 미만'(15.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302.0명이었다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은 '200인 이상 500인 미만'이, '대기업'은 '500인 이상'이 가장 많았다

[그림 19] 2020년 상시근로자 수



〈표 40〉 2020년 상시근로자 수

(단위: 명, %)

	사례 수	상시근로자 수 범위 (%)						평균	
		10인 미만	1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0인 이상 500인 미만	500인 이상		
전체	(100)	12.0	21.0	11.0	15.0	27.0	14.0	302.0	
기업 규모	제조업	(52)	9.6	21.2	7.7	13.5	28.8	19.2	341.0
	도매 및 소매업	(25)	16.0	24.0	20.0	16.0	24.0	0.0	131.9
	건설업	(9)	0.0	0.0	0.0	33.3	44.4	22.2	74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16.7	0.0	33.3	16.7	16.7	16.7	184.8
	운수 및 창고업	(5)	40.0	40.0	0.0	0.0	20.0	0.0	81.4
	기타	(3)	0.0	66.7	0.0	0.0	0.0	33.3	324.7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65)	6.2	18.5	12.3	16.9	30.8	15.4	316.8
	도매 및 소매업	(9)	0.0	0.0	0.0	33.3	44.4	22.2	742.6
	건설업	(8)	37.5	62.5	0.0	0.0	0.0	0.0	1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14.3	0.0	42.9	14.3	14.3	14.3	168.4
	운수 및 창고업	(5)	40.0	40.0	0.0	0.0	20.0	0.0	81.4
	기타	(6)	33.3	33.3	0.0	0.0	16.7	16.7	201.3
기업 규모	중소기업	(58)	20.7	36.2	17.2	12.1	13.8	0.0	76.2
	중견기업	(31)	0.0	0.0	3.2	22.6	48.4	25.8	510.4
	대기업	(11)	0.0	0.0	0.0	9.1	36.4	54.5	905.5

## 2) 사업장 현황

### (1) 해외사업장

- 해외진출기업들의 해외사업장 소재지는 '미국'과 '베트남'이 16.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중국'이 15.0%, '폴란드'가 12.0%로 나타났다
- 해외사업장의 업태는 '제조업'이 5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25.0%로 많았다

### (2) 국내사업장

- 해외진출기업들은 한국에도 사업장이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속하는 경우는 49.0%, 속하지 않는 경우는 51.0%였다. '대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속하는 경우가 81.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중소기업' (51.7%), '중견기업'(3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국내사업장 수도권 과밀억제권 여부

(단위: 명, %)

		사례 수	해당	비해당
전체		(100)	49.0	51.0
기업 규모	제조업	(52)	34.6	65.4
	도매 및 소매업	(25)	48.0	52.0
	건설업	(9)	77.8	22.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83.3	16.7
	운수 및 창고업	(5)	80.0	20.0
	기타	(3)	100.0	.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65)	35.4	64.6
	도매 및 소매업	(9)	77.8	22.2
	건설업	(8)	62.5	37.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71.4	28.6
	운수 및 창고업	(5)	80.0	20.0
	기타	(6)	83.3	16.7
기업 규모	중소기업	(58)	51.7	48.3
	중견기업	(31)	32.3	67.7
	대기업	(11)	81.8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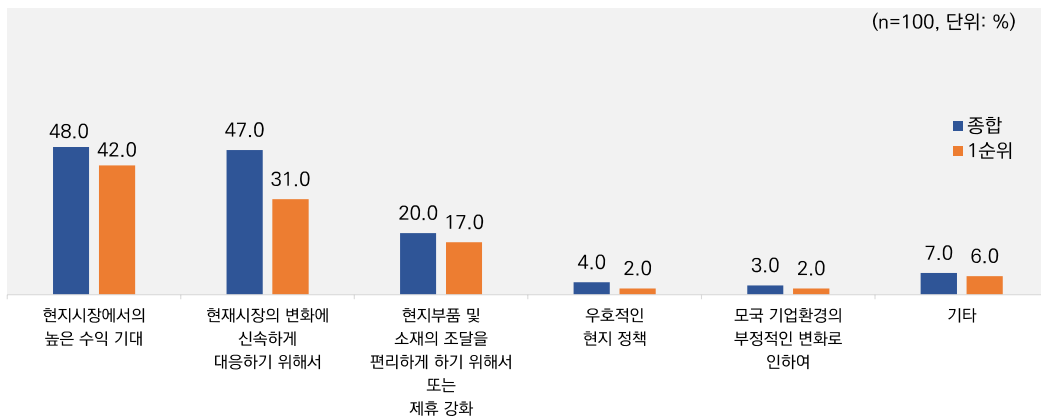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는 '서울'이 29.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경기'(22.0%), '경북'(9.0%), '경남'(8.0%), '부산'(7.0%) 순으로 나타났다

### 3)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및 복귀

#### (1) 해외진출 결정 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결정 이유를 1, 2, 3순위로 물어보고 종합했을 때,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47.0%),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하여'(20.0%) 순이었다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50.0%와 45.2%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에서는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81.8%로 가장 많았다

[그림 20] 해외진출 결정 이유



<표 42> 해외진출 결정 이유 - 종합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00)	48.0	47.0	20.0	4.0	3.0	7.0
기업 규모	제조업	(52)	36.5	50.0	30.8	5.8	1.9	1.9
	도매 및 소매업	(25)	44.0	56.0	4.0	4.0	0.0	4.0
	건설업	(9)	88.9	33.3	11.1	0.0	11.1	22.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83.3	16.7	0.0	0.0	16.7	33.3
	운수 및 창고업	(5)	60.0	40.0	20.0	0.0	0.0	0.0
	기타	(3)	66.7	33.3	33.3	0.0	0.0	33.3

〈표 42〉의 계속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65)	38.5	50.8	26.2	4.6	0.0	0.0
	도매 및 소매업	(9)	88.9	33.3	11.1	0.0	11.1	22.2
	건설업	(8)	50.0	50.0	0.0	0.0	12.5	1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85.7	28.6	0.0	14.3	14.3	28.6
	운수 및 창고업	(5)	60.0	40.0	20.0	0.0	0.0	0.0
	기타	(6)	33.3	50.0	16.7	0.0	0.0	33.3
기업 규모	중소기업	(58)	48.3	50.0	13.8	5.2	3.4	5.2
	중견기업	(31)	35.5	45.2	35.5	3.2	3.2	6.5
	대기업	(11)	81.8	36.4	9.1	0.0	0.0	18.2

- |  |
|--|
| ①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br>②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br>③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하여<br>④ 우호적인 현지 정책(세금, 보조금, 비자 혜택 등)이 있어서<br>⑤ 모국 기업환경의 부정적인 변화(경쟁 심화 등)로 인하여<br>⑥ 기타 |
|--|

〈표 43〉 해외진출 결정 이유 - 1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00)	42.0	31.0	17.0	2.0	2.0	6.0
기업 규모	제조업	(52)	30.8	34.6	26.9	3.8	1.9	1.9
	도매 및 소매업	(25)	44.0	48.0	4.0	0.0	0.0	4.0
	건설업	(9)	55.6	0.0	11.1	0.0	11.1	22.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83.3	0.0	0.0	0.0	0.0	16.7
	운수 및 창고업	(5)	60.0	20.0	20.0	0.0	0.0	0.0
	기타	(3)	66.7	0.0	0.0	0.0	0.0	33.3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65)	35.4	38.5	23.1	3.1	0.0	0.0
	도매 및 소매업	(9)	55.6	0.0	11.1	0.0	11.1	22.2
	건설업	(8)	37.5	37.5	0.0	0.0	12.5	1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85.7	0.0	0.0	0.0	0.0	14.3
	운수 및 창고업	(5)	60.0	20.0	20.0	0.0	0.0	0.0
	기타	(6)	33.3	33.3	0.0	0.0	0.0	33.3
기업 규모	중소기업	(58)	44.8	34.5	10.3	3.4	1.7	5.2
	중견기업	(31)	25.8	32.3	35.5	0.0	3.2	3.2
	대기업	(11)	72.7	9.1	0.0	0.0	0.0	18.2

〈표 44〉 해외진출 결정 이유 - 2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24)	16.7	66.7	8.3	4.2	4.2	0.0
기업 규모	제조업	(12)	8.3	66.7	16.7	8.3	0.0	0.0
	도매 및 소매업	(2)	0.0	100.0	0.0	0.0	0.0	0.0
	건설업	(6)	50.0	5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0.0	50.0	0.0	0.0	50.0	0.0
	운수 및 창고업	(1)	0.0	100.0	0.0	0.0	0.0	0.0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11)	0.0	72.7	18.2	9.1	0.0	0.0
	도매 및 소매업	(6)	50.0	50.0	0.0	0.0	0.0	0.0
	건설업	(2)	50.0	5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0.0	66.7	0.0	0.0	33.3	0.0
	운수 및 창고업	(1)	0.0	100.0	0.0	0.0	0.0	0.0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12)	8.3	75.0	8.3	0.0	8.3	0.0
	중견기업	(7)	28.6	57.1	0.0	14.3	0.0	0.0
	대기업	(5)	20.0	60.0	20.0	0.0	0.0	0.0

〈표 45〉 해외진출 결정 이유 - 3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5)	40.0	0.0	20.0	20.0	0.0	20.0
기업 규모	제조업	(2)	10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	0.0	0.0	0.0	100.0	0.0	0.0
	건설업	(0)	0.0	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0.0	0.0	0.0	0.0	0.0	100.0
	운수 및 창고업	(0)	0.0	0.0	0.0	0.0	0.0	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2)	10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	0.0	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0.0	0.0	0.0	50.0	0.0	50.0
	운수 및 창고업	(0)	0.0	0.0	0.0	0.0	0.0	0.0
	기타	(1)	0.0	0.0	100.0	0.0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3)	33.3	0.0	33.3	33.3	0.0	0.0
	중견기업	(2)	50.0	0.0	0.0	0.0	0.0	50.0
	대기업	(0)	0.0	0.0	0.0	0.0	0.0	0.0

## (2)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를 2020년 총매출액 대비 비율로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요인인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2020년 총매출액 대비 평균 138.8%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은 기업이 선택한 ‘수요 등 현지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2020년 매출액 대비 141.1%,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후를 강화하기 위해서’의 경제적 가치는 2020년도 매출액의 133.0%로 나타났다

〈표 46〉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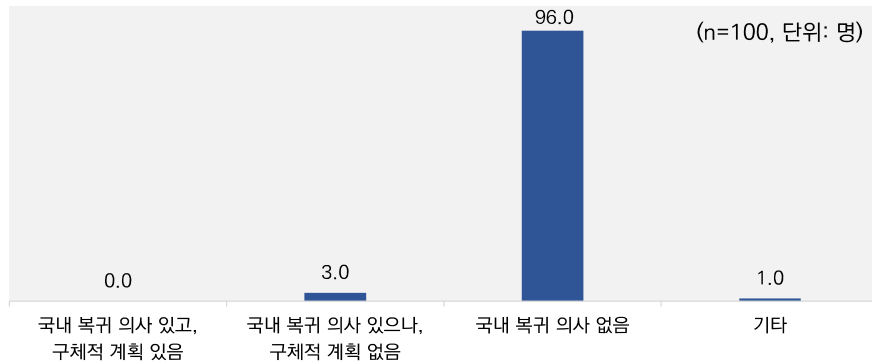
		사례 수	평균
해외진출 결정이유	①	(48)	138.8
	②	(47)	141.1
	③	(20)	133.0
	④	(4)	150.0
	⑤	(3)	133.3
	⑥	(7)	128.6

- ①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②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③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후를 강화하기 위하여  
 ④ 우호적인 현지정책(세금, 보조금, 비자혜택 등)이 있어서  
 ⑤ 모국기업 환경의 부정적인 변화(경쟁 심화 등)로 인하여  
 ⑥ 기타

### (3) 향후 5년 내 국내복귀 의사

- 향후 5년내 국내복귀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아직은 국내복귀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96.0%로 가장 많았다

[그림 21] 향후 5년 내 국내복귀 의사



<표 47> 향후 5년 내 국내복귀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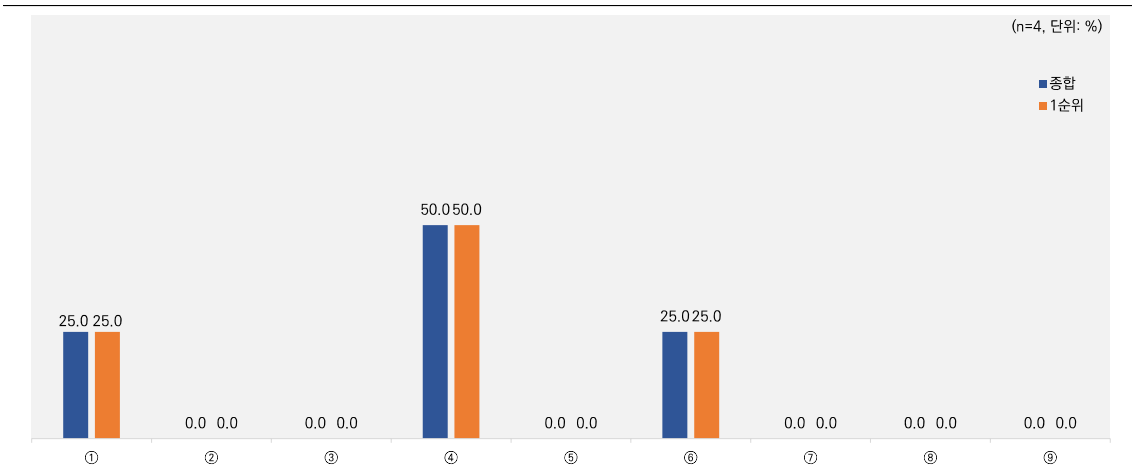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국내복귀 의사 있고, 구체적 계획 있음	국내복귀 의사 있으나, 구체적 계획 없음	국내복귀 의사 전혀 없음	기타
전체		(100)	0.0	3.0	96.0	1.0
기업 규모	제조업	(52)	0.0	1.9	98.1	0.0
	도매 및 소매업	(25)	0.0	0.0	100.0	0.0
	건설업	(9)	0.0	11.1	77.8	1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0.0	16.7	83.3	0.0
	운수 및 창고업	(5)	0.0	0.0	100.0	0.0
	기타	(3)	0.0	0.0	100.0	0.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65)	0.0	1.5	98.5	0.0
	도매 및 소매업	(9)	0.0	11.1	77.8	11.1
	건설업	(8)	0.0	0.0	10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0.0	14.3	85.7	0.0
	운수 및 창고업	(5)	0.0	0.0	100.0	0.0
	기타	(6)	0.0	0.0	10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58)	0.0	5.2	93.1	1.7
	중견기업	(31)	0.0	0.0	100.0	0.0
	대기업	(11)	0.0	0.0	100.0	0.0

#### (4) 국내복귀 고려 이유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라는 응답이 50.0%,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가 각 25.0%로 나타났다

[그림 22] 국내복귀 고려 이유



- ①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의 이유)
- ②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환경비용 증가, 환율변동 등의 이유)
- ③ 기술 탈취의 우려가 있어서
- ④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 (사유재산 몰수의 위험, 촌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 비자 발급 등의 이유)
- ⑤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
- ⑥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보조금 지원, FTA체결, 산업용지 확보 등)
- ⑦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자금조달의 편리성, 연구개발 가능 등)
- ⑧ 수요 등 국내 내수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⑨ 기타

<표 48> 국내복귀 고려 이유 - 종합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4)	25.0	0.0	0.0	50.0	0.0	25.0	0.0	0.0	0.0
기업 규모	제조업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2)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표 48〉의 계속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2)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건설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4)	25.0	0.0	0.0	50.0	0.0	25.0	0.0	0.0	0.0
	중견기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기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①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의 이유)  
 ②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환경비용 증가, 환율변동 등의 이유)  
 ③ 기술 탈취의 우려가 있어서  
 ④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  
 (사유재산 몰수의 위험, 총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 비자 발급 등의 이유)  
 ⑤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  
 ⑥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보조금 지원, FTA체결, 산업용지 확보 등)  
 ⑦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자금조달의 편리성, 연구개발 가능 등)  
 ⑧ 수요 등 국내 내수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⑨ 기타

〈표 49〉 국내복귀 고려 이유 - 1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4)	25.0	0.0	0.0	50.0	0.0	25.0	0.0	0.0	0.0
기업 규모	제조업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2)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2)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건설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4)	25.0	0.0	0.0	50.0	0.0	25.0	0.0	0.0	0.0
	중견기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기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 국내복귀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국내복귀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를 2020년도 매출 대비 비율로 물어보았다.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2020년도 매출액 대비 평균 130.0%로 나타났다

〈표 50〉 국내복귀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단위: 명, %)

		사례 수	평균
국내복귀 결정이유	①	(1)	130.0
	②	(0)	-
	③	(0)	-
	④	(2)	130.0
	⑤	(0)	-
	⑥	(1)	120.0
	⑦	(0)	-
	⑧	(0)	-
	⑨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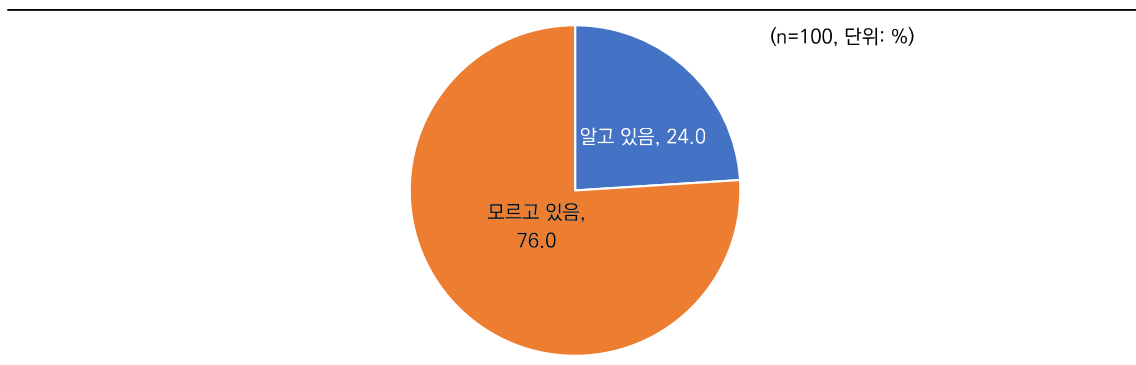
- ①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의 이유)
- ②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환경비용 증가, 환율변동 등의 이유)
- ③ 기술 탈취의 우려가 있어서
- ④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 (사유재산 몰수의 위험, 총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 비자 발급 등의 이유)
- ⑤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
- ⑥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보조금 지원, FTA체결, 산업용지 확보 등)
- ⑦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자금조달의 편리성, 연구개발 가능 등)
- ⑧ 수요 등 국내 내수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⑨ 기타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액감면제도

##### (1)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76.0%로 '알고 있다'는 응답(24.0%)보다 많았다
-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84.5%, '대기업'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81.8%였다

[그림 23]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표 51>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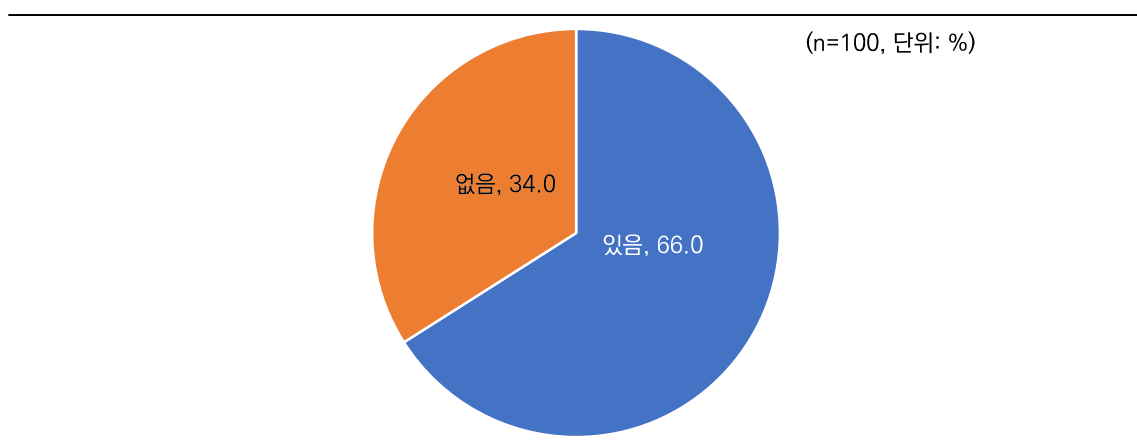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100)	24.0	76.0
기업 규모	제조업	(52)	30.8	69.2
	도매 및 소매업	(25)	28.0	72.0
	건설업	(9)	11.1	88.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0.0	100.0
	운수 및 창고업	(5)	0.0	100.0
	기타	(3)	0.0	100.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65)	32.3	67.7
	도매 및 소매업	(9)	11.1	88.9
	건설업	(8)	25.0	75.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0.0	100.0
	운수 및 창고업	(5)	0.0	100.0
	기타	(6)	0.0	10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58)	15.5	84.5
	중견기업	(31)	41.9	58.1
	대기업	(11)	18.2	81.8

## (2)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에, 세액감면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예, 있습니다'라는 응답이 66.0%로 '아니오, 없습니다'(34.0%)보다 많았다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에서는 '예, 있습니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났다

[그림 24]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표 52>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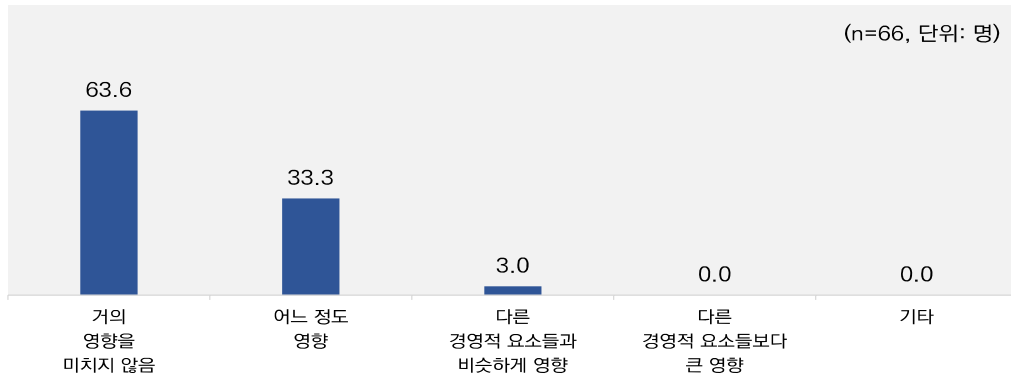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있음	없음
전체		(100)	66.0	34.0
기업규모	제조업	(52)	69.2	30.8
	도매 및 소매업	(25)	44.0	56.0
	건설업	(9)	88.9	1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83.3	16.7
	운수 및 창고업	(5)	60.0	40.0
	기타	(3)	100.0	0.0
국내복귀 유형	제조업	(65)	64.6	35.4
	도매 및 소매업	(9)	88.9	11.1
	건설업	(8)	50.0	5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85.7	14.3
	운수 및 창고업	(5)	60.0	40.0
	기타	(6)	50.0	50.0
기업규모	중소기업	(58)	60.3	39.7
	중견기업	(31)	64.5	35.5
	대기업	(11)	100.0	0.0

### (3)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예상)

-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었을 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영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영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54.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25]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예상)



<표 53>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예상)

(단위: 명, %)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하게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	기타
전체		(66)	63.6	33.3	3.0	0.0	0.0
기업 규모	제조업	(36)	61.1	38.9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1)	90.9	0.0	9.1	0.0	0.0
	건설업	(8)	50.0	5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	60.0	20.0	2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3)	33.3	66.7	0.0	0.0	0.0
	기타	(3)	66.7	33.3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42)	69.0	31.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8)	50.0	50.0	0.0	0.0	0.0
	건설업	(4)	50.0	25.0	25.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66.7	16.7	16.7	0.0	0.0
	운수 및 창고업	(3)	33.3	66.7	0.0	0.0	0.0
	기타	(3)	66.7	33.3	0.0	0.0	0.0

〈표 53〉의 계속

(단위: 명, %)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하게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	기타
기업 규모	중소기업	(35)	68.6	25.7	5.7	0.0	0.0
	중견기업	(20)	65.0	35.0	0.0	0.0	0.0
	대기업	(11)	45.5	54.5	0.0	0.0	0.0

(4)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 결정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및 복귀 이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었을 때, '복귀 결정 이후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 '근로자 수', '설비투자', 'R&D투자' 모두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54〉 세액감면제도가 복귀 이후 결정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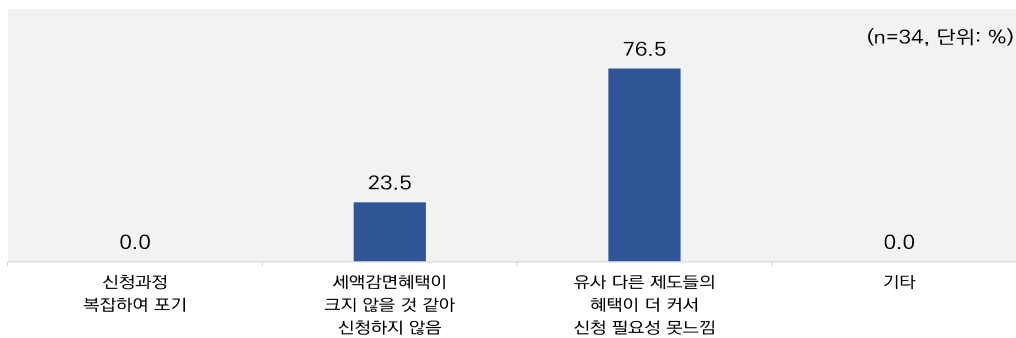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크게 감소	감소	변화없음	증가	크게 증가	평균
복귀 결정 이후 국내복귀까지 걸린 기간	(66)	0.0	6.1	87.9	6.1	0.0	3.0
근로자 수	(66)	0.0	6.1	87.9	6.1	0.0	3.0
설비투자	(66)	0.0	4.5	90.9	4.5	0.0	3.0
R&D투자	(66)	0.0	4.5	92.4	3.0	0.0	3.0

(5)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없는 이유

-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에, 세액감면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유사 다른 제도들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신청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이라는 응답이 76.5%로 가장 많았다

[그림 26]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없는 이유



〈표 55〉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의사 없는 이유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평균
전체		(34)	0.0	23.5	76.5	0.0	2.8
기업규모	제조업	(16)	0.0	18.8	81.3	0.0	2.8
	도매 및 소매업	(14)	0.0	21.4	78.6	0.0	2.8
	건설업	(1)	0.0	0.0	100.0	0.0	3.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0.0	0.0	100.0	0.0	3.0
	운수 및 창고업	(2)	0.0	100.0	0.0	0.0	2.0
	기타	(0)	0.0	0.0	0.0	0.0	.
국내복귀 유형	제조업	(23)	0.0	13.0	87.0	0.0	2.9
	도매 및 소매업	(1)	0.0	0.0	100.0	0.0	3.0
	건설업	(4)	0.0	50.0	50.0	0.0	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0.0	0.0	100.0	0.0	3.0
	운수 및 창고업	(2)	0.0	100.0	0.0	0.0	2.0
	기타	(3)	0.0	33.3	66.7	0.0	2.7
기업규모	중소기업	(23)	0.0	21.7	78.3	0.0	2.8
	중견기업	(11)	0.0	27.3	72.7	0.0	2.7
	대기업	(0)	0.0	0.0	0.0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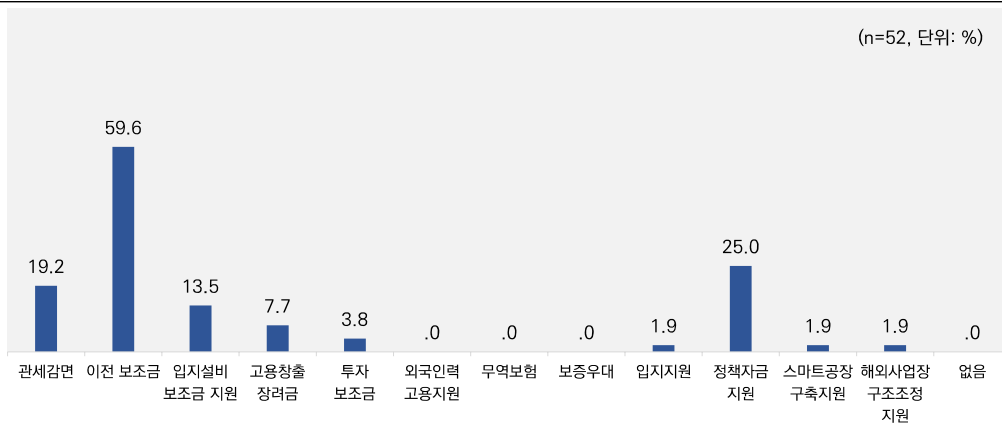
- ① 신청과정이 복잡할 것 같음  
 ② 국내복귀 이후의 매출이 크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음  
 ③ 유사 다른 제도들의 혜택(관세감면, R&D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투자보조금 등)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신청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④ 기타

##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제도 인식 및 활용

### (1)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기업이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들 중 알고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하도록 했을 때, '이전보조금'이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자금지원'(25.0%), '관세감면'(19.2%), '입지 설비보조금 지원'(1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표 56>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사례 수	관세 감면	이전 보조금	입지 설비 보조금 지원	고용 창출 장려금	투자 보조금	외국 인력 고용 지원
전체		(52)	19.2	59.6	13.5	7.7	3.8	0.0
기업 규모	제조업	(33)	21.2	63.6	18.2	9.1	6.1	0.0
	도매 및 소매업	(15)	20.0	46.7	0.0	0.0	0.0	0.0
	건설업	(1)	0.0	10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0.0	100.0	100.0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2)	0.0	50.0	0.0	5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43)	20.9	58.1	9.3	7.0	4.7	0.0
	도매 및 소매업	(1)	0.0	100.0	0.0	0.0	0.0	0.0
	건설업	(4)	25.0	75.0	5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0.0	50.0	50.0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2)	0.0	50.0	0.0	5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30)	13.3	66.7	13.3	3.3	0.0	0.0
	중견기업	(21)	23.8	47.6	9.5	9.5	9.5	0.0
	대기업	(1)	100.0	100.0	100.0	100.0	0.0	0.0

〈표 57〉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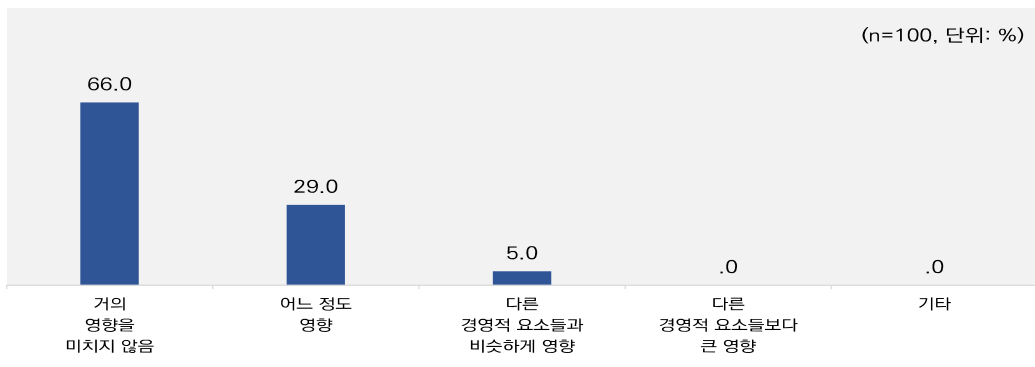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역 보험	보증 우대	입지 지원	정책 자금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해외사업장 구조 조정 지원	없음
전체		0.0	0.0	1.9	25.0	1.9	1.9	0.0
기업 규모	제조업	0.0	0.0	3.0	21.2	3.0	3.0	0.0
	도매 및 소매업	0.0	0.0	0.0	33.3	0.0	0.0	0.0
	건설업	0.0	0.0	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	0.0	0.0	100.0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0.0	0.0	0.0	23.3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0	0.0	25.0	25.0	25.0	25.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	0.0	0.0	100.0	0.0	0.0	0.0
	운수 및 창고업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0.0	0.0	3.3	23.3	3.3	3.3	0.0
	중견기업	0.0	0.0	0.0	28.6	0.0	0.0	0.0
	대기업	0.0	0.0	0.0	0.0	0.0	0.0	0.0

(2) 세액감면 혜택 이외의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세액감면 혜택을 제외한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66.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영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29.0%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영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45.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28] 세액감면 혜택 이외의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



〈표 58〉 세액감면 혜택 이외의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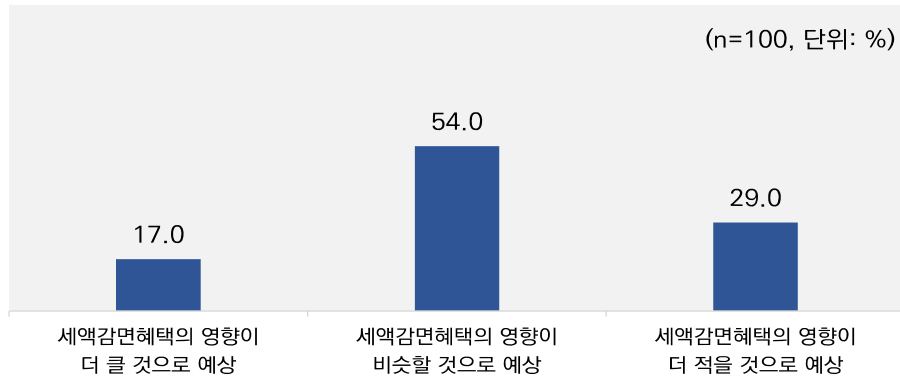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하게 영향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	기타
전체		(100)	66.0	29.0	5.0	0.0	0.0
기업 규모	제조업	(52)	63.5	32.7	3.8	0.0	0.0
	도매 및 소매업	(25)	80.0	16.0	4.0	0.0	0.0
	건설업	(9)	55.6	44.4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66.7	16.7	16.7	0.0	0.0
	운수 및 창고업	(5)	40.0	40.0	20.0	0.0	0.0
	기타	(3)	66.7	33.3	0.0	0.0	0.0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65)	69.2	29.2	1.5	0.0	0.0
	도매 및 소매업	(9)	55.6	44.4	0.0	0.0	0.0
	건설업	(8)	75.0	0.0	25.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57.1	28.6	14.3	0.0	0.0
	운수 및 창고업	(5)	40.0	40.0	20.0	0.0	0.0
	기타	(6)	66.7	33.3	0.0	0.0	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58)	69.0	24.1	6.9	0.0	0.0
	중견기업	(31)	64.5	32.3	3.2	0.0	0.0
	대기업	(11)	54.5	45.5	0.0	0.0	0.0

- 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영적 요소들(경제, 산업, 시장 등)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③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한 영향을 줄 것이다.  
 ④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을 줄 것이다.  
 ⑤ 기타

(3) 세액감면제도가 기타 정부 지원 대비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효과

- 세액감면제도가 그 외의 정부 지원들에 비하여 국내복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세액감면 혜택이 비슷하게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함'이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다
- 기업규모별로는 '세액감면 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함'이라는 응답이 54.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29] 세액감면제도가 기타 정부 지원 대비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효과



<표 59> 세액감면제도가 기타 정부 지원 대비 국내복귀 결정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

		사례 수	세액감면 혜택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세액감면 혜택의 영향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	세액감면 혜택의 영향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
전체		(100)	17.0	54.0	29.0
기업 규모	제조업	(52)	5.8	65.4	28.8
	도매 및 소매업	(25)	12.0	56.0	32.0
	건설업	(9)	44.4	22.2	33.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50.0	33.3	16.7
	운수 및 창고업	(5)	40.0	40.0	20.0
	기타	(3)	66.7	0.0	33.3
국내 복귀 유형	제조업	(65)	7.7	61.5	30.8
	도매 및 소매업	(9)	44.4	22.2	33.3
	건설업	(8)	12.5	75.0	1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42.9	42.9	14.3
	운수 및 창고업	(5)	40.0	40.0	20.0
	기타	(6)	33.3	16.7	50.0
기업 규모	중소기업	(58)	15.5	58.6	25.9
	중견기업	(31)	6.5	54.8	38.7
	대기업	(11)	54.5	27.3	18.2

### 3. 해외진출희망기업

#### 1)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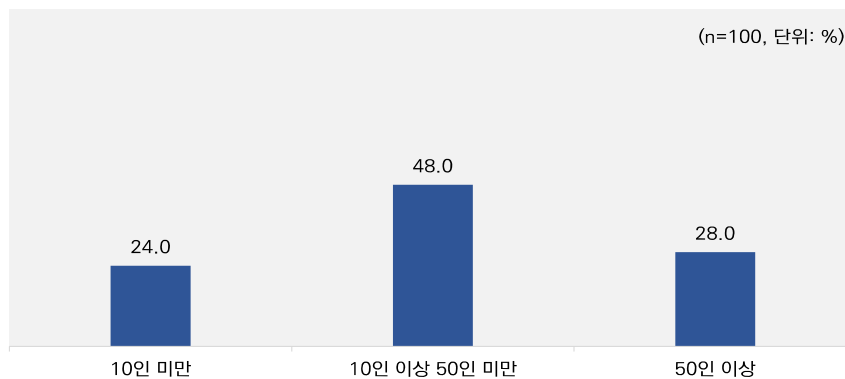
##### (1) 일반 현황

- 설문에 응답한 해외진출희망기업 100개 중 '중소기업'이 99.0%, '중견기업'이 1.0%였다
- 기업의 업태는 국내사업장 기준 '제조업'이 77.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 (1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0%) 순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소재지는 '서울'이 28.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경기'가 21.0%로 많았다

##### (2) 2020년 상시근로자 수

- 해외진출희망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살펴보면, '10인 이상 50인 미만'이 48.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50인 이상'(28.0%), '10인 미만'(24.0%) 순이었다.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50.9명이었다

[그림 30] 2020년 상시근로자 수



<표 60> 2020년 상시근로자 수

		사례 수	10인 미만	1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평균
전체		(100)	24.0	48.0	28.0	50.9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16.9	50.6	32.5	57.5
	도매 및 소매업	(10)	70.0	20.0	10.0	13.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37.5	50.0	12.5	41.5
	기타	(5)	20.0	60.0	20.0	39.0

(단위: 명, %)

〈표 60〉의 계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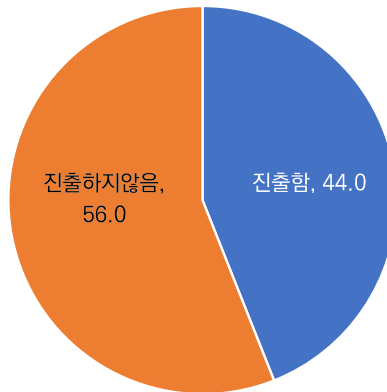
		사례 수	10인 미만	1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평균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24.2	48.5	27.3	46.3
	중견기업	(1)	0.0	0.0	100.0	50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25.0	36.4	38.6	71.8
	진출하지 않음	(56)	23.2	57.1	19.6	34.4

### (3) 해외진출 여부

- 해외진출 여부를 물었을 때, '진출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56.0%로 '진출함'(44.0%)보다 많았다

[그림 31] 해외진출 여부

(n=100, 단위: %)



〈표 61〉 해외진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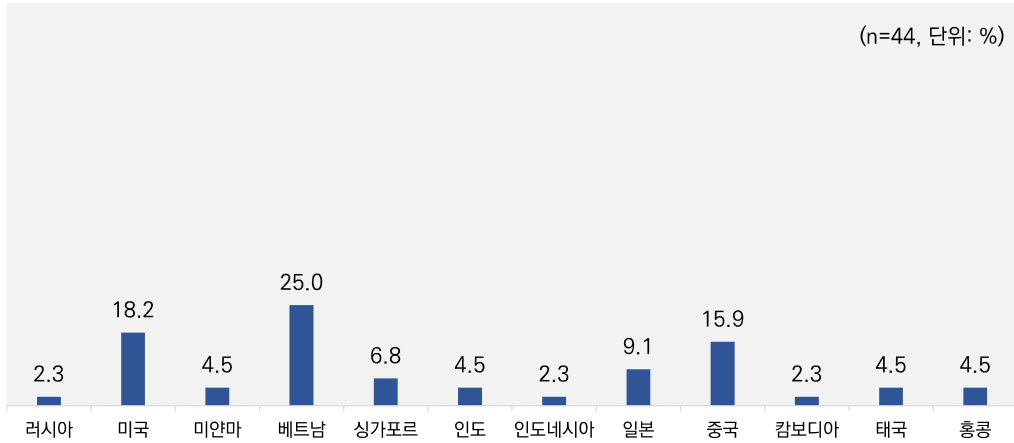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진출함	진출하지 않음
전체		(100)	44.0	56.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42.9	57.1
	도매 및 소매업	(10)	40.0	6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62.5	37.5
	기타	(5)	40.0	6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43.4	56.6
	중견기업	(1)	100.0	0.0

#### (4) 해외진출 국가

- 해외진출한 기업의 경우 진출한 국가를 물었을 때, '베트남'이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미국'(18.2%), '중국'(15.9%) 순이었다

[그림 32] 해외진출 국가



〈표 62〉 해외진출 국가 - 1

(단위: 명, %)

		사례 수	러시아	미국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전체		(44)	2.3	18.2	4.5	25.0	6.8	4.5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33)	3.0	18.2	6.1	27.3	3.0	6.1
	도매 및 소매업	(4)	0.0	5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	0.0	0.0	0.0	20.0	40.0	0.0
	기타	(2)	0.0	0.0	0.0	5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43)	2.3	18.6	4.7	25.6	7.0	2.3
	중견기업	(1)	0.0	0.0	0.0	0.0	0.0	10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2.3	18.2	4.5	25.0	6.8	4.5
	진출하지 않음	(0)	0.0	0.0	0.0	0.0	0.0	0.0

〈표 63〉 해외진출 국가 - 2

(단위: 명, %)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홍콩
전체		2.3	9.1	15.9	2.3	4.5	4.5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3.0	6.1	15.2	3.0	6.1	3.0
	도매 및 소매업	0.0	25.0	25.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	20.0	2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50.0

〈표 63〉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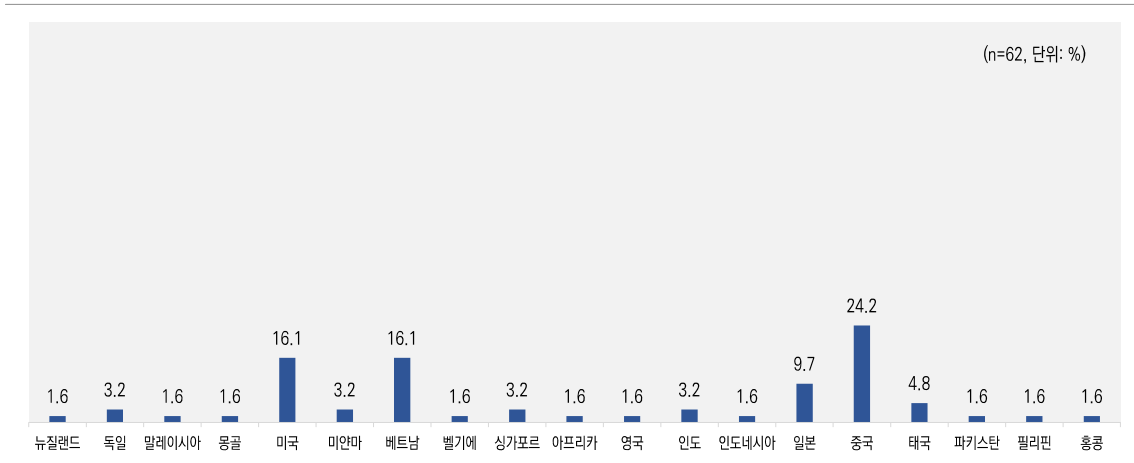
(단위: 명, %)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홍콩
기업규모	중소기업	2.3	9.3	16.3	2.3	4.7	4.7
	중견기업	0.0	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2.3	9.1	15.9	2.3	4.5	4.5
	진출하지 않음	0.0	0.0	0.0	0.0	0.0	0.0

(5) 해외진출 희망 국가

- 진출(확장)을 가장 희망하는 국가를 물었을 때, '중국'이라는 응답이 24.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미국'과 '베트남'이 16.1%로 나타났다

[그림 33] 해외진출 희망 국가



〈표 64〉 해외진출 희망 국가 - 1

(단위: 명, %)

		사례 수	뉴질랜드	독일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미얀마	베트남	벨기에	싱가포르
전체		(62)	1.6	3.2	1.6	1.6	16.1	3.2	16.1	1.6	3.2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48)	2.1	4.2	2.1	2.1	14.6	2.1	18.8	2.1	4.2
	도매 및 소매업	(7)	0.0	0.0	0.0	0.0	28.6	0.0	14.3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0.0	0.0	0.0	0.0	25.0	25.0	0.0	0.0	0.0
	기타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62)	1.6	3.2	1.6	1.6	16.1	3.2	16.1	1.6
	중견기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6)	0.0	0.0	0.0	0.0	16.7	0.0	16.7	0.0	16.7
	진출하지 않음	(56)	1.8	3.6	1.8	1.8	16.1	3.6	16.1	1.8	1.8

〈표 65〉 해외진출 희망 국가 - 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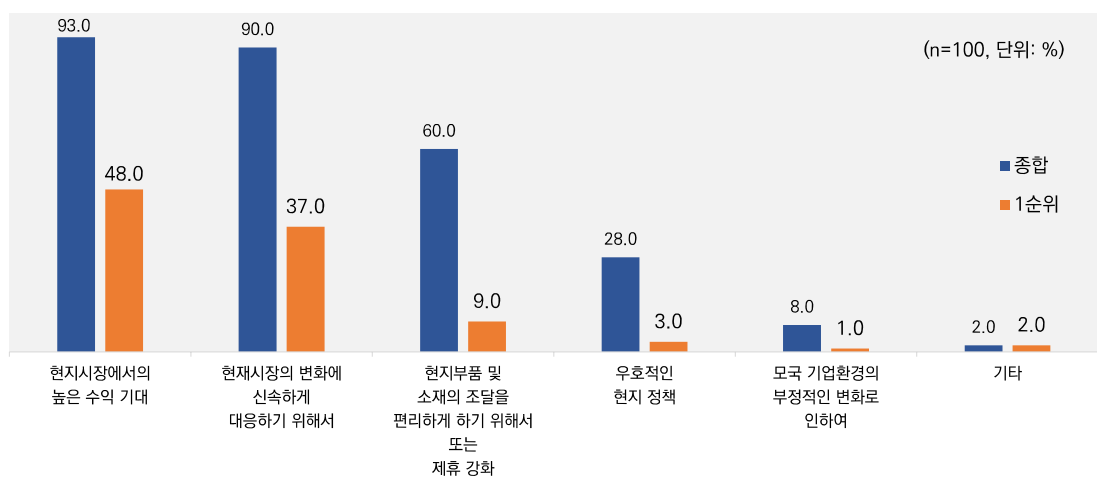
		아프리카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전체		1.6	1.6	3.2	1.6	9.7	24.2	4.8	1.6	1.6	1.6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2.1	0.0	4.2	2.1	6.3	22.9	6.3	2.1	2.1	0.0
	도매 및 소매업	0.0	14.3	0.0	0.0	14.3	28.6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	0.0	0.0	0.0	25.0	25.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33.3	33.3	0.0	0.0	0.0	33.3
기업규모	중소기업	1.6	1.6	3.2	1.6	9.7	24.2	4.8	1.6	1.6	1.6
	중견기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0.0	16.7	0.0	16.7	16.7	0.0	0.0	0.0	0.0	0.0
	진출하지 않음	1.8	0.0	3.6	0.0	8.9	26.8	5.4	1.8	1.8	1.8

## 2) 해외진출 및 복귀

### (1) 해외진출 결정 이유

- 해외진출을 희망하게 된 이유를 1, 2, 3순위로 물어보고 종합했을 때,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93.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90.0%),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하여’(60.0%) 순이었다

[그림 34] 해외진출 결정 이유



〈표 66〉 해외진출 결정 이유 - 종합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00)	93.0	90.0	60.0	28.0	8.0	2.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93.5	88.3	61.0	27.3	7.8	2.6
	도매 및 소매업	(10)	90.0	100.0	60.0	4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100.0	87.5	62.5	25.0	12.5	0.0
	기타	(5)	80.0	100.0	40.0	20.0	2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92.9	89.9	59.6	28.3	8.1	2.0
	중견기업	(1)	100.0	100.0	10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86.4	90.9	65.9	31.8	6.8	4.5
	진출하지 않음	(56)	98.2	89.3	55.4	25.0	8.9	0.0

- ①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②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③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하여  
 ④ 우호적인 현지 정책(세금, 보조금, 비자 혜택 등)이 있어서  
 ⑤ 모국 기업환경의 부정적인 변화(경쟁심화 등)로 인하여  
 ⑥ 기타

〈표 67〉 해외진출 결정 이유 - 1순위

(단위 :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00)	48.0	37.0	9.0	3.0	1.0	2.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48.1	39.0	6.5	2.6	1.3	2.6
	도매 및 소매업	(10)	50.0	40.0	1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62.5	12.5	25.0	0.0	0.0	0.0
	기타	(5)	20.0	40.0	20.0	2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47.5	37.4	9.1	3.0	1.0	2.0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56.8	27.3	6.8	2.3	2.3	4.5
	진출하지 않음	(56)	41.1	44.6	10.7	3.6	0.0	0.0

〈표 68〉 해외진출 결정 이유 - 2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98)	33.7	38.8	19.4	7.1	1.0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5)	34.7	36.0	20.0	8.0	1.3	0.0
	도매 및 소매업	(10)	20.0	40.0	30.0	1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25.0	62.5	12.5	0.0	0.0	0.0
	기타	(5)	60.0	40.0	0.0	0.0	0.0	0.0

〈표 68〉의 계속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기업규모	중소기업	(97)	34.0	38.1	19.6	7.2	1.0	0.0
	중견기업	(1)	0.0	10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3)	25.6	44.2	23.3	7.0	0.0	0.0
	진출하지 않음	(55)	40.0	34.5	16.4	7.3	1.8	0.0

〈표 69〉 해외진출 결정 이유 - 3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83)	14.5	18.1	38.6	21.7	7.2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64)	14.1	17.2	42.2	20.3	6.3	0.0
	도매 및 소매업	(9)	22.2	22.2	22.2	33.3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14.3	14.3	28.6	28.6	14.3	0.0
	기타	(3)	0.0	33.3	33.3	0.0	33.3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82)	14.6	18.3	37.8	22.0	7.3	0.0
	중견기업	(1)	0.0	0.0	10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39)	5.1	23.1	41.0	25.6	5.1	0.0
	진출하지 않음	(44)	22.7	13.6	36.4	18.2	9.1	0.0

## (2)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를 2020년도 매출 대비 비율로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요인인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복귀연도 매출액 대비 평균 128.7%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선택한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요인의 경제적 가치는 복귀연도 매출액 대비 평균 127.8%로 나타났다.

〈표 70〉 해외진출 결정 요인의 총 경제적 가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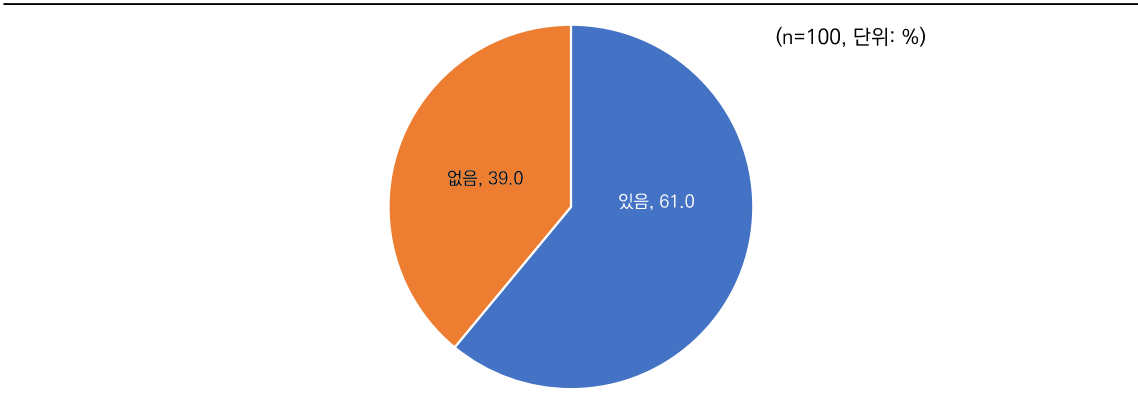
		사례 수	평균
해외진출 결정이유	①	(93)	128.7
	②	(90)	127.8
	③	(60)	123.8
	④	(28)	127.1
	⑤	(8)	132.5
	⑥	(2)	120.0

- ① 현지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 ② 수요 등 현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③ 현지 부품 및 소재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하여
- ④ 우호적인 현지 정책(세금, 보조금, 비자 혜택 등)이 있어서
- ⑤ 모국 기업환경의 부정적인 변화(경쟁심화 등)로 인하여
- ⑥ 기타

**(3)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진출 기업 유무**

-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진출한 기업이 있는지 물었을 때, '예, 경쟁기업 중에 이미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다'라는 응답이 61.0%로 '아니오, 경쟁기업 중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없습니다' (39.0%)보다 많았다.
- 해외진출 여부별로는 '진출함'에서 '예, 경쟁기업 중에 이미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다'라는 응답이 77.3%로 많았고, '진출하지 않음'에서는 '아니오, 경쟁기업 중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없습니다'라는 응답이 51.8%로 많았다.

[그림 35]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진출 기업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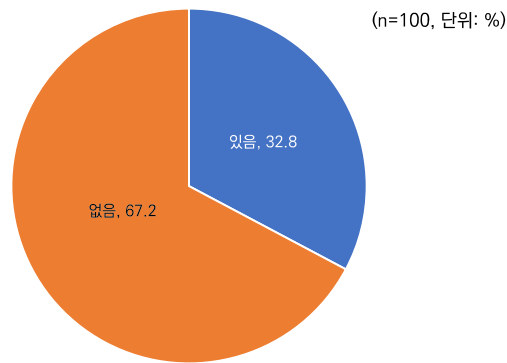
<표 71>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진출 기업 유무

		사례 수	있음	없음
전체		(100)	61.0	39.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58.4	41.6
	도매 및 소매업	(10)	90.0	1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50.0	50.0
	기타	(5)	60.0	4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60.6	39.4
	중견기업	(1)	10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77.3	22.7
	진출하지 않음	(56)	48.2	51.8

#### (4)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 및 국내사업장 확장 기업 유무

- 해외진출 경쟁기업 중에 해외사업장을 축소 및 국내사업장을 확장한 기업이 있는지 물었을 때, '아니오, 경쟁기업 중에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응답이 67.2%로 '예, 경쟁기업 중에 해외사업장을 축소 및 국내사업장을 확장한 기업이 있습니다'(32.8%)보다 많았다

[그림 36]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 및 국내사업장 확장 기업 유무



<표 72> 국내 경쟁기업 중 해외사업장 축소 및 국내사업장 확장 기업 유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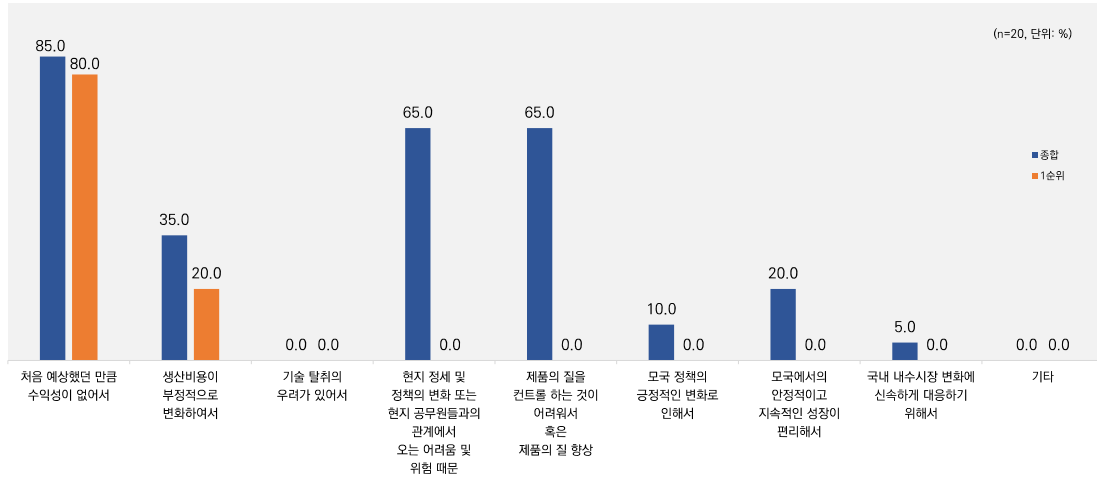
		사례 수	있음	없음
전체		(61)	32.8	67.2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45)	35.6	64.4
	도매 및 소매업	(9)	22.2	77.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0.0	100.0
	기타	(3)	66.7	33.3
기업규모	중소기업	(60)	33.3	66.7
	중견기업	(1)	0.0	10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34)	35.3	64.7
	진출하지 않음	(27)	29.6	70.4

#### (5)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해외진출 경쟁기업이 국내복귀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1, 2, 3순위를 물어보고 종합했을 때,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85.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65.0%),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65.0%),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35.0%) 순이었다

- 해외진출 여부별로는 '진출함'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91.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37]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표 73>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종합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20)	85.0	35.0	0.0	65.0	65.0	10.0	20.0	5.0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16)	87.5	37.5	0.0	56.3	62.5	6.3	25.0	6.3	0.0
	도매 및 소매업	(2)	50.0	50.0	0.0	100.0	10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100.0	0.0	0.0	100.0	50.0	5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20)	85.0	35.0	0.0	65.0	65.0	10.0	20.0	5.0	0.0
	중견기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12)	91.7	25.0	0.0	66.7	66.7	0.0	25.0	0.0	0.0
	진출하지 않음	(8)	75.0	50.0	0.0	62.5	62.5	25.0	12.5	12.5	0.0

- ①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없어서(수요 착오, 경쟁 심화 등의 이유)
- ② 생산비용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여서(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환경비용 증가, 환율변동 등의 이유)
- ③ 기술 탈취의 우려가 있어서
- ④ 현지 정세 및 정책의 변화 또는 현지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및 위험 때문에(사유재산 몰수의 위험, 총지,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정책 변화, 비자 발급 등의 이유)
- ⑤ 제품의 질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혹은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브랜드가치 등)
- ⑥ 모국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서(보조금 지원, FTA체결, 산업용지 확보 등)
- ⑦ 모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편리해서(자금조달의 편리성, 연구개발 가능 등)
- ⑧ 수요 등 국내 내수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⑨ 기타

〈표 74〉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1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20)	80.0	20.0	0.0	0.0	0.0	0.0	0.0	0.0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16)	81.3	18.8	0.0	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2)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20)	80.0	20.0	0.0	0.0	0.0	0.0	0.0	0.0	0.0
	중견기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12)	91.7	8.3	0.0	0.0	0.0	0.0	0.0	0.0	0.0
	진출하지 않음	(8)	62.5	37.5	0.0	0.0	0.0	0.0	0.0	0.0	0.0

〈표 75〉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2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9)	0.0	10.5	0.0	68.4	10.5	5.3	5.3	0.0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15)	0.0	13.3	0.0	60.0	13.3	6.7	6.7	0.0	0.0
	도매 및 소매업	(2)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19)	0.0	10.5	0.0	68.4	10.5	5.3	5.3	0.0	0.0
	중견기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11)	0.0	9.1	0.0	72.7	18.2	0.0	0.0	0.0	0.0
	진출하지 않음	(8)	0.0	12.5	0.0	62.5	0.0	12.5	12.5	0.0	0.0

〈표 76〉 해외진출 경쟁기업 국내복귀 이유 - 3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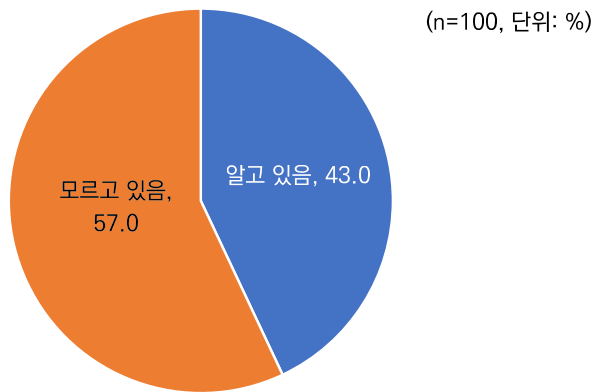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8)	5.6	5.6	0.0	0.0	61.1	5.6	16.7	5.6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14)	7.1	7.1	0.0	0.0	57.1	0.0	21.4	7.1	0.0
	도매 및 소매업	(2)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18)	5.6	5.6	0.0	0.0	61.1	5.6	16.7	5.6	0.0
	중견기업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10)	0.0	10.0	0.0	0.0	60.0	0.0	30.0	0.0	0.0
	진출하지 않음	(8)	12.5	0.0	0.0	0.0	62.5	12.5	0.0	12.5	0.0

###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금감면제도

#### (1)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알고있는지 물었을 때, '아니오,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응답이 57.0%로 '예, 알고 있었습니다'(43.0%)로 많았다
- 해외진출 여부별로는 '진출하지 않음'에서 '아니오,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응답이 60.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38]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표 77> 국내복귀 세액감면제도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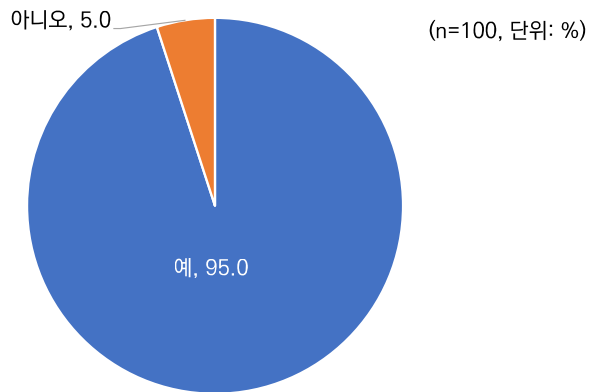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전체		(100)	43.0	57.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44.2	55.8
	도매 및 소매업	(10)	20.0	8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62.5	37.5
	기타	(5)	40.0	6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42.4	57.6
	중견기업	(1)	10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47.7	52.3
	진출하지 않음	(56)	39.3	60.7

(2)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예상

- 경쟁회사가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예'라는 응답이 95.0%로 '아니오'(5.0%)보다 많았다

[그림 39]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예상



<표 78>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 신청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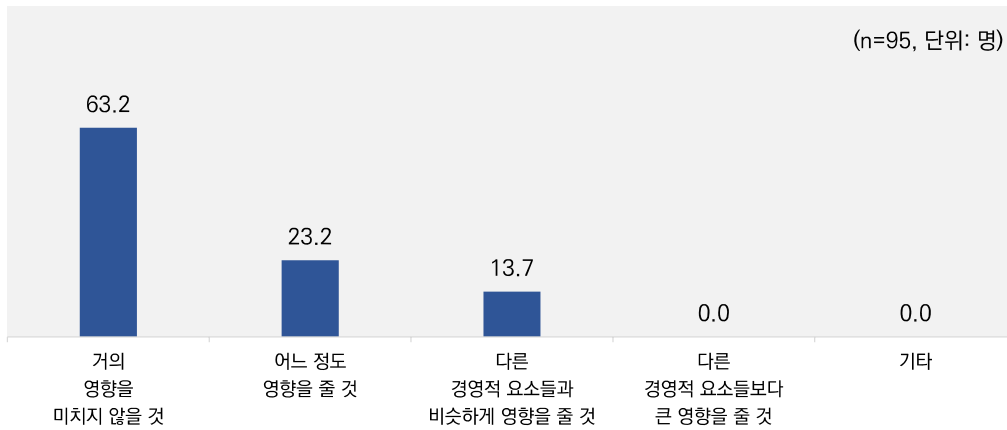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00)	95.0	5.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96.1	3.9
	도매 및 소매업	(10)	90.0	1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87.5	12.5
	기타	(5)	10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94.9	5.1
	중견기업	(1)	10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100.0	0.0
	진출하지 않음	(56)	91.1	8.9

### (3)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영업이익 영향

- 경쟁회사가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감면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진출 국가에도 유사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영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23.2%),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한 영향을 줄 것이다'(13.7%) 순이었다

[그림 40]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영업이익 영향



<표 79>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영업이익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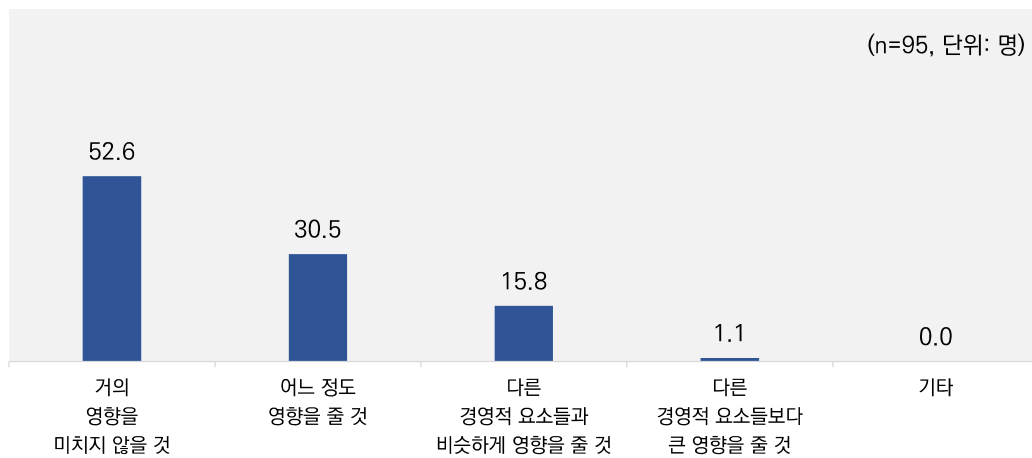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하게 영향을 줄 것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을 줄 것	기타
전체		(95)	63.2	23.2	13.7	0.0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4)	64.9	23.0	12.2	0.0	0.0
	도매 및 소매업	(9)	55.6	22.2	22.2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42.9	28.6	28.6	0.0	0.0
	기타	(5)	80.0	2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4)	62.8	23.4	13.8	0.0	0.0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56.8	25.0	18.2	0.0	0.0
	진출하지 않음	(51)	68.6	21.6	9.8	0.0	0.0

#### (4)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 경쟁회사가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감면이 귀사의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진출 국가에도 유사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영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30.5%),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한 영향을 줄 것이다'(15.8%) 순이었다

[그림 41]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표 80>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단위: 명, %)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하게 영향을 줄 것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을 줄 것	기타
전체		(95)	52.6	30.5	15.8	1.1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4)	51.4	29.7	18.9	0.0	0.0
	도매 및 소매업	(9)	44.4	44.4	11.1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57.1	28.6	0.0	14.3	0.0
	기타	(5)	80.0	2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4)	52.1	30.9	16.0	1.1	0.0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47.7	36.4	13.6	2.3	0.0
	진출하지 않음	(51)	56.9	25.5	17.6	0.0	0.0

(5)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제도의 해외진출 및 진출 이후 결정 영향

- 경쟁회사가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감면제도가 국내복귀 및 복귀 이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었을 때, ‘복귀 결정 이후 국내복귀까지 걸린 시간’, ‘근로자 수’, ‘설비투자’, ‘R&D투자’ 모두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81〉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제도의 해외진출 및 진출 이후 결정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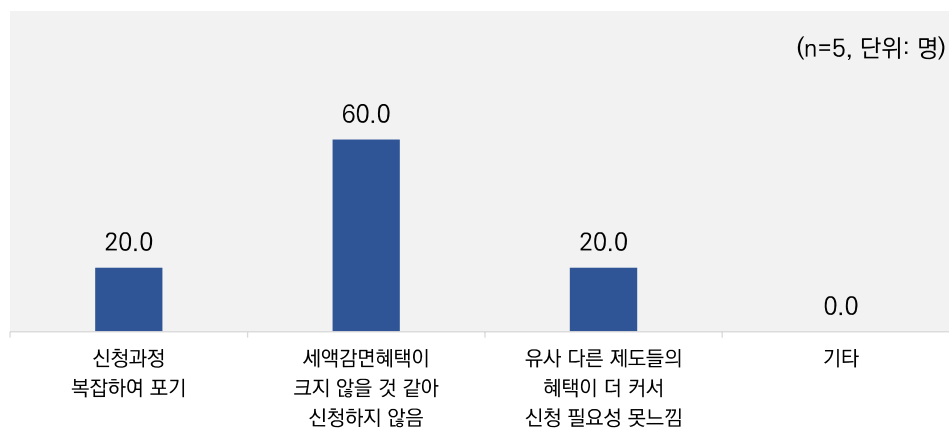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크게감소	감소	변화없음	증가	크게증가	평균
진출 결정 이후 해외진출까지 걸린 기간	(95)	0.0	12.6	69.5	17.9	0.0	3.1
국내 상시근로자 수	(95)	0.0	15.8	71.6	12.6	0.0	3.0
국내 설비투자	(95)	0.0	20.0	73.7	6.3	0.0	2.9
국내 R&D투자	(95)	2.1	25.3	69.5	3.2	0.0	2.7

(6)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 경쟁회사가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경우,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국내복귀 이후의 매출이 크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음’이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다

[그림 42]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표 82〉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단위: 명, %)

		사례 수	①	②	③	④
전체		(5)	20.0	60.0	20.0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3)	0.0	66.7	33.3	0.0
	도매 및 소매업	(1)	0.0	10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100.0	0.0	0.0	0.0
	기타	(0)	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5)	20.0	60.0	20.0	0.0
	중견기업	(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0)	0.0	0.0	0.0	0.0
	진출하지 않음	(5)	20.0	60.0	2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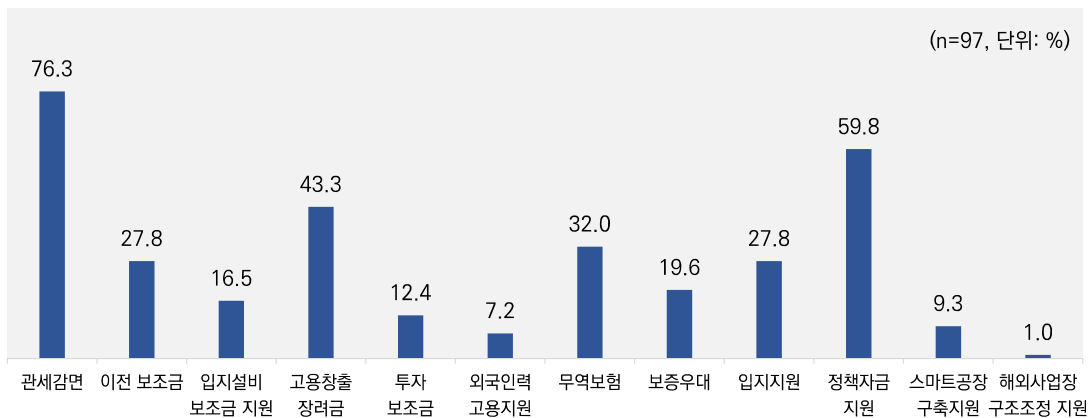
- ① 신청과정이 복잡할 것 같음  
 ② 국내복귀 이후의 매출이 크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음  
 ③ 유사 다른 제도들의 혜택(관세감면, R&D지원, 고용창출 장려금, 투자보조금 등)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신청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④ 기타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제도 인식 및 활용

##### (1)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들 중 알고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모두 응답하도록 했을 때, ‘관세감면’이라는 응답이 76.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정책자금지원’(59.8%), ‘고용창출 장려금’(43.3%), ‘무역보험’(32.0%) 순이었다

[그림 43]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표 83〉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1

(단위: 명, %)

		사례 수	관세감면	이전보조금	입지 설비 보조금 지원	고용 창출 장려금	투자 보조금	외국 인력 고용 지원
전체		(97)	76.3	27.8	16.5	43.3	12.4	7.2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5)	80.0	26.7	14.7	42.7	12.0	6.7
	도매 및 소매업	(10)	40.0	60.0	20.0	40.0	10.0	2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87.5	12.5	25.0	50.0	12.5	0.0
	기타	(4)	75.0	0.0	25.0	50.0	25.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6)	77.1	28.1	16.7	43.8	12.5	7.3
	중견기업	(1)	0.0	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1)	75.6	41.5	29.3	51.2	17.1	9.8
	진출하지 않음	(56)	76.8	17.9	7.1	37.5	8.9	5.4

〈표 84〉 인지하고 있는 지원제도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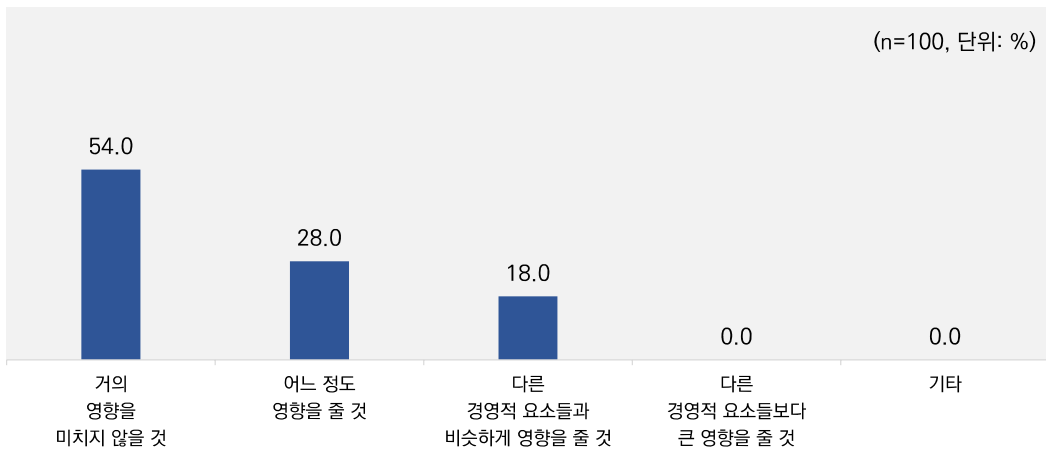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역 보험	보증 우대	입지 지원	정책 자금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지원
전체		32.0	19.6	27.8	59.8	9.3	1.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34.7	20.0	29.3	58.7	10.7	1.3
	도매 및 소매업	20.0	20.0	10.0	50.0	1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5	25.0	37.5	75.0	0.0	0.0
	기타	50.0	0.0	25.0	75.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32.3	18.8	28.1	60.4	9.4	1.0
	중견기업	0.0	10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39.0	26.8	34.1	58.5	9.8	2.4
	진출하지 않음	26.8	14.3	23.2	60.7	8.9	0.0

## (2)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영업이익 영향

- 경쟁회사가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감면을 제외한 복귀 시 지원제도들이 귀사의 영업이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진출 국가에도 유사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영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28.0%),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한 영향을 줄 것이다'(18.0%) 순이었다

[그림 44]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영업이익 영향



<표 85>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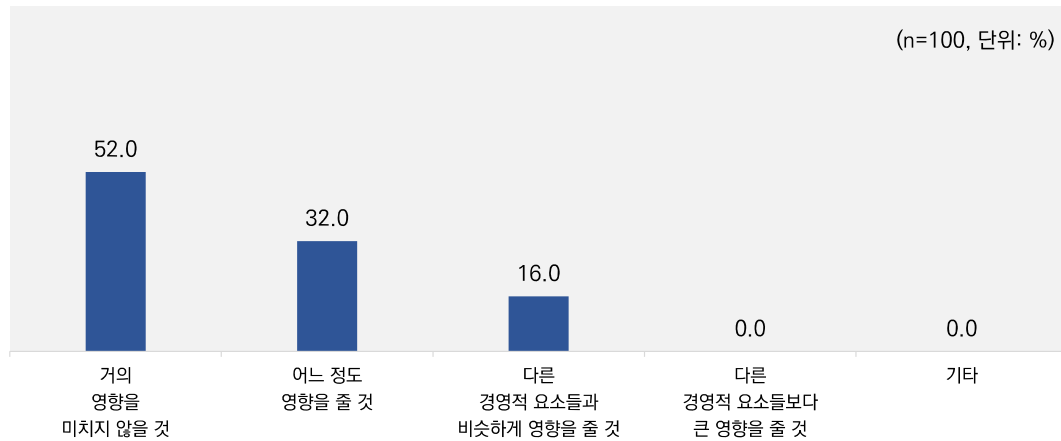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하게 영향을 줄 것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을 줄 것	기타	
전체	(100)	54.0	28.0	18.0	0.0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55.8	26.0	18.2	0.0	0.0
	도매 및 소매업	(10)	60.0	30.0	1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37.5	25.0	37.5	0.0	0.0
	기타	(5)	40.0	6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53.5	28.3	18.2	0.0	0.0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47.7	31.8	20.5	0.0	0.0
	진출하지 않음	(56)	58.9	25.0	16.1	0.0	0.0

### (3)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 경쟁회사가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감면을 제외한 복귀 시 지원제도들이 귀사의 해외진출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진출 국가에도 유사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경영적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32.0%),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한 영향을 줄 것이다'(16.0%) 순이었다

[그림 45]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표 86>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을 제외한 제도의 해외진출 결정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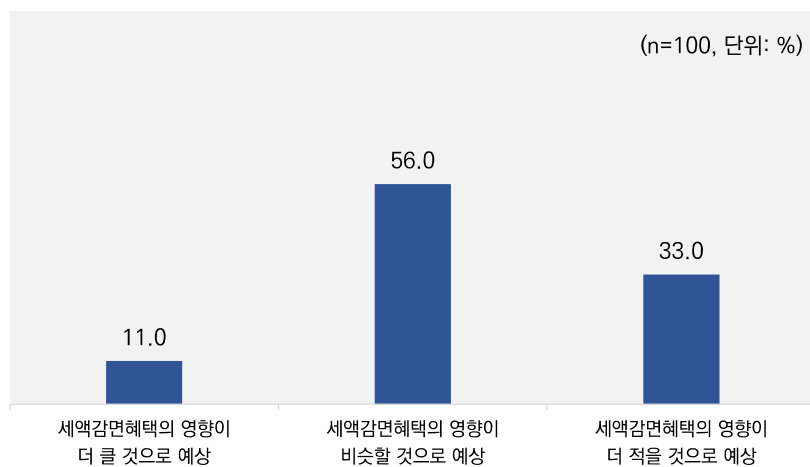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다른 경영적 요소들과 비슷하게 영향을 줄 것	다른 경영적 요소들보다 큰 영향을 줄 것	기타	
전체	(100)	52.0	32.0	16.0	0.0	0.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53.2	32.5	14.3	0.0	0.0
	도매 및 소매업	(10)	50.0	30.0	2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37.5	25.0	37.5	0.0	0.0
	기타	(5)	60.0	40.0	0.0	0.0	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51.5	32.3	16.2	0.0	0.0
	중견기업	(1)	100.0	0.0	0.0	0.0	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45.5	38.6	15.9	0.0	0.0
	진출하지 않음	(56)	57.1	26.8	16.1	0.0	0.0

#### (4)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제도가 경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 경쟁회사가 국내에 복귀한다고 가정할 때 세액감면제도가 그 외의 복귀 시 정부 지원들에 비하여 귀사의 경영 의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을 때, '세액감면 혜택이 비슷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함'이라는 응답이 56.0%로 많았다.
- 해외진출 여부별로는 '진출함'에서는 '세액감면 혜택의 효과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함'이라는 응답이 43.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6]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제도가 경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표 87> 경쟁회사 국내복귀 가정 시 세액감면제도가 경영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사례 수	세액감면혜택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	세액감면혜택의 영향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	세액감면혜택의 영향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
전체		(100)	11.0	56.0	33.0
국내사업장 업태구분	제조업	(77)	11.7	53.2	35.1
	도매 및 소매업	(10)	10.0	60.0	3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12.5	75.0	12.5
	기타	(5)	0.0	60.0	40.0
기업규모	중소기업	(99)	11.1	56.6	32.3
	중견기업	(1)	0.0	0.0	100.0
해외진출 여부	진출함	(44)	9.1	47.7	43.2
	진출하지 않음	(56)	12.5	62.5	25.0